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 토 보 고 (Ⅱ)

보건복지부 소관
(1차관 소관)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 문 위 원 정경윤

전 문 위 원 연광석

【 목차별 담당 입법조사관 】

구분	목차	입법조사관	연락처(6788-)
Ⅰ권	결산 개요 및 총괄 검토	김영수	5503
Ⅱ권(제1차관소관)	기획조정실	정민주	5494
	복지정책관	박지호	5497
	복지행정지원관		
	연금정책관	김태엽	5510
	사회서비스정책관	박지호	5497
	인구아동정책관	조서연 허기원	5500 5498
	노인정책관	양승민	5499
	장애인정책국	김대명	550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박지호	5497
Ⅲ권(제2차관소관)	보건의료정책관	정민주	5494
	공공보건정책관	이성임	5509
	한의약정책관	최은영	5496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포함)	김영수 박지호	5503 5497
	건강정책국	조서연	5500
	정신건강정책관	허기원	5498
	보건산업정책국	김태엽	5510
	첨단의료지원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양승민	5499

【 목 차 】

Ⅲ. 실국별 검토 ····· 1

1. 기획조정실 ····· 1

가. 개요 ····· 1

1) 결산 총괄 ····· 1

2) 일반회계 결산 ····· 2

3) 기금 결산 ····· 4

4) 이·전용 현황 ····· 5

5) 이월 및 불용 현황 ····· 7

나. 사업별 검토 ····· 9

<일반회계>

1)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 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9

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활용 증진 필요 ····· 10

2)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 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4

나) 국제부담금으로 비목 변경을 통한 통합적 분담금 관리 필요 ····· 15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 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8

나) 일부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문제 ····· 19

2. 복지정책관 ····· 22

가. 개요 ····· 22

1) 결산 총괄 ····· 22

2) 이·전용 현황 ····· 24

3) 이월 및 불용 현황 ····· 26

나. 사업별 검토 ····· 28
<일반회계>
1) 생계급여(1131-300) ····· 2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8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29
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보장성 강화 필요 ····· 32
2) 의료급여(1132-302) ····· 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6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37
다) 과다한 여유 재원 편성 후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 및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40
3) 긴급복지(1133-300) ····· 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5
나) 긴급복지제도 개요 ····· 46
다) 예산 전용 이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의 재발 방지 및 긴급복지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 필요 ····· 48
4) 자활사업(1137-300) ····· 5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4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55
다) 중앙자산키움펀드(현 중앙자활자금)적립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자활기금과의 통합 검토 필요 ····· 58
5)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1137-311) ····· 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64
나) 근로능력 심사 기준 및 절차 ····· 65
다)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업무의 적기 처리율 제고 필요 ····· 67
6) 노숙인 등 복지지원(1931-304) ····· 7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71
나) 노숙인지원 사업의 지역간 격차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72
7)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2631-302) ····· 7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77
나) 보조금 교부 신청시 자부담액 명시 필요 ····· 79
다) 적정 수준의 퇴직적립금 적립 필요 ····· 82

3. 복지행정지원관 ····· 84

가. 개요 ····· 84

1) 결산 총괄 ····· 84

2) 이·전용 현황 ····· 86

3) 이월 및 불용 현황 ····· 87

나. 사업별 검토 ····· 90

<일반회계>

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2639-301) ····· 9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90

나) 타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 수행 지양 필요 ····· 92

2)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 9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97

나)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실집행 부진 해결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률 제고 필요 ····· 99

3)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304) ····· 1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03

나) 연말 계약에 따른 예산 이월 주의 ····· 104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640-300) ····· 10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08

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110

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및 계약 해지 이후 조속한 개통을 위한 노력 필요 ····· 116

4. 연금정책관 ····· 121

가. 개요 ····· 121

1) 세입·세출 결산 ····· 121

2) 기금 수입 결산 ····· 122

3) 기금 지출 결산 ····· 124

4) 이·전용 현황 ····· 127

5) 이월 및 불용 현황 ····· 128

나. 사업별 검토 ····· 133
<일반회계>
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7042-300) ····· 13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33
나)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경과 및 대응 연혁 ····· 134
다)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집행의 법무부 일원화 필요 ····· 138
2)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141
가) 개요 ····· 141
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141
<국민연금기금>
3)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 1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45
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해외사무소 정원 미달 시정 및 현지 우수인력 채용 여건 마련 필요 ····· 146
4) 복지타운운영사업비(7433-424) ····· 1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50
나) 청풍리조트 자산효율화 노력 필요 ····· 151

5. 사회서비스정책관 ····· 155

가. 개요 ····· 155
1) 결산 총괄 ····· 155
2) 세입·세출 결산 ····· 156
3) 이·전용 현황 ····· 158
4) 이월 및 불용 현황 ····· 159

나. 사업별 검토 ····· 161
<일반회계>
1)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2635-316) ····· 16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61
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개요 ····· 162
다) 투자 기준 준수 및 중복투자 방지 등 철저한 펀드 관리 필요 ····· 165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 16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68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 내용 ····· 169
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 해소 및 실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 171
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 17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75
나) 사회서비스원 개요 ····· 176
다)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ISP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 1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 18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84
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185
다)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188

6. 인구아동정책관 ····· 197

가. 개요 ····· 197
1) 결산 총괄 ····· 197
2) 세입·세출 결산 ····· 198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199
4) 기금 결산 ····· 200
5) 이·전용 현황 ····· 201
6) 이월 및 불용 현황 ····· 202

나. 사업별 검토 ····· 205
<일반회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 2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5
나)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 ····· 206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331-303) ····· 2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9
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210

3)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 2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14
나) 현실성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확대 계획 수립 및 처우 개선 필요 ··· 215
다)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20
라)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 223
4)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 2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27
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228
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사업 차질 발생 ····· 232
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 2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36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 재조정 및 지자체 신규 설치 유인 제고 방안 필요 ····· 237
6)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 24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42
나) 대상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필요 ····· 243
7)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1337-304) ····· 24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49
나)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조사 용역계약 낙찰차액 환수 방안 검토 필요 ··· 250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 25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53
나) 연례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연 문제 ····· 254
9) 아동수당 지급(2533-300) ····· 25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59
나) 예산 편성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누락 주의 필요 ····· 260
다) 지급액 인상 및 지급연령 확대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 264
라) 지급정지의 예외 검토 필요 ····· 268
10) 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 ····· 27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71
나)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2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다함께돌봄센터 사업(1338-314) ····· 27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75

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277

<국민건강증진기금>

12) 모자보건사업(2535-302) ····· 28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81

나)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282

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율 제고 필요 ····· 290

라)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 ··· 296

7. 노인정책관 ····· 299

가. 개요 ····· 299

1) 결산 총괄 ····· 299

2) 일반회계 결산 ····· 300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301

4) 기금 결산 ····· 302

5) 전용 현황 ····· 303

6) 이월 및 불용 현황 ····· 304

나. 사업별 검토 ····· 306

<일반회계>

1) 고령친화산업육성(2142-304) ····· 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06

나)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재편성 필요 ····· 308

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 3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11

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 강화 필요 ··· 312

3) 노인단체 지원(2133-301) ····· 31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16

나)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예산 중 치매예방사업 전액조정(△) 문제 ····· 317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 32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20
나)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 지양 및 공익활동형 일자리 지급단가 인상, 사업 기간 연장 필요 ····· 3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 32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25
나) 서비스 수행 필요인력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처우개선 필요 ··· 326
6) 장사시설설치(2140-300) ····· 3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29
나)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조치 필요 ····· 330
7)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 33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32
나)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축단가 현실화 필요 ····· 333
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 3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36
나)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 337
<국민건강증진기금>
9) 치매관리체계 구축(2234-300) ····· 34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42
나)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344
10) 노인건강관리(2235-304) ····· 34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49
나) 노인건강관리사업 수요를 고려한 지원 확대 필요 ····· 350

8. 장애인정책국 ····· 353

가. 개요 ····· 353
1) 결산 총괄 ····· 353
2) 일반회계 결산 ····· 354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356

4) 기금 결산 ····· 357
5) 이·전용 현황 ····· 358
6) 이월 및 불용 현황 ····· 360

나. 사업별 검토 ····· 362

<일반회계>

1)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 36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62
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누적 미지급금 해소 필요 ····· 363
2)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1532-304) ····· 36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67
나) 연례적으로 예산을 조정(일반수용비 등→일반용역비)하여 집행하는 관행 개선 필요 ····· 368
다) 비목별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 372
3)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 37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75
나) 예산조정을 통해 연도 말 상당한 규모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전액 다음연도 이월 부적절 ····· 376
다) 예산조정을 통한 사전계획 없는 국외출장을 지양하고, 필요한 적정 규모 국외여비 편성 필요 ····· 380
4) 장애아동가족지원(1535-305) ····· 38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83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집행 필요 ··· 384
5) 발달장애인지원(1535-309) ····· 39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91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393
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 ····· 4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2
나)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이월액 최소화 및 적극적인 정산 관리 필요 ····· 403

7)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1538-300) ····· 4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9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성과지표 개발 필요 ····· 410
8)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1542-307) ····· 41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15
나)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가피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하고, 관련 행정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절차 제도화 필요 ····· 4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 41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19
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참여 장애인 증대 방안 마련 필요 ····· 420
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핵심인력인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필요 ····· 426

9.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 434

가. 개요 ····· 434
1) 결산 총괄 ····· 434
2) 이·전용 현황 ····· 435
3) 이월 및 불용 현황 ····· 435

나. 사업별 검토 ····· 437
<일반회계>
1)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 ····· 43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37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438
다) 사회보장재정추계 공표 주기 미준수 시정 필요 ····· 439

Ⅲ. 실국별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319억 1,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334억 8,700만원이며,

이 중 3,19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3억 2,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31,918	331,918	333,487	319,132	5,323	9,032
일반회계	331,741	331,741	333,310	319,001	5,323	8,986
국민건강증진기금	177	177	177	131	-	46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 등 총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본예산은 3,317억 4,100만원, 예산현액은 3,333억 1,000만원이고, 이 중 3,190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3억 2,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89억 8,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31,741**	**331,741**	**333,310**	**319,001 (317,987)**	**5,323**	**8,986**
복지급여 사후관리 (2632-313)	933	933	933	881 (881)	-	52
보건복지 상담 센터 (2633-300)	8,232	8,232	8,232	7,726 (7,726)	48	458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2734-501)	12,268	12,268	13,748	7,147 (7,053)	4,788	1,813
본부 인건비 (7001-100)	189,169	189,169	188,544	182,993 (182,993)	-	5,55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1,572	1,572	2,128	2,055 (2,055)	26	46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36)	133	133	129	123 (123)	5	1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7011-237)	54	54	39	37 (37)	2	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147	147	75	57 (57)	4	14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3,506	3,506	3,833	3,766 (3,766)	63	4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7011-278)	426	426	734	711 (711)	21	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1,051	1,051	527	514 (514)	3	10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9)	344	344	258	212 (212)	25	21
본부 전산운영 경비(정보화) (7012-500)	3,305	3,305	3,312	3,047 (3,047)	-	265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1-502)	2,755	2,755	2,793	2,662 (2,662)	-	130
보건복지 양성평등 정책 교육홍보 (7033-302)	264	264	234	231 (231)	-	3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운영 (7033-303)	16,674	16,674	16,674	16,674 (16,177)	-	-
정책기반 구축 (7033-304)	5,365	5,365	5,448	5,185 (5,185)	2	261
정책연구개발(R&D) (7034-301)	705	705	790	680 (680)	70	40
국제협력관리 (7035-300)	2,694	2,694	2,737	2,636 (2,530)	32	69
WHO 사업분담금 지원 (ODA)(7035-301)	1,863	1,863	1,863	1,863 (1,863)	-	-
WHO 의무분담금 납부 (ODA)(7035-302)	16,826	16,826	16,826	16,826 (16,826)	-	-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지원(7035-305)	12,263	12,263	12,263	12,263 (12,263)	-	-
개도국개발협력사업 (ODA)(7035-306)	37,954	37,954	37,954	37,954 (37,954)	-	-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1,884	1,884	1,884	1,884 (1,884)	-	-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7041-500)	9,078	9,078	9,078	8,700 (8,382)	235	143
행정지원인력 운영 (7043-300)	2,276	2,276	2,276	2,175 (2,175)	-	101

3)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기금관리비 등 총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계획액 및 계획현액은 1억 7,700만원이고, 이 중 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건강증진기금	**177**	**177**	**177**	**131 (131)**	**-**	**46**
기금관리비 (7276-600)	97	97	97	85 (85)	-	12
부담금환급금 지원 (7540-300)	80	80	80	46 (46)	-	34

4)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이·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내역은 없고, 비대면진료 및 지역·필수의료 혁신 간담회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정책기반 구축에서 3억 5,2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을 전용(증)하였고, 총 17억 8,2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285 △1,782**	
일반회계	**1,285 △1,782**	
복지급여 사후관리	24 △24	○ 국내여비에서 '보조금 부조리 신고 센터' 홍보 포스터 인쇄비(일반수용비),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을 위한 임차료로 전용
본부 인건비	150 △775	○ 공무원고용부담금(150백만원),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상용임금 등(△46백만원), 청년인턴 일용임금 등(△354백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전용(△220백만원), 예산성과금(△6백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401	○ 국관 기본경비 내 부족예산과목 해소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1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43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56	○ 인사청문회 3회 개최, 코로나19 파견 등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예산 부족으로 세부사업 내 자체전용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330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62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	○ 행정 전산망 현안 대응 관련 출장업무 증가 및 보건복지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전용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7	○ 행정 전산망 현안 대응 관련 출장업무 증가 및 보건복지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전용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30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정책기반 구축	352 △269	○ 정책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 ○ 비대면진료 및 지역·필수의료 혁신 간담회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확보
국제협력관리	203 △220	○ 국제회의 증가로 국외여비 추가 재원 필요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10 △10	○ 정보보안 컨설팅 강화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여비로 전용
행정지원인력 운영	40 △40	○ 공무직근로자 등 퇴직급여, 고용부담금 추가 소요 발생

5)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 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사업에서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47억 8,8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53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5,323**	
일반회계	**5,323**	
보건복지 상담 센터	48	○ 129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사업 추진기간 연장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4,788	○ 구축사업 진행 일정을 고려한 계약 체결 및 구축 과업 추가 등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이월 발생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26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5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2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4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63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21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3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25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정책기반 구축	2	○ '정책기반 통계생산' 사업의 조달수수료 이월
정책연구개발(R&D)	70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월
국제협력관리	32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일반연구비 이월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235	○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구매 물품 납기 및 정보화 사업 종료일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본부인건비 사업에서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55억 5,1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90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9,032**	
일반회계	복지급여 사후관리	5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보건복지 상담 센터	458	○ 상담사 휴·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1,81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본부 인건비	5,551	○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46	○ 집행잔액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	○ 집행잔액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1	○ 집행잔액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14	○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4	○ 집행잔액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2	○ 집행잔액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10	○ 집행잔액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21	○ 집행잔액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65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130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3	○ 집행잔액
	정책기반 구축	261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정책연구개발(R&D)	40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제협력관리	69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143	○ 낙찰차액, 조달청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잔액 등
	행정지원인력 운영	101	○ 공무직근로자 퇴직, 휴직 등 결원발생 후 채용 전까지 공백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관리비	12	○ 인건비 등 집행잔액
	부담금환급금 지원	34	○ 부담금 환급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불용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은 정부합동감사 및 법인·시설 현지조사, 부정수급 예방 홍보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복지급여 집행·감독체계 운영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9억 3,300만원으로 이 중 8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933	933	-	-	-	933	881	-	52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572	572	-	-	-	572	537	-	44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361	361	-	-	-	361	353	-	8

자료: 보건복지부

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활용 증진 필요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사업 예산을 통해 수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현지조사, 관련 공무원 및 법인·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이 중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에 제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3년 제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였고, 이 중 2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7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	572	572	-	-	-	572	528	-	44
- 일반수용비 (210-01)	63	63	-	15	-	78	78	-	-
- 임차료 (220-07)	7	7	-	9	-	16	11	-	5
- 국내여비 (220-01)	116	116	-	△24	-	92	91	-	1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외여비 (220-02)	10	10	-	-	-	10	9	-	1
- 사업추진비 (240-01)	39	39	-	-	-	39	39	-	-
-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	-	-	300	263	-	3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7	37	-	-	-	37	37	-	-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현황 및 유형 파악, 부정수급 관리체계 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연구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임.

□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의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장기관이 부정수급 발생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동법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4조[2]에 따르면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1)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있으며[3], 훈령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교육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통일부 등의 경우 공개시점을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강제하고 있음.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2023년 12월 15일에 완료한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4일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게시하였음. 2020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연구가 완료된 후 약 1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서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음.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연구 실시개요 및 결과 공개>

구분	2020년 실태조사	2023년 실태조사
연구자 선정방법	(조달청)경쟁입찰 →단일응찰로 수의계약 전환	(조달청)경쟁입찰 →단일응찰로 수의계약 전환
실시기간	‘20.6.30.~’20.12.15.	‘23.7.5.~’23.12.15.
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자 :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자 : 강지원)
조사내용	•(조사대상)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조사내용) 부정수급 현황 및 유형 파악 및 부정수급 관리체계 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조사방식) 조사표에 기반한 기관별 조사,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 설문조사, FGI 조사, 문헌분석	•(조사대상)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 지자체 자체예산 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 시범 조사 •(조사내용) 부정수급 현황 및 유형 파악 및 부정수급 관리체계 조사 등 •(조사방식) 조사표에 기반한 기관별 조사, 담당자 설문조사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담당자 FGI조사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2. 9.)에 따르면 “‘정책연구’란 정책개발이나 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서, 정책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된다”고 하여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정책연구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4호)」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14호 서식) 및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2020년 실태조사	2023년 실태조사
결과공개방법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홈페이지(prism)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홈페이지(prism), 복지부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일	'21. 12월	'24. 6월
활용결과	• 부정수급 현황 등 조사결과를 정책(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관리 교육 확대	• 부정수급 현황 등 조사결과를 정책(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활용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관리 교육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WPRO 전략사업 추진(ODA)(7035-30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WPRO 전략사업 추진은 서태평양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국가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실시하는 만성질환,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사업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8억 8,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WPRO 전략사업 추진 (ODA)	1,884	1,884	-	-	-	1,884	1,884	-	-

자료: 보건복지부

나) 국제부담금으로 비목 변경을 통한 통합적 분담금 관리 필요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예산의 비목을 해외경상이전(340-01)이 아닌 국제부담금(340-02)으로 변경함으로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실시하는 만성질환,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강화 등 보건복지부 소관 관련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상 비목은 해외경상이전(340-01)으로 편성·집행됨.

□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을 WPRO에 통보하고, WPRO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사업분담금을 집행하며, 집행한 후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는 방식임.

< WPRO 전략사업 추진(ODA) 사업 추진 절차 >

확보 예산 통보(보건복지부) → 사업제안서 제출(WPRO) → 사업제안서 검토 및 사업분담금 지원 합의서 서명(보건복지부, WPRO) → 분담금 집행(보건복지부) → 집행결과 보고(WPRO) → 집행결과 점검(보건복지부)

□ 한편, 동 사업은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와 WPRO간 체결된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하여 지급되므로,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납부하는 경비인 동 사업 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5]상 국제기구 분담금에 해당함.

---

5)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 또한,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6]에 따르면 해외경상이전(340-01)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에 해당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는 국제부담금(340-02)으로 편성하여야 함.

□ WPRO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에도 존재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사업과 질병청 소관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사업은 모두 국제부담금(340-02)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WPRO 분담금 지급 사업 비교 >

구분	WPRO 전략사업추진(ODA)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ODA)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지원근거	보건복지부 - WPRO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19. 10. 갱신)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공적개발원조 사업 원조 협약 ('20. 5. 갱신)	질병관리본부-WPRO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양해각서('19. 10. 갱신)
비목	해외경상이전(340-01)	국제부담금(340-02)	국제부담금(340-02)
'23회계연도 예산액	1,884백만원	1,027백만원	2,045백만원
사업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서태평양지역 자살예방 강화 등 보건복지부 관련 11개 사업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몽골·필리핀)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역량강화 지원, 6개국(5개 지원국+말레이시아) 전통의약품 규제기관 역량강화 지원	긴급대비대응 강화, 포스트코로나19 대비 대응 프로젝트,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등 질병청 관련 12개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6) 기획재정부, 2022.5.

□ 국제부담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외교부장관 소속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서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다음연도 분담금 납부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거치며, 해당 심의·조정 결과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되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는 등[7]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받게 됨.

□ 따라서, <u>'WPRO 전략사업 추진'사업의 비목을 해외경상이전(340-01)이 아닌 국제부담금(340-02)으로 변경함으로써, WPRO에 대한 분담금 납부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전략적 관리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u>

---

7)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개발도상국·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설·의약품 등 지원,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의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 지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22억 6,3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2,263	12,263	-	-	-	12,263	12,263 (11,316)	-	-
북한보건 의료 지원	80	80	-	-	-	80	80 (41)	-	-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1,070	1,070	-	-	-	1,070	1,070 (951)	-	-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530	530	-	-	-	530	530 (294)	-	-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140	140	-	-	-	140	140 (14)	-	-
의료자원 지원	590	590	-	-	-	590	590 (343)	-	-
이종욱 기념사업	246	246	-	-	-	246	246 (245)	-	-
정책기반 구축	885	885	-	-	-	885	885 (834)	-	-
인건비	6,825	6,825	-	-	-	6,825	6,825 (6,711)	-	-
경상운영비	1,897	1,897	-	-	-	1,897	1,897 (1,883)	-	-

자료: 보건복지부

나) 일부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문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중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의 2023년 실집행률이 10.0~58.1%로 저조하게 나타남.

-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국내 보건의료 인력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8,000만원 중 4,1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1.3%로 나타났음.

-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소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고 외국인 보건의료교육과정 운영 및 포럼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억 3,0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5.5%로 나타났음.

-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인력풀 관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1,4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자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의약품 등 자발적으로 기탁된 의료물자를 수집·관리하고 해외의료기관 및 민간단체에 무상지

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억 9,0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8.1%로 나타났음.

< 2023회계연도 실집행 부진 4개 내역사업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북한 보건의료 지원	80	-	80	41	-	-	51.3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	530	-	530	294	-	-	55.5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	140	-	140	14	-	-	10.0
의료자원 지원	590	-	590	343	-	-	58.1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각 사업별 실집행 부진의 주된 이유로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남북 관계 등 대외적 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자들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9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8] 잠재적 공모사업 위탁기관 대상풀이 줄어들어 공모가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되었던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수행기관 부재 및 무응찰로 미집행되었고, ‘의료자원 지원’사업의 경우 의료물자 관리 위탁용역 발주가 2022년 10월에야 이루어지고,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체결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8)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NGO(약 40여 개)를 대상으로 공모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당수의 운영 중단이 예상되는 등 NGO 대상 공모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음.

이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 의료물자의 현지 통관 문제로 인한 해외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의료물자 위탁관리 용역 체결('22. 12. ~ '24. 12.) 진행 경과>

▶ 2022.05.18.~06.17. 복지부 종합감사 * 2022.09.02. 처분요구서
▶ 2022.10.06. 재단 의료물자 위탁관리 용역 추진 계획(안)
▶ 2022.10.19. 조달요청서(재단 의료물자 위탁관리 용역(장기계속 1차)
▶ 2022.12.07.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결과보고(재단 의료물자 위탁관리 용역)
▶ 2022.12.12.~2023.12.11. 1차 계약 추진
▶ 2023.12.12.~2024.12.11. 2차 계약 추진

□ 그러나 '북한 및 해외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은 내국인 대상 교육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대외적 상황에 의해 집행가능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동 내역사업들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4개 내역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연도	교부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내역사업	연도	교부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북한 보건의료 지원	2023	80	41	51.3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	2023	140	14	10.0
	2022	80	21	25.9		2022	80	55	68.9
	2021	40	39	98.0		2021	80	64	80.2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	2023	530	294	55.5	의료자원 지원	2023	590	343	58.1
	2022	410	180	43.9		2022	450	268	59.6
	2021	410	314	76.6		2021	900	600	66.7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복지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16조 4,209억 2,8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6조 4,205억 8,000만원임.

이 중 15조 7,089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7,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15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16,420,928**	**16,420,928**	**16,420,580**	**15,708,916 (6,271,179)**	**74**	**711,589**
<일반회계>	**16,420,928**	**16,420,928**	**16,420,580**	**15,708,916 (6,271,179)**	**74**	**711,589**
생계급여	6,014,148	6,014,148	6,015,198	6,015,166 (5,908,903)	-	32
해산장제급여	38,210	38,210	38,210	38,210 (37,738)	-	-
의료급여	9,098,368	9,098,368	9,062,321	8,362,283 (8,361,903)	-	700,038
긴급복지	315,486	315,486	339,359	339,355 (324,538)	-	4
자활사업	693,573	693,573	704,278	704,226	50	2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2	2	16	11	-	5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27,646	227,646	227,639	216,281	-	11,358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8,479	18,479	18,479	18,479	-	-
노숙인등 복지지원	5,163	5,163	5,163	5,082	-	81
사회복지사 관리	758	758	758	758	-	-
사회복지협의회육성지원	2,516	2,516	2,516	2,516	-	-
복지소외계층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	2,645	2,645	2,645	2,645	-	-
사회복지 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923	923	1,006	921	18	67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800	2,800	2,800	2,800	-	-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20	120	99	96	3	-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91	91	93	88	3	2

2)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의료급여’에서 15억 1,200만원을 이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날짜	세부사업 (~에서)	금액	세부사업 (~으로)	사유
계(복지정책관)		△1,512		
2.1	의료급여 (1132-302)	△1,512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및 운영 (2740-309)	중국발 방역강화조치 시행 관련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지원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긴급복지 부족분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에서 긴급복지로 238억 7,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활사업 부족분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에서 자활사업으로 106억 6,200만원을 전용하는 등,

회계연도 중 전용으로 복지정책관 내에서 총 346억 800만원이 감액되고, 34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 사유
계	△34,608 34,613	
<일반회계>		
의료급여	△23,878	긴급복지 부족분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에서 긴급복지로 전용
	△10,662	자활사업 부족분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에서 자활사업으로 전용
	5	국외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에서 의료급여로 전용
	28 △28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부족분 해소를 위해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
긴급복지	23,878	긴급복지 사업비 부족 해소를 위해 기초의료급여 사업비에서 증액
	△5	기초의료급여 국외여비 부족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국내 여비 불용예상액에서 감액
자활사업	△7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전용
	10,662	자활근로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 사업에서 전용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4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조기집행완료에 따라, 자활사업 및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으로부터 각각 7백만원 전용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0 △27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및 신규서비스 추가설치에 따른 서버 인프라 용량 증설로 인한 자산취득비(동일 세부사업내, 자산취득비 세목 신설, 20백만원) 자체 전용 및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조기집행에 따른 필요예산 7백만원 전용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6 △1	국관기본경비 조정(포상금 6, 공공요금 △1)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차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총 7,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 사유
계	74	
<일반회계>		
자활사업	50	자활 인프라 기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18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3	집행잔액 특근매식비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	관서운영경비 집행잔액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사업에서 진료비 집행액 추이를 고려한 지자체 미집행 예산 7,000억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에서 지자체 보조금 미교부 113억 5,800만원 등 총 7,115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711,589**	
<일반회계>		
생계급여	32	집행잔액
의료급여	700,000	‘23년도 진료비 집행액 추이 고려, 지자체 보조 미집행 예산
	38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긴급복지	4	집행잔액
자활사업	2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백만원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5	하반기 금리 하락으로 인해 불용 발생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1,358	일부 지자체 보조금 미교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81	집행잔액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67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생계급여(11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생계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7가지의 기초생활 급여[9] 중 하나인 생계급여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8조[10]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6조 141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5,000만원을 포함한 6조 151억 9,800만원으로, 이 중 6조 15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생계급여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기준)
	본예산	추경					
생계급여	6,014,148	6,014,148	1,050	6,015,198	6,015,166 (5,907,855)	-	32 (107,310)

9) 기초생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총 7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소관)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이하 생략)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생계급여 사업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사업임.

-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에서 생계급여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11)]

□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함.[12)]

- 2023년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이고 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으로, 5년 전인 2019년(138만 4,061원)에 비해 23만 6,228원(17%) 증가하였음.

---

11)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2023년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623,368원) - 소득인정액(2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423,368원)

(원 단위 올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최근 5개년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자료: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2인가구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3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가구 수 기준 약 39.3%, 수급자 수 기준 약 32.4% 증가, 시설수급자는 7.4% 증가하였음.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 수>

(단위 : 가구, 명)

구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이상		
'19년	861,409	666,172	127,774	43,067	16,370	5,395	1,697	934	1,150,809	89,345
'20년	923,879	721,200	135,033	42,906	16,478	5,524	1,771	961	1,221,022	87,973
'21년	1,081,655	856,602	156,242	44,220	16,405	5,495	1,752	939	1,402,260	90,820
'22년	1,157,750	928,843	161,190	43,668	16,089	5,375	1,687	898	1,481,771	92,230
'23년	1,200,418	971,371	162,115	43,074	15,970	5,330	1,673	885	1,523,735	96,019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수급자 수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 수 기준 152만 3,735명이고, 지역별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가장 적은 세종특별자치시(3,945명)부터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269,437명)까지 분포되어있음.

<2023회계연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시·도	수급권자 수		시·도	수급권자 수	
서울특별시	269,437	17.7%	강원도	46,828	3.1%
부산광역시	153,943	10.1%	충청북도	56,899	3.7%
대구광역시	97,623	6.4%	충청남도	80,654	5.3%
인천광역시	101,916	6.7%	전라북도	66,764	4.4%
광주광역시	56,397	3.7%	전라남도	94,317	6.2%
대전광역시	48,472	3.2%	경상북도	103,085	6.8%
울산광역시	22,573	1.5%	경상남도	20,152	1.3%
세종특별자치시	3,945	0.3%	제주특별자치도	51,300	3.4%
경기도	249,430	16.4%	**합계**	**1,523,735**	

자료: 보건복지부

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보장성 강화 필요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 수급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가 보장기관에 급여를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등을 확인 후 금융재산 조회요청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을 실시함.

-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① 부양의무자 기준 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3]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생계급여 등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14]

---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

	구분	산식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제6조의3제1항)	**실제소득** -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6조의3제2항)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 연혁 >

('01) 부양비 조정(부양능력 미약 50 → 40%, 출가한 딸 30 → 15%)

('05) 부양의무자* 중 수급자의 **'직계혈족' →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07) 부양의무자 범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삭제**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09) 부양비* 및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 ('00) 50%(출가한 딸 30%) → ('03) 40%(출가한 딸 15%) → ('09) 30%(출가한 딸 15%)

**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농어촌 7,250→10,150만원

('1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6만원 → 364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지원 가능(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30% → 185%)

('13)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 환산율** 인하(월 4.17% → 1.04%) 및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 대도시 13,300→22,800만원, 중소도시 10,850→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15)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기준 대폭 완화

* 1촌 직계혈족 사망시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일 때, 부양능력 있음 기준을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15.6) 월 297만원 → ('15.7) 월 485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30% →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00%)

('17~'2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에 의거 '17년 11월부터 **1~3단계 정상 추진** 중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 '19.1월**, 의료 '22.1월)

○ **('19년) 생계급여는 로드맵 중 일부*를 조기 시행하였으며**(당초 '22년 예정), **추가적 제도개선도 실시****('18.7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대책」)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19.1월)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생계·의료급여)

○ **('20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국가재정전략회의('19.5)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으로 추진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완결**

- 노인·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
- **생계급여 전 연령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당초 계획(`22년)보다 앞당겨 **`21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21.10~)

○ **('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수립 시 주요 과제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개편' 포함

○ **('24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24.7.25.)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추가 완화 결정('25년 시행)

* (현행) 소득 1억, 재산 9억 → (개선) 소득 1.3억, 재산 12억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노인 (기초연금 수급)	非노인·장애인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2017년 11월 완화		2020년 1월 완화
	노인·한부모			2021년 1월 완화
	非노인·장애인	2019년 1월 완화		2021년 10월 폐지

□ 한편,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2022년도 국정감사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2025년부터 연 소득 1.3억원 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입장임.

□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선별하는 수단이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신축적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고소득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입양관계이거나 그 밖의 가정적 사유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생계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11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23회계연도 본예산은 9조 983억 6,800만원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긴급복지 사업 등으로 이·전용된 360억 4,700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9조 623억 2,100만원이었으며, 이 중 8조 3,622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7,000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료급여	9,098,368	9,098,368	-	△36,047	-	9,062,321	8,362,283 (8,361,903)	-	700,038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이고, 사업 예산은 수급자 진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단 보조금, 사업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구분됨.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른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재구성

□ 지원내용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수급권자가 의료

15)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수급자별 본인 부담금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연평균 수급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수급권자 수는 152만 4,098명으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 연평균 수급권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권자	1,487,557	1,507,981	1,526,632	1,516,507	1,524,098
기초1종	997,916	1,026,388	1,055,297	1,067,116	1,088,831
기초2종	395,365	389,049	382,936	364,584	353,015
타법1종	94,276	92,544	88,399	84,807	81,431
타법2종	-	-	-	-	820

* '23년부터 신규 타법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사업은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왔으며, 2021회계연도까지는 국비 기준 114억원~6,700억원 수준의 미지급금[16]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충분한 예산 편성으로 2022년부터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음.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나, 예탁금 부족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배정받아 1월에 지급하는 비용임.

< 최근 5년간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내역 >

(단위: 국비 기준, 백만원)

연도	미지급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A)					
2019	189,851	6,391,530	6,437,402	151	120,000	320,972	6,878,525	6,878,452 (6,877,652)
2020	55,296	7,003,762	7,003,762	61	-	-	7,003,823	7,003,747 (7,003,700)
2021	11,493	7,680,461	7,680,461	0	△30,000	-	7,650,461	7,650,439 (7,650,374)
2022	0	8,123,234	8,123,234	16	△239,183	-	7,884,067	7,884,031 (7,883,897)
2023	0	9,098,368	9,098,368	-	△36,047	-	9,062,321	8,362,283 (8,361,903)

자료: 보건복지부

다) 과다한 여유 재원 편성 후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 및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

법정 의무 지출 사업인 의료급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거나 불용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당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책정된 9조 960억 6,700만원 중 360억 5,2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7,000억원을 불용함에 따라 총 7,360억 5,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미교부되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보조금은 8조 3,600억 1,500만원(91.9%)임.

- 이·전용 사유는 타 사업의 예산 부족분 확보 때문이고,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세 개 사업에 이·전용되었음.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3.2.1)	의료급여 (1132-302)	330-01	1,512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09)	330-01	중국발 방역강화조치 시행 관련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지원
전 용 (23.9.18)	의료급여 (1132-302)	330-01	23,878	긴급복지 (1133-300)	330-01	긴급복지 예산 부족분 확보
전 용 (23.9.18)	의료급여 (1132-302)	330-01	10,662	자활사업 (1137-300)	330-01	자활급여 예산 부족분 확보
전 용 (23.12.26)	의료급여 (1132-302)	260-01	28	의료급여 (1132-302)	210-01	수용비 부족분 확보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 용 (23.11.28)	긴급복지 (1133-300)	220-01	5	의료급여 (1132-302)	220-02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
세목 조정 (23.11.29, 23.12.26)	의료급여 (1132-302)	220-01	4	의료급여 (1132-302)	220-02	
	의료급여 (1132-302)	210-07	1	의료급여 (1132-302)	210-01	수용비 부족분 확보

□ 지방자치단체에 미교부된 예산 (총 7,360억 5,200만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3,616억 700만원, 49%)이고, 그 다음으로 미지급 지원비(3,383억 9,300만원, 46%)임.

□ 한편, 예산 편성 근거인 기초 1종·2종 및 타법 1종·2종 등 자격별 수급자 수·진료비와 실집행 수급자 수·진료비를 비교해보면, 편성시 근거한 수치가 다소 과다 계상되었음이 확인됨.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본진료비)	예산편성	실집행
기초 1종 수급권자 진료비	7,752,803 (1,164천명×8,800천원×75.7%)	7,236,025 (1,088,831명x8,779천원x75.7%)
기초 2종 수급권자 진료비	678,453 (390천명×2,300천원×75.7%)	628,250 (353,015명x2,351천원x75.7%)
타법 1종	369,787 (83천명×5,900천원×75.7%)	371,171 (81,431명x6,021천원x75.7%)
타법 2종		1,378 (820명x2,220천원x75.7%)

* '23년부터 신규 타법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동 사업은 의무지출예산으로 2023회계연도 기준 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바,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2023년도 진료비 추계의 경우 대상 인원을 기초 1종 116만 4,000명, 기초 2종 39만명, 타법 1·2종 8만 3,000명으로 추계하였지만,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기초 1종 108만 8,000명, 기초 2종 35만 3,000명, 타법1·2종 8만 2,000명으로, 편성 인원 대비 실집행 인원이 적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계는 연령대별 예상수급률과 통계청 추계인구를 고려[17]하여 산출한 것으로, 과다추계되는 경향이 있어 2024년도 예산부터는 최근 5년 증가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기타 의료 이용률 등을 포괄적으로 추계 산식에 포함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보건복지부는 2023년 예산에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3,383억원의 미지급금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료급여 예산을 1인당 진료비 단가 상승 추세와 예산 부족시 미지급금 발생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불용 예산은 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 이용이 감소하여 불용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사전에 편성한 미지급금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17) o 예상 수급권자수$_{YQ}$ = $\sum$(연령대별$_{(5세단위)}$ 예상수급률$_{YQ}$ × 통계청 추계인구$_{(5세단위)Y}$)
o 예상 수급률 = 전년도 실제수급율((연평균 수급자수/추계인구)*100)* 수급율 증감율 평균('12년~'21년)

□ 그러나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미지급금 지원 예산은 2022년 2,392억원의 예산 이·전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손실액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2022년 대규모 예산 이·전용이 2023년도의 미지급금 지원비 편성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2023회계연도의 대규모 예산의 불용을 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음.

□ 참고로, 2023회계연도 기준 「의료급여법」 제25조[18]에 따라 조성된 시·도 의료급여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국고 기준 1,377억원의 결산 잉여금이 누적되어있는바(【참고】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립된 금액이 충분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다 요구에 기인할 경우 향후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현황, 의료 이용률 추세 등을 파악함으로써 지원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더 이상의 이·전용 및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참고】	시 · 도 의료급여기금 2023회계연도 결산 (2024.4.기준)

<2023회계연도 시·도 의료급여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실집행액	결산 잉여금
합 계	8,360,015	8,222,287	137,728
서울	889,065	873,872	15,193
부산	931,791	918,470	13,321
대구	584,199	578,222	5,977
인천	517,832	566,164	-48,332
광주	323,793	327,918	-4,125
대전	256,604	259,594	-2,990
울산	145,767	145,094	673
세종	23,932	24,309	-377
경기	1,586,869	1,485,531	101,338
강원	255,943	281,734	-25,791
충북	236,280	260,224	-23,944
충남	310,870	328,999	-18,129
전북	488,726	475,123	13,603
전남	433,770	427,814	5,957
경북	600,985	572,977	28,007
경남	682,726	600,182	82,544
제주	90,862	96,060	-5,198

* 국비 기준

※ 참고 : 의료급여기금

· **설치 근거** :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기금

· **재원** :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목적** :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운영체계** :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기관에 급여비 지급

3) 긴급복지(11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및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기준 3,154억 8,600만원에 이·전용된 238억 7,300만원을 포함한 3,393억 5,900만원으로, 400만원의 불용액을 제외하고 전부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긴급복지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긴급복지	315,486	315,486	-	23,873	-	339,359	339,355 (324,538)	-	4

나) 긴급복지제도 개요

□ 긴급복지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19]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이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긴급복지 지원내용(2023년 기준) >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주 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주지원 중인 가구에 상황별 필요시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19)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기준 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일 것(소득기준), ②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지역별로 일정기준 이하일 것(재산기준), ③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일 것(금융재산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추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다) 예산 전용 이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의 재발 방지 및 긴급복지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 필요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받고 불용하는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본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편성한 당초 본예산은 3,153억 400만원이었으나,

2023년 9월 긴급복지 사업비 부족 해소를 위해 기초의료급여 사업비에서 238억 7,800만원을 전용 받아 예산현액은 총 3,391억 8,200만원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을 살펴보면, 148억 1,700만원을 불용하여,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전용 받은 238억 7,800만원 중 62%가 불용처리됨.

<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 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전용	예산현액 =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315,304	23,878	339,182	339,182	324,365	14,817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예산 운용 측면에서 예산의 전용은 사업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기

는 하나, 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상당분 불용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20]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24억원 중 타 지원 연계, 단기 지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 노력을 고려하여 84억원을 감액한 238억원을 전용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긴급지원 사업의 특성상 실집행 예상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에 그치지 않

---

20)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고 긴급복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긴급복지 위기사유별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원건수 비중이 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국민들에게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보아 사업의 직접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주체의 점검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긴급복지 위기사유별 지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지원건수	비율
총계		518,507	100.0
주소득자 소득상실		7,326	1.4
질병, 부상		75,312	14.5
방임, 학대		459	0.1
가정폭력 (가정내성폭력포함)		3,037	0.6
지자체 조례		205,619	39.7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곤란		2,727	0.5
복지부 장관 고시	이혼	10,120	2.0
	단전	3,586	0.7
	휴폐업 (주소득자)	12,846	2.5
	휴폐업 (부소득자)	316	0.1
	실직 (주소득자)	58,101	11.2
	실직 (부소득자)	2,025	0.4
	출소	48,476	9.3
	노숙	1,112	0.2
	지자체조례및지자체장인정	3,137	0.6

구분		지원건수	비율
복지부 장관 고시 (계속)	화재등실질적영업곤란 (주소득자)	386	0.1
	화재등실질적영업곤란 (부소득자)	76	0.0
	복지사각지대	64,272	12.4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0,760	2.1
	자살고위험군	1,802	0.3
	코로나19-무급휴직 (2023년종료)	119	0.0
	코로나19-자영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3년종료)	4,159	0.8
	범죄피해자	38	0.0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2023.7월시행)	1,028	0.2
기타*		1,668	0.3

* 기타 : 고시나 법률에 따라 위기사유가 신설되어도 시스템 상 위기사유 코드 신설 시까지 임시로 기타로 처리, 예)'23년의 경우 특별법 코드 신설 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 기타로 처리
** 자료: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은 제도 특성상 위기사유 발생(가출, 행방불명, 화재, 학대, 이혼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근 5개년간 긴급복지지원사례의 약 4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 건수>

(단위 :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지원건수	336,782	839,967	673,333	491,824	518,507
제2조제8호 지원건수 (비율)	162,959 (48.3)	459,612 (54.7)	267,182 (39.7)	183,848 (37.4)	208,756 (39.9)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긴급복지 지원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한편, 최근 3년동안 동일인의 긴급복지 요청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대상자의 40%가 법률상 다른 위기 사유로 다시 요청하여 지원받고 있음.

<최근 3개년 동일인의 긴급복지 재지원 비율>

(단위 : 명, %)

연도	전체 지원자수	신규 지원자수 (2006년*~해당년도 이전 긴급복지지원 이력이 없는 자 수)	기존 지원자수 (2006년~해당년도까지 이전 긴급복지지원 이력이 있는 자 수)	재지원 비율
2021	200,649	126,660	73,989	36.9
2022	154,823	89,083	65,740	42.5
2023	171,462	101,115	70,347	41.0

주: 2006.3.2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 긴급복지는 기존에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라도,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상 위기상황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의 운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타 제도로 연계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전용받은 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자활사업(1137-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및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복지 사업으로서,

□ 2023회계연도 본예산 6,935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 및 이·전용 106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042억 7,800만원으로, 이 중 7,042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자활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93,573	693,573	50	10,655	-	704,278	704,226 (682,991)	50	2
· 자활근로	609,393	609,393	-	10,662	-	620,055	620,055 (599,645)	-	-
· 자활센터 운영지원	83,915	83,915	-	-	-	83,915	83,915 (83,090)	-	-
· 자활사업관리	265	265	50	△7	-	308	256 (256)	50	2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동 사업은 ①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별 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③ 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자활사업 관리로 구성됨.

□ 내역사업 중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것임.

< 자활근로 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의무참여: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근로능력 있다고 판정) - 희망참여: 조건부 수급자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지원내용	-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급여 수령 -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근무여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월 소득 최대 1,604천원('23년)

자료: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업그레이드형과 근로유지형으로 나누어지고, 업그레이드형은 다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및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구분됨.

-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업그레이드형의 경우 참여 욕구가 높고 일용직·임시직 등의 직업경험이 있는 자가 주로 참여하며, 근로 유지형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와 질병·양육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음.

< 자활근로 사업 유형별 내용(2023년 기준) >

(단위: 원)

구 분		내 용	사업유형	자활급여/일 (실비 포함)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일정한 매출액(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일정기간(최대 3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집수리, 청소, 세탁, 제과제빵 사업 등	61,690
	인턴·도우미형	일반기업체,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기업 자활인턴, 지자체 복지 도우미, 지역자활센터 자활 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장애통합보조교육, 폐자원 등)	54,000
근로유지형 (30% 미만)	근로유지형	현재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	31,670

자료: 보건복지부

□ 자활사업의 참여자 수는 2018년 41,000명, 2021년 60,000명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약 58,900명, 2023년 약 58,600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2023년 기준 사회서비스형이 전체 참여자의 59.3%(34,792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진입형은 23.2%(13,626명), 근로유지형은 약 11.8%(6,918명)를 차지하고 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 수 추이 >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48,903	55,436	60,476	58,902	58,633
시장진입형	7,419	8,291	9,398	13,401	13,626 (23.2%)
인턴·도우미형	2,933	3,473	3,811	3,627	3,297 (5.6%)
사회서비스형	31,079	35,783	39,265	34,853	34,792 (59.3%)
근로유지형	7,472	7,889	8,013	7,021	6,918 (11.8%)

자료: 보건복지부

□ 다음으로, 자활사업 지원조직 예산으로 자활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 예산은 839억 1,500만원으로, 이 중 830억 9,000만원이 실집행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개소, 광역자활센터 16개소, 지역자활센터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는 복지부 지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활센터운영지원 내역사업 결산 내역(지원조직 현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최초 설치	주 요 기 능	개소	2023 예산현액 (실집행액)
자활센터운영지원 (내역사업)				83,91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	'19.7. (중앙자활센터, 자활연수원 통합)	○경영평가, 자활기업 성장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및 청년저축계좌 신설에 따른 인건비 지원, 통장사업개편 추진 신규증원 ○청년저축시스템 구축, 청년저축계좌 관리지원	1	15,322* (14,937) * 예산 14,774 + 전년도 이월액 548
광역자활센터 운영	'04.4.1.	○시도 단위 자활기업 창업지원 및 수급자 차상위자의 취업 창원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 경영지도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청년저축계좌 사례관리	16	6,650 (6,567)
지역자활센터 운영	'96.6.29.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저소득층에 자활 정보 제공, 상담, 취업알선, 교육 업무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250	62,491 (62,13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중앙자산키움펀드(현 중앙자활자금)적립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자활기금과의 통합 검토 필요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 수익을 적립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현 중앙자활자금)와 자활기금과의 통합 검토 등 적립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에는 자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재원으로 별도 회계로 관리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고 그 규모가 2023회계연도 기준 조성액 483억원, 보유 잔액 2,293억 6,200만원으로서 매년 성장하고 있음.

< 중앙자산키움펀드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조성액	사업비	2,547	10,992	19,363	28,031	22,672	26,107	28,907	40,250	40,589	50,557	48,302	321,492
	이자	7	49	129	476	366	1,084	1,392	1,941	1,145	1,212	4,328	12,215
합계		2,554	11,041	19,492	28,507	23,038	27,191	30,299	42,191	41,734	51,769	52,630	333,707
집행액	장려금	33	344	815	1,982	1,635	2,250	3,237	1,658	1,699	3,563	4,601	22,224
	사업비	-	-	566	1,934	3,371	2,955	6,087	5,761	8,293	18,380	29,952	78,780
	운영비	-	-	-	67	114	175	184	188	161	901	1,518	3,341
합계		33	344	1,381	3,983	5,120	5,380	9,508	7,607	10,153	22,844	36,071	104,345
보유잔액		2,521	10,697	18,111	24,524	17,918	21,811	20,791	34,584	31,581	28,925	16,559	229,362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안의 배경으로서 자활사업의 구조를 설명하면, 자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집행되는데, 이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비율에 따라

자활근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단은 비영리법인인 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일터를 말하고,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 규정인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재원은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중 일부, 자활근로사업단의 해체 시 잔여 자산, 자활기업 폐업 시 중앙자산키움펀드에서 기 지원받은 현금과 현물 등의 정산금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음.

- 이러한 납부금은 법적으로는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과 지역자활센터 간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계약에 근거한 것임.

<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규정 >

제23조(재원) 펀드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펀드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되거나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
4.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환수해지되는 경우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
5. 자활기업 폐업 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받은 현금·물품 및 자활기업의 월세, 물품대금, 기타채무 등의 정산 후 잔액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그 밖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립금 및 수익금

제23의2(용도) 펀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장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2. 제2장의2에 따른 창업 지원사업
3. 제3장에 따른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참여자의 자활 촉진과 전국적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사업모델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

□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용도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그 밖에 자활 촉진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사업모델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펀드관리위원회가 그 사업 내역을 심의함.

- 펀드관리위원회는 중앙자산키움펀드 관리를 위해서 개발원에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로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앙자산키움펀드는 법정 부담금이나 정부 출연금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재정법」상 기금[21]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인건비를 전액 국고보조하는 공공사업의 결과로 발생하고,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지출 내역이 국가재정으로 지원되는 자활사업과 유사하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정감사의 대상으로도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정관리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조성 및 지출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22]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

2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자금을 적립하는 자활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중앙자산키움펀드 또한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참고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제2항[2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24] 및 제26조의4[25]에 따라 지자체의 출연금, 자활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기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및 신용보증 비용 등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체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및 226개 시·

---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 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군·구) 중 16개 시·도 및 221개 시·군·구 등 237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고, 적립액은 총 4,223억 3,856만원임.

<자활기금 설치 및 조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자활기금 설치 지자체	적립액
시·도	16	76,400
시·군·구	221	345,939
계	237	422,339

자료 : 보건복지부

□ 다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중앙자산키움펀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제2항을 근거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 일부의 관리·운영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된 형태라는 입장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자활근로사업 운영 실적에 따른 지자체 간 자활기금 적립규모의 편차 등 지자체 차원의 자활기금 집행에 한계성을 이유로, 중앙차원에서 지역균등성을 고려하여 집행하기 위해 중앙자산키움펀드를 별도 적립·운영하고 있음.

□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인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나,

사업수행주체가 각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예산이 이원화되어있음.

□ 그러나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의의를 살펴보면, 예산의 전체적인 관련성 파악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국회의 예산통제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임에 비추어,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재원의 경우 통일적으로 관리 및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재원 통합에 관련하여서는 중앙자산키움펀드에 자금을 적립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는 있으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취지에서 장애 요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자활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1137-3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26]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184억 7,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사업	18,479	18,479	-	-	-	18,479	18,479 (18,354)	-	-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 4. 삭제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근로능력 심사 기준 및 절차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27]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8]에서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의 경우,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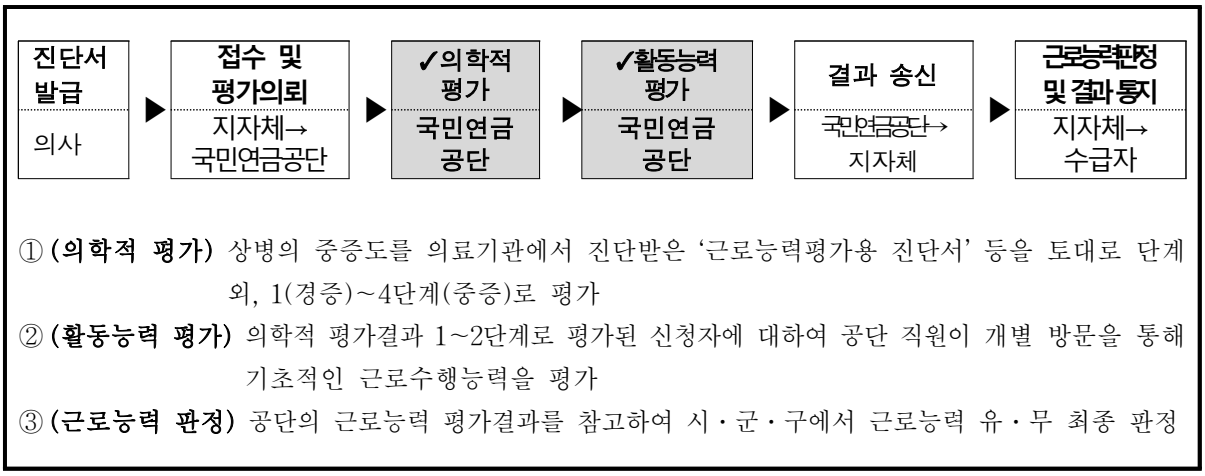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려는 평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의 근로능력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준 및 절차 >



① **(의학적 평가)** 상병의 중증도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단계 외, 1(경증)~4단계(중증)로 평가

② **(활동능력 평가)** 의학적 평가결과 1~2단계로 평가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 방문을 통해 기초적인 근로수행능력을 평가

③ **(근로능력 판정)** 공단의 근로능력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시·군·구에서 근로능력 유·무 최종 판정

자료 : 보건복지부

다)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업무의 적기 처리율 제고 필요

근로능력평가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능력평가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들의 수급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두 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 범위와 기본재산액 공제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완화하여 왔음.

□ 먼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서는 ①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④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였음.

□ 다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과 추가적 완화 조치에서는 ⑤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⑥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⑦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⑧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⑨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조치[29]를 2021년 10월로 앞당겨 시행하였음.

29)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혁 >

내 용		시행시기	비고
1차 종합 계획	①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7.11~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19.1~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19.1~	
	④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 환산율 인하(4.17% → 2.08%)	'19.9~	
추가 완화 및 2차 종합 계획	⑤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19.1~	
	⑥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19.1~	
	⑦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1~	
	· 부양비 인하(15~30% → 10%)	'20.1~	
	⑧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21.1~	
	⑨ 그 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2.1~	'21.10 조기시행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신청건수도 2020년 19만 2,239건, 2021년 19만 7,044건, 2022년 20만 0,85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3년 18만 2,415건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근로능력평가의 적기 처리율을 보면, 최근 5개년동안 2020년 78.0%에서 2023년 86.3%로, 대체로 80% 초반대의 처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 및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5항[30]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도별 기초수급자 및 근로능력평가 신청건수 및 적기처리율>

(단위: 명,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초수급자 수	1,881,357	2,134,186	2,359,672	2,451,458	2,554,627
근로능력평가 신청건수	185,055	192,239	197,044	200,851	182,415
근로능력평가 결정건수(A)	169,535	176,309	182,692	186,734	166,941
기한 내 처리(B)	142,591	137,557	156,200	153,555	144,022
기한내 미처리	26,944	38,752	26,490	33,179	22,919
적기처리율(B/A)	84.1	78.0	85.5	82.2	86.3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의 2023년도 적기 처리율 수치가 전년대비 높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2023년도 적기 처리율이 높아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인 1조로 구성된 출장 평가건수의 증가보다 1인 출장 평가 건수를 늘린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임.

---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근로능력평가) ① 근로능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평가
2. 활동능력 평가

② ~ ④ (생략)

⑤ 공단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 근로능력평가 중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출장건수 >

(단위 :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장건수	109,586	84,647	56,625	102,117	108,637
1인 출장	59,862 (54.5%)	54,258 (64.1%)	37,289 (65.9%)	75,629 (74.1%)	79,804 (74.5%)
2인 출장	49,724 (45.5%)	30,389 (35.9%)	19,336 (34.1%)	26,488 (25.9%)	28,833 (26.5%)

자료: 보건복지부

- 신규 수급자와 정신신경계 질환자 평가를 위한 활동능력평가 출장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출장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임.[31)]

- 근로능력심사 중 활동능력평가를 1인이 수행하는 경우,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인 평가의 특성상 정신신경계 질환자 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평가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고,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반면에 근로능력평가 업무의 증가로 인해 근로능력평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들은 해당 기간만큼 수급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들의 수급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평가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1)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지원실, “대면업무 2인 1조 출장 수행 보완지침”, 2016.06.

6) 노숙인 등 복지지원(1931-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은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종사자 인건비·자활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며, 노숙인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것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 51억 6,300만원에서 5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노숙인 등 복지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163	5,163	-	-	-	5,163	5,082 (3,375)	-	81
· 노숙인시설기능 보강	4,195	4,195	-	-	-	4,195	4,121 (2,432)	-	74
· 노숙인지원체계구축	834	834	-	-	-	834	834 (816)	-	-
· 노숙인제도개선	134	134	-	-	-	134	127	-	7

□ 내역사업으로, ① ‘노숙인시설기능 보강’은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② ‘노숙인지원체계구축’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일자리·주거 및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연계하고 노숙인시설종사자를 교육하는 사업이며 ③ ‘노숙인제도개선’은 노숙인 종합계획 연구 및 노숙인 실태조사 등 노숙인 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임.

나) 노숙인지원 사업의 지역간 격차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노숙인지원 사업의 지방으로의 전부 이양에 따라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교육 확대 및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노숙인지원체계구축' 중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추진 중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의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응급조치·심리상담 등 위기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전국 6개 시·도[32]에 총 13개소의 센터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2022년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시설 4개소가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4개 시설이 신규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족으로 2개 시설만 신규 선정되고,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원거점 시설로 선정되었음.

- 선정된 노숙인시설은 향후 2~3년간 거리노숙인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 보호 활동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2022년 선정된 충청남도 천안시 희망쉼터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23년 운영 중인 지원거점 시설은 총 6개소임.

32)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노숙인시설>

연도	시설	비고 (유지, 신규 등)
2022	(인천광역시)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유지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유지
	(전라북도 전주시) 다시서기센터	유지
	(충청남도 천안시) 희망쉼터	포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최양업 토마스의집 (구) 원주노숙인센터	신규
	(서울특별시) 서울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신규
	(서울특별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신규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준 사업을 수행중인 6개소 노숙인시설에서는 노숙인들에게 물품(도시락, 냉방·방한 용품 등) 배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의료지원·(임시) 주거지원 연계 등 서비스 연계를 수행중인데, 서비스 연계 건수 및 실제 수혜자 수 등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노숙인시설 집행 실적>

	서비스연계 건수/횟수	실제 서비스 수혜자 수	예산 (실집행액)
한국자활개발원	6	68	115 (115)
서울브릿지 종합지원센터	688	128	100 (87)
전주다시서기 지원센터	771	62	63 (63)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143	64	50 (50)
내일을여는자활쉼터	574	223	62 (60)
최양업 토마스의 집	427	34	50 (5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노숙인 대상 자격취득과정 운영 실적이며, 노숙인시설별 서비스 연계 건수에는 물품(도시락, 폭염·방한 용품 등) 배부 실적 포함

** 노숙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연계, 긴급복지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임시) 주거지원연계 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의 실인원 수

*** 자료 : 보건복지부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전국 1,668명의 시·도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인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 설치되어있고, 이 사업에 따라 선정된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시설도 고려하면 전국 총 10개 시·도[33]에서 노숙인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 운영 중임.

<시·도별 거리노숙인 및 노숙인지원센터 유무>

시·도	거리노숙인 수 (노숙인 지원센터 O/X)	시·도	거리노숙인 수 (노숙인 지원센터 O/X)
서울	741명 (O, 3개소)	강원	25명 (X) * 지원거점 시설
부산	128명 (O, 3개소)	충북	4명 (X)
대구	99명 (O, 1개소)	충남	24명 (X)
인천	128명 (X) * 지원거점 시설	전북	67명 (X) * 지원거점 시설
광주	68명 (O, 1개소)	전남	31명 (X)
대전	70명 (O, 1개소)	경북	2명 (X)
울산	8명 (X) * 지원거점 시설	경남	14명 (X)
세종	8명 (X)	제주	50명 (O, 1개소)
경기	201명 (O, 3개소)	**계**	1,668명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3개소)

주: '23년말 기준 지자체를 통해 취합된 자료이며, 거리는 일시보호시설 이용자수를 합한 숫자임
자료 : 보건복지부

□ 현재 7개 시·도[34]에는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거리 노숙인에 대한 필수물품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 지원이 어려워 향후 거점시설 확대 설치하는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2024년부터 관련 사업 예산 폐지로 직접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거리노숙인 등 보호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인천, 울산, 강원, 전북
34)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둘째, 2005년 노숙인자활시설·종합지원센터 지방 이양 이후, 2022년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도 지방 이양되어 노숙인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노숙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노숙인 지원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2024년 6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중 노숙인 관련 조례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 14개 시·군·구에 불과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노숙인복지사업 중 시설 운영의 지방정부 이양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지방정부의 노숙인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별 노숙인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종교 시설과의 협력 등 전달체계에 대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률상으로도, 현재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은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3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36]을 수립하고, 동법 제8조[37]에 따라 지방정부는

---

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6)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 및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1～'25)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보호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간 격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노숙인 등 종합계획 시행계획 평가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2631-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25억 1,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516	2,516	-	-	-	2,516	2,516	-	-

자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사업 예산은 ① 인건비 지원 17억 6,500만원, ② 조사연구, 국제협력사업, 교육, 홍보 사업 등 사업비 6억 3,700원, ③ 기관운영비 1억 1,2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 전액을 집행하였음.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사업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ⅰ) 조사연구 및 협의 조정, ⅱ) 국제협력, ⅲ) 사회복지증진, ⅳ) 교육훈련, ⅴ) 홍보출판, ⅵ) 시스템 구축·운영의 여섯 가지 사업임.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사업 예산집행 총괄표>

(단위: 천원)

항목		세부내역	승인예산 (A)	변경예산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비고
총 계			2,516,000	2,516,000	2,516,000	-	
인건비			1,767,000	1,767,000	1,767,000	-	
사업비			637,000	637,000	637,000	-	
사업비	조사연구 및 협의조정	소계	30,000	30,000	30,000	-	
		사회복지조사연구	16,000	16,000	16,000	-	
		복지담론조성	14,000	14,000	14,000	-	
	국제 협력	소계	40,000	40,000	40,000	-	
		ICSW 활동	28,000	28,000	28,000	-	
		해외기관 교류협력	12,000	12,000	12,000	-	
	사회 복지 증진	소계	60,000	60,000	60,000	-	
		사회복지의 날	30,000	30,000	30,000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30,000	30,000	30,000	-	
	교육 훈련	소계	25,000	25,000	25,000	-	
		직무능력향상교육	25,000	25,000	25,000	-	
	홍보 출판	소계	90,000	90,000	90,000	-	
		월간복지저널발간	84,000	84,000	84,000	-	
		복지타임즈운영	6,000	6,000	6,000	-	
	시스템 구축 · 운영	소계	392,000	392,000	392,000	-	
		고객만족도조사 및 경영개선컨설팅	90,000	90,000	90,000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12,000	112,000	112,000	-	
		ISP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90,000	190,000	190,000	-	
운 영 비			112,000	112,000	112,000	-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 보조금 교부 신청시 자부담액 명시 필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시 예상되는 자부담액의 적시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38]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9]가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

□ 2023회계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총 예산은 759억 1,100만원으로, 이 중 149억 2,800만원(19.6%)은 국고지원 보조금, 나머지 609억 8,300만원(79.4%)은 기타사업수입 및 기타수입 등 자체사업 수입임.

---

38)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39)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2023회계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총계	일반회계 (국고지원)	기타사업수입		기타수입		
		일반회계	수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익사업 특별회계	복지금고 특별회계
75,911	14,928	299	1,190	57,315	149	2,029

* 기타수입 일반회계 : 후원수입 + 전입금 + 이월금 +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 기타수입 수익사업 특별회계 : 이월금 +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 복지금고 특별회계 : 후원수입 + 이월금 +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 국고보조금 149억 2,800만원은 동 사업인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사업 예산(25억 1,600만원)과 보건복지부 타 실·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탁 보조금(124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 수행 시에는 국고보조금 외에도 자부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별 국고지원 및 자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	국고지원	자부담*
계	50,273	14,928	35,34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3,160	2,516	644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2,746	2,645	101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44,282	9,682	34,600
지역축제 나눔활성화	85	85	0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는 국고보조금 이외에도 부족분을 후원 및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사업 운영시 자부담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자부담액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사회복지협의회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규정>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추가 자부담액을 배제하고 국고보조금만을 기입할 경우 소요 예산의 수준 및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시 예상되는 자부담액을 적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시 신청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이행 준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다) 적정 수준의 퇴직적립금 적립 필요

퇴직적립금 적립 기준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퇴직적립금 적립을 통하여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40] 및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는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연도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퇴직 적립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협의회 최근 5개년 퇴직적립금 내역>

(단위: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1,142,780	85,300,125	103,063,108	166,240,080	175,771,590

자료: 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총 급여의 30일분(연봉의 1/12)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2023회계연도 동 사업상 인건비 17억 6,700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 4,700만원이라는 점에서 2023회계연도 퇴직적립금 1억 7,500만원은 과도하게 적립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퇴직적립금 계상 기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제27조(퇴직급여)”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적립금 · 편성기준 : 전직원 총급여 × 1/12

□ 다만,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5년간의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퇴직적립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23회계연도 동 사업만으로 퇴직적립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었다고 보기에는 과거 퇴직적립액 기준대비 과소하게 적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인바, 이를 일부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관계 규정을 참고하여 퇴직적립금 추계액 설정 등 퇴직적립 기준을 재정립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과다 적립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복지행정지원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2,902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2,920억 5,700만원으로,

이 중 2,86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90,250	290,250	292,057	286,076 (263,533)	2,244	3,736
일반회계	103,490	103,490	105,297	101,281 (90,192)	2,193	1,823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2632-302)	5,140	5,140	5,140	5,116 (5,074)	-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40-300)	10,885	10,885	12,373	9,734 (9,734)	1,199	1,440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2640-304)	62,887	62,887	62,887	62,887 (61,220)	-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2640-305)	21,572	21,572	21,572	21,572 (12,260)	-	-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40-312)	1,488	1,488	1,708	418 (418)	954	336
고독사예방관리 체계구축 (3347-302)	1,315	1,315	1,413	1,360 (1,292)	36	17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01)	79	79	75	67 (67)	2	6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4)	123	123	129	127 (127)	2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6,760**	**186,760**	**186,760**	**184,795 (173,341)**	**51**	**1,91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2639-300)	23,542	23,542	23,542	23,542 (22,887)	-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639-301)	2,240	2,240	2,240	2,182 (2,073)	45	12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2639-306)	160,978	160,978	160,978	159,071 (148,381)	6	1,901

2)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차세대 추진단 비상대응본부 운영 부족분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등 10억 9,000만원을 전용 증·감액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전용 사유
계	1,090 △1,090	
<일반회계>	1,090 △1,09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00)	690 △690	차세대 추진단 비상대응본부 운영 부족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진단 조사용역비 등 전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12)	400 △400	전자바우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전용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기간 미도래(11억 9,900만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타 국 소관 제도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공고 지연(9억 5,400만원) 등 총 22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이월 사유
계	2,244	
<일반회계>	2,193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3347-302)	36	연구용역 기간 연장('24.2월) 이월 *'24.3월 집행완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00)	1,19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AI활용 초기상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24.상반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12)	954	타국소관 제도 시행시기 조정(사업부서)에 따른 사업공고 지연(~'24.하반기)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01)	2	차년도 기본경비 부족분 이월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4)	2	차년도 기본경비 부족분 이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639-301)	45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4.상반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6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4.상반기)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사업 낙찰차액 및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계약해지에 따른 잔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서 신규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불용 등 총 37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금액	불용 사유
계	**3,736**	
<일반회계>	**1,823**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2632-302)	24	일반운영비 집행잔액(14백만원)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10백만원)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3347-302)	17	집행잔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00)	1,440	정보화 용역사업 낙찰차액 (176백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사업 과업변경(120백만원) 및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계약해지(494백만원), 맞춤형급여 활성화(166백만원) 및 사업관리 집행 잔액 (483백만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2640-312)	336	- 바우처시스템, 개별시스템 미통합에 따른 후속 교육 미추진 (76백만원), 바우처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40백만원) - 세부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이월 예산으로 공고 3회 유찰에 따른 불용 (220백만원)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7011-201)	6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13**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639-301)	12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금액	불용 사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1,901	- (방문건강관리) 신규채용 지연, 인력휴진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일부 지자체 사업비 불용 등 집행잔액 (1,660백만원) - (의료급여) 지역간 정원 조정시 국고보조율 차이로 인한 변동가능성 감안, 인건비 일부 미교부(195백만원) 등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2639-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인력의 확충과 직급별·직무별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22억 4,000만원 중 2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240	2,240	-	30 △30	-	2,240	2,182 (2,073)	45	12
· 사례관리 정책지원 센터 운영	1,405	1,405	-	-	-	1,405	1,405 (1,295)	-	-
· 사회복지교육훈련	660	660	-	-	-	660	660 (660)	-	-
· 일반운영비	175	175	-	30 △30	-	175	117 (117)	45	12

자료: 보건복지부

□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등을 위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사회복지인력 교육훈련’은 지자체 사회복지인력(동장, 팀장, 실무자, 신규자 등)에 대한 직급별·직무별 교육 지원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나) 타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 수행 지양 필요

사례관리지원센터 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지원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 내용 분리의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중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복지 사업 및 정책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 연구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인건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업무 수행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간 위탁하여 매 연도 말 사업평가 및 계속 위탁 여부를 결정함.

- 2023년~2025년(3년)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14억 500만원을 보조받아 이 중 1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집행내역>

(단위: 원, %)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집행계획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인건비	상용임금	718,000,000	659,137,794	58,862,206	91.8
운영비	일반수용비	265,826,000	237,920,464	27,905,536	89.5
	공공요금 및 제세	400,000	152,900	247,100	38.2
	특근매식비	5,460,000	3,385,300	2,074,700	62.0
	일반용역비	387,690,000	369,488,150	18,201,850	95.3
	기타운영비	2,808,000	2,390,000	418,000	85.1
여비	국내여비	21,816,000	21,761,334	54,666	99.7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000,000	839,900	2,160,100	28.0
합 계		**1,405,000,000**	**1,295,075,842**	**109,924,158**	**92.2**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의 2023년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크게 ① 빅데이터 기반 통합사례관리 정책 지원, ② 통합사례관리 현장역량 강화, ③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로 구분됨.

<사례관리지원센터 사업내용>

빅데이터 기반 통합사례관리 정책 지원	1. 통합사례관리 조사 연구 2.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계 관리 3. 고독사 예방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4. 통합사례관리사업 관련 업무안내 제작 및 개정 5.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6. 직원 역량 강화
통합사례관리 현장역량 강화	1.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2. 지자체 사례관리 슈퍼비전 지원 3. 통합사례관리 사례공유 세미나 4. 시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5. 통합사례관리사 전국대회 6. 통합사례관리사 맞춤형 심리·정서지원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	1. 웹진 '희망e야기' 운영 2. 우수 통합사례관리 공모전 3.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사례관리지원센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3항[41]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임.

□ 그러나 2023년 집행 내역을 보면, 고독사·사망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 마련 연구, 고독사 예방 정책포럼,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시상 등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에 예산의 일부인 약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사례관리지원센터 집행내역 중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수행 내역>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내역
2023-9-12	300,000	고독사 사망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 마련 연구 자문회의 수당
2023-9-27	359,100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연구 사전 회의 대관비 및 운영비
2023-10-31	600,000	고독사·사망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 마련 연구 전문가 FGI 수당
2023-10-31	1,655,000	고독사·사망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 마련 연구 전문가 FGI 운영비
2023-11-09	2,376,000	고독사 예방 정책포럼 운영 위한 대관비
2023-11-22	940,000	고독사 예방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2023-11-22	21,110,000	고독사 예방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비
2023-11-22	3,300,000	고독사 예방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송출비
2023-11-23	8,800,000	20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자료집 제작
2023-12-06	480,000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우수사례 발표 수당
2023-12-06	3,300,000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온라인 송출비
2023-12-06	5,920,000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시상 및 사례집 제작비

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내역
2023-12-22	2,330,000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 사례집 제작
2024-01-05	2,300,000	「사회적 고립·고독사 사망자 판정기준 및 판정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제작
계	53,770,100	-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은 고독사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3347-302)'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예산은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관련된 곳에 한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3347-302) 사업>

사업목적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 등을 발굴하여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내용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고독사 위험자 지원 -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정책 연구 등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관리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추진 - 고독사 위험군 지원 : 인구학적 특성, 위험요인(건강, 소득 등)을 고려하여 위험군 선정, 대상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지속 관리체계에 관한 고독사 예방·관리 우수 사업 지원
2023년도 예산	13억 1,500만원

□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은 소득·소득·주거·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는 주요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으로서,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가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통합사례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사

업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3347-302)’ 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는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 내용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 사후적 판단에 보다 효율적일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대상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타 사업과 수행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 내용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자활·아동·보건 등 분야별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단위 공공부문 사례관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609억 7,800만원 중 1,59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원을 이월하고 19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60,978	160,978	-	-	-	160,978	159,071	6	1,901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229	18,229	-	-	-	18,229	18,229 (17,364)	-	-
자활사례관리	2,515	2,515	-	-	-	2,515	2,515 (2,366)	-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4,109	54,109	-	-	-	54,109	54,103 (51,173)	-	6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20,606	20,606	-	-	-	20,606	20,560 (16,869)	-	40
의료급여관리사	19,067	19,067	-	-	-	19,067	18,872 (17,182)	-	195
방문건강관리	46,452	46,452	-	-	-	46,452	44,792 (43,427)	-	1,660

□ 사례관리사란 복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원연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동 사업은 사례관리사 배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 예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 내역사업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지원’, ‘자활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음.

나)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실집행 부진 해결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률 제고 필요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해소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1인당 담당 아동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체계구축 지원 사업은 공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구별됨.

□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지자체 경상보조 비목) 203억 1,6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금액은 202억 7,600만원으로, 이 중 166억 3,200만원(81.8%)을 집행하여 36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 지자체 보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316	20,316	20,276	20,276	20,276	16,632	-	3,644	81.8%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 중 지자체 경상보조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집행률은 2021년 87.1%, 2022년 85.1%, 2023년 81.8%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3회계연도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 지자체 보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1	10,756	10,756	11,542*	11,542	11,542	9,364		2,178	87.1%
2022	16,943	16,943	16,844	16,844	16,844	14,423	-	2,421	85.1%
2023	20,316	20,316	20,276	20,276	20,276	16,632	-	3,644	81.8%

주: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방문건강관리에서 자체 세목 변경 (△850백만원)

□ 이와 같은 예산 집행 부진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715명 중, 2023년 12월 기준 597명만 채용되어(83.5%) 채용률만큼의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시·도별 배치 인원 대비 실제 채용 인원은 다음과 같음.

<시·도별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대비 채용인원('23.12 기준)>

(단위: 명)

구분	배치	채용	구분	배치	채용
전국	**715**	**597 (83.5%)**	경기	120	103 (85.8%)
서울	92	80 (86.9%)	강원	41	35 (85.3%)
부산	47	35 (74.4%)	충북	28	18 (64.2%)
대구	30	29 (96.6%)	충남	42	35 (83.3%)
인천	33	29 (87.8%)	전북	47	43 (91.4%)
광주	31	27 (87.1%)	전남	55	37 (67.2%)
대전	24	20 (83.3%)	경북	51	43 (84.3%)
울산	14	11 (78.5%)	경남	45	37 (82.2%)
세종	2	2 (100%)	제주	13	13 (100%)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저조한 채용률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내 채용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처우로 인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이직이 잦다는 점을 사유로 들고 있음.

□ 그러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하여 개별 보호·관리 계획 등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

실제 채용이 이루어져야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배치 인원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파악과 대책 마련 등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시·도별 채용된 아동보호전담요원 1인당 담당 아동수를 살펴보면, 최소 39.5명부터 최대 75.1명, 시·군·구별 통계의 경우 전담요원 1인당 최소 7명부터 최대 152.5명까지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당 담당 아동 수>

(단위: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2.2	52.1	59.6	42.6	48.2	46.6	43.8	46.6	39.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3	48.3	75.1	51.2	43.9	73.6	47.2	62.9	52.2

* 대상 아동 수/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인원
** '23년 말 기준 인원
*** 자료 :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당 담당 아동 수>

구분	지역	1인당 담당 아동 수
최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상북도 고령군	7명
최대	전라남도 순천시	152.5명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직접적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1인당 담당 아동 수에 따라 업무의 질이 영향받게 되므로,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 인원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채용을 독려하여 실집행 부진을 개선하고, 지역별 업무 부담 편중을 관리하여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는 등 아동보호 업무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42]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628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2,887	62,887	-	-	-	62,887	62,887 (61,220)	- (586)	- (1,081)

□ 결산 내역을 보면, ① 인건비로 정규직 471명 및 상용직 206명 등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436억 6,300만원, ② 시설관리비(임차료 등), 사업운영비로 19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사회보장정보원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ⅰ) 복지멤버십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AI활용 초기상담 지원시스템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등 정보서비스 사업, ⅱ) 사회보장정보 연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격 판정체계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안정성 강화 등 사회보장 급여 제공 업무, ⅲ) 사회보장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개방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혁신 플랫폼 강화 업무가 있음.

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나) 연말 계약에 따른 예산 이월 주의

피보조기관의 보조금 집행 시 연말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 이월 주의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의 2023회계연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명목으로 보조받은 628억 8,700만원 중 61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8,6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0억 8,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실집행 내역>

(단위: 원)

보조금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62,887,000,000	61,219,657,194	586,430,000	1,080,912,806

□ 차년도 이월액은 모두 일반용역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약 44억 3,100만원 중 약 5억 8,600만원(13%)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사회보장정보원 운영비 비목별 집행 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A)	집행(B)	이월(C)	불용(A-B-C)
운영비	19,801,354,000	18,866,512,476	586,430,000	348,411,524
상용임금	138,864,000	128,062,340	-	10,801,660
복리후생비	16,884,000	15,274,420	-	1,609,580
일반운영비	13,158,159,000	12,934,432,503	-	223,726,497
여비교통비	426,245,000	406,415,298	-	19,829,702
업무추진비	301,098,000	264,091,960	-	37,006,040
용역비	4,431,354,000	3,801,665,811	586,430,000	43,258,189
자산취득비	1,328,750,000	1,316,570,144	-	12,179,856

□ 이월된 5억 8,600만원 중 약 5,900만원 수준인 직원 채용 업무위탁 계약 외 ① 원내시스템 기능개선 및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 사업(4억 6,000만원), ②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3,300만원), ③ 청렴 홍보 콘텐츠 및 저작물 제작(1,900만원) ④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1,300만원) 계약은 모두 연말 (11월 및 12월)에 계약되었음.

<사회보장정보원 이월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이월금액	최초 입찰공고	사업기간	계약업체	이월 사유
직원 채용 업무위탁 사업	141,550	59,990	'23.1.25.	'23.2월 ~ '24.2월	㈜휴스테이션	용역사업 계약기간이 차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이월
원내시스템 기능개선 및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 사업	484,400	460,700	'23.11.24.	'23.12월 ~ '24.6월	㈜핸디소프트	용역사업 계약기간이 차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이월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33,000	33,000	'23.12.20.	'23.12월 ~ '24.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기재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재부 조사일정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렴 홍보 콘텐츠 및 저작물 제작	19,740	19,740	'23.11.27	'23.12월 ~ '24.4월	㈜글로라이즈	용역사업 계약기간이 차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이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45,000	13,000	'23.11.2.	'23.11월 ~ '24.2월	㈜믿는구석	용역사업 계약기간이 차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이월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실적보고서 재구성

□ 「국가재정법」 제48조[43]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의2[44]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①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③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이월을 허용하고 있음.

□ 용역과제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단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지나친 사업 기간 단축은 부실한 사업 또는 사업 실패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월된 사회보장정보원의 용역과제는 사업 기간을 12월 연말에서야 시작한 결과 이월이 명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늦은 발주

---

4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4)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연초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계약 체결을 조기에 집행하였다면, 대부분 용역과제의 계약 기간이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2023회계연도에 종료하고 예산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시 구체적인 필요성과 집행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 내 집행 가능성을 파악한 후 교부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640-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등 주요 복지업무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관련 법률·제도·지침 등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108억 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8,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23억 7,300만원이고, 이 중 9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9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14억 4,0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885	10,885	1,488	-	-	12,373	9,734	1,199	1,440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	-	494	128	-	622	128	-	49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3,440	3,440	905	-	-	4,345	3,364	770	2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관리	2,918	2,918	-	262	-	3,180	2,697	-	483
맞춤형 급여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1,887	1,887	89	△582	-	1,393	1,227	-	166
IT 신기술 활용 지능형 서비스 구현	2,640	2,640	-	192	-	2,832	2,318	429	85

□ 내역사업별로 사업내용 및 예산현액을 살펴보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수행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을 위한 사업(6억 2,200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사업은 부모급여 도입,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사업(43억 4,500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능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복지포털 안내, SMS 발송 요금, 평가위원 수당 등) 등 운영비와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31억 8,000만원),

‘맞춤형 급여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사업은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 시행(’21.9～)됨에 따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본 개통에 맞춰 업무 담당자 교육 및 각종 홍보, 통보·고지 등을 위한 사업(13억 9,300만원),

‘IT 신기술 활용 지능형 서비스 구현’ 사업은 IT 신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서비스 구현으로 사회복지업무 전자화 지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임(28억 3,200만원).

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범정부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확대 운영해오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주로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복지 대상자의 선정,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수급자의 자격정보 및 수급 이력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임.

□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복지사업과 수급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 시스템으로는 데이터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의 재구축이 요구되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시기인 2013년 복지사업 수는 293개, 행복e음 복지급여액은 1,262억원이었으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당시 2020년 복지사업 수는 342개(16% 증), 행복e음 복지급여액은 3,460억원(174% 증) 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연도별 복지사업과 수급대상자 현황 >

(단위: 개, 만명, 백만원)

연도별	복지사업 수[1)]	수급 대상자[2)]	행복e음 복지급여액[3)]
2013	293	1,596	12,621,222
2014	360	1,599	15,711,457
2015	360	1,620	19,390,691
2016	350	1,621	20,505,905
2017	347	1,632	21,589,862
2018	350	1,883	24,572,493
2019	360	1,949	30,794,232
2020	342	2,315	34,604,260

주 1) 사회보장위원회의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기준
2) 행복e음 사업별 현황(중복제외) 시설수급자 포함 수급권자수 기준
3) 행복e음 시스템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기준(자격정보 제공에 의한 급여는 제외)

□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사업의 존재로, 수급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에 요구되는 많은 서류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을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 맞춤형 급여를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구축 목표)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❶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❷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❸복지로로 개편

이전(AS-IS)		향후(TO-BE)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중앙·지자체 공무원용)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아동·장애인 등 분야별 개별시스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용)
복지로	⇨	대국민포털 복지로 (국민용)

자료 : 보건복지부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2018년 5월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총 사업비는 3,560억원이었음.

□ 이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을 정리한 「사회보장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이 발표되었으며('19.4),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 완료되었음('19. 11).

□ ISP결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총사업비가 조정되어 2019년 ~ 2027년 총 사업비 3,496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LG CNS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과 3개년('20.4.~'22.12.)에 걸쳐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20.4., 총 1,270억원)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LG CNS 컨소시엄 계약 내용>

구분	1차 연도 계약	2차 연도 계약	3차 연도 계약
기간	'20.4.23.~12.19.	'20.12.20.~21.12.14.	'21.12.15.~22.12.9.
계약금액	200억원	620억원	450억원
주요과업	분석단계	설계·개발단계/ 1차 개통('21.9.)	개발·시험단계/ 2차 개통('22.9.), 3·4차 개통(미완료)

자료: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각의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었고, 지난 2021년 9월 복지로(대국민 포털 사이트) 개통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4차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1차 개통 이후 2차('22.9.)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개통하였으나 개통 이후 발생한 전산 오류가 지속되어, 당초 2022년 10월 및 2022년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3차·4차 개통이 지연되었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계획 및 실제 개통일>

구분	개통 기능	실제 개통일
1차 개통 (2021. 9.)	복지로, 복지멤버십	2021.9
2차 개통 (2022. 9.)	행복이음(전체), 희망이음(기관행정지원, 시군구 보고 등)	2022.9
3차 개통 (2022. 10.)	희망이음(사례관리,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전체)	-
4차 개통 (2022. 11.)	통합통계정보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LG CNS 컨소시엄 측은 3차 및 4차 개통을 완료하지 않고 수익성을 사유로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23년 12월 조달청은 전체 사업계약(1～3차연도) 중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2차·3차 연도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라 선금등의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고, 조달청은 사업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조치를 하였음. 사업자는 이에 대해 조달청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이며, 보건복지부는 계약 해지에 따른 예산 재확보, 잔여 과업 추진 계획 구체화 후 시스템 구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로 차세대 시스템 잔여과업은 전자바우처 및 사회서비스 분야 개별시스템 통합 등 3차 개통, 통합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4차 개통이 해당됨.

<차세대 시스템 잔여과업 개요>

□ **차세대 시스템 잔여과업**

○ **(3차 개통)** 전자바우처 및 사회서비스 분야 개별시스템(12종)을 통합

< 통합 대상 시스템 목록 >

분야	시스템명	운영기관
공통(1)	전자바우처 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4)	국가아동학대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센터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
노인(3)	노인학대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맞춤돌봄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돌봄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3)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 정보시스템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국민연금공단
정신(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활(1)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4차 개통)** 통합 통계정보시스템(EDW)* 구축

* (Enterprise DataWarehouse) 사회보장·사회서비스 등 각 시스템의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자료 : 보건복지부

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및 계약 해지 이후 조속한 개통을 위한 노력 필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및 미개통 시스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반복적인 시스템 오류로 각종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규모 사업 수행 지연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규모 불용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음.

□ 우선, 시스템 자체의 피해와 관련하여, 2022년 2차 시스템 개통이 이루어진 9월에는 시스템 기능오류 등으로 8월 대비 시스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월 평균 1일 사용자 문의 접수 현황>

(단위: 건)

개통 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80	430	406	401	363	365	379	404
개통 후	22.9	22.11	23.1	23.3	23.5	23.7	23.8	23.9
	5,145	2,174	1,479	962	595	537	475	444

자료 : 보건복지부

□ 다음으로,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 사업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경우, 예산 현액 193억 1,000만원 중 93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고,

4억 9,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실집행률은 48.7%에 불과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유지관리 선행사업 종료 예정일 지연 등으로 92억 6,5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 사용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연도	구분	금액
2020	이월	145억 5,300만원
2021	이월	176억 5,600만원
2022	불용 (’21회계연도 이월 예산 재이월 불가로 불용)	93억 1,800만원
	이월	14억 8,800만원
2023	이월	11억 9,900만원
	불용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45])	92억 6,500만원

□ 이와 같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으로 복지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규모 예산의 이월·불용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한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구축 사업 지연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 및 결산 예비심사마다 관련 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되고 사업 관리가 미비한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3.8.22.)에서는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전체회의(2023.8.25.)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책임소

45) 사회보장정보원 운영(2640-305) 사업 중 유지관리 사업으로, 계약목적물 미인수로 인해 보조사업자(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수행하는 후행사업(유지관리 사업)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 계약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이 발생함.

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 요구 유형을 징계로 한정할 경우 후속 조치 이행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46]에 따라 '시정'으로 변경하기로 함.[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관련 지적 내역>

연도	구분	내용
2021	국정감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
	2020 회계연도 결산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의 지연 방지 필요 (검토보고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의 개통을 2021년 9월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마련을 그 이전에 완료하여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48]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용역이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일정이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일정 준수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심사보고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준수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2022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를 조속히 시정할 것 ○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등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시설용 희망이음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지시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희망이음시스템의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것 ○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희망이음시스템 장애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할 것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통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여 10월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할 것 ○ 아이돌봄서비스, 대입 특별전형 서류발급 문제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각종 급여 및 수당별 미지급, 오지급이 발생하고 있어 현황 파악 필요하며, 미해결 건에 대해 대략적인 급여 지급시기 안내할 것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시험운영시 미처리율, 결함률이 높은데, 시스템 결함을 알면서도 지체상금 발생을 이유로 개통을 강행한 것 아닌지 의문이며, 관련 개통 연기에 대한 검토 회의내용을 제출할 것 ○ 컨소시엄에 포함된 중소기업이 기존 보수업무 업체라는 이유로 평가과정에서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 ○ 일정 지연, 손해 발생 등에 대해서 컨소시엄이 책임지고 배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 ○ 컨소시엄의 부실 하도급 또는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및 수

46) 제409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8.25.)
47)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의안번호 21122386)

		급자와 하도급수급업체 간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담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기능 조정을 재고할 것 ○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처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문제를 개선할 것 ○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할 것 ○ 희망이음 시스템 관련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민감시설이 많은데도 지속적인 업무 공유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것
	2021 회계연도 결산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의 지연 방지 필요(검토보고서)** 2021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인프라 구축, 법령 개정 추진 및 복지멤버십 및 복지포털 '복지로'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집행 중인 운영인프라 구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일정은 2022년에도 변경되는 등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발 완료를 위해 과제별 추진 일정 준수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	국정감사 (초안)	**<보건복지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한 급여 미지급 등 현장의 피해사례 파악 및 관련 보상 방안 마련할 것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약 관련 조달청에 계약 해지 요청한 시기 질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한 사업단과의 신속한 계약 해지 절차 마련할 것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취약계층 급여 지급 지연 등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 차세대 시스템 계약종료 후 진행 상황 및 3·4차 개통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마련 및 예산 반영할 것 ○ 차세대 오픈 과정에 문제 있었던 사업자의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 해명 및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3·4차 개통 지연에 따라 초래된 문제 지적 및 2단계 이내의 하청 방식과 적정한 수가 책정이 필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히 관리할 것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초래된 국민 피해 예방 및 일선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신속한 3·4차 개통 및 손해배상책임 등 대책 마련할 것 ○ 1,270억원 국책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사업단(LG CNS)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책임 인식할 것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규명 및 해결 방안 마련할 것 ○ 사업단과의 계약 해지시, 시스템 유지 관리 인력 확보 필요 및 시스템 오류 대응 인력 확보할 것 ○ 당초 17개 사회보장분야 시스템 통합·운영 계획 불구 3개 시스템만 통합된 상황에 대하여 시스템 재구축 진행 미흡 문제 개선할 것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시 PMO(프로젝트 관리 조직) 필요에도 불구 별도 관리조직이 없어 대처가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 지적 및 PMO 포함 방안 논의할 것
	2022 회계연도 결산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 관련 조치 필요(심사보고서, 시정)**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남은 과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심사보고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와의 일정 지연, 법적 분쟁 소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남은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것

□ 그러나 2023년 12월 중 완료 예정이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24년 7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책임 소재를 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약 해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등의 후속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미개통된 시스템의 조속한 개통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관련 후속 조치 등 남은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4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말 개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4. 연금정책관

가.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기초연금지급 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8조 5,742억원으로, 이 중 18조 2,41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3,306억원은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8,580,089	1,138	2,481 △9,841	18,574,227	18,241,902	1,740	330,58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2008-206)	38,214	-	-	38,214	38,214	-	-
사회보장협정사업 (2008-302)	29	-	-	29	29	-	-
국민연금 재정계산 (2008-306)	90	447	-	537	535	-	2
공적연금연계제도 운영(2009-300)	60	-	-	60	60	-	-
기초연금지급 (2131-300)	18,530,432	-	△9,786	18,520,646	18,190,029	35	330,582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76	-	8 △3	81	80	-	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162	3	95 △52	208	208	-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501	688	2,738	3,927	2,222	1,705	-
국민연금기금 전출 (국민연금공단관리 운영비)(8420-841)	10,000	-	-	10,000	10,000	-	-
국민연금기금 전출 (출산크레딧급여) (8420-842)	525	-	-	525	525	-	-

2) 기금 수입 결산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등 총 17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153조 5,270억원이고, 수납액은 190조 6,385억원임.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의 수납액이 계획액에 비하여 크게 초과달성된 것은 채권·주식·대체투자에서 직접 실현된 이익으로서 '이자 및 재산수입'이 약 5조원 초과 수납되었고, 투자 이익 실현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매각대'가 약 29조원 초과 수납된 것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계획액(A)	수납액(B)
계	153,527,010	190,638,590
□ 자체수입	81,255,566	88,306,640
○ 사회보장기여금	56,543,899	58,369,781
- 고용주부담금	24,786,231	25,749,949
- 피고용자분담금	31,757,668	32,619,832
○ 이자 및 재산수입	24,617,952	29,844,213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83	178

구 분	2023년	
	계획액(A)	수납액(B)
- 기타민간이자수입	2,719	5,153
- 기타재산이자수입	24,615,050	29,838,882
○ 잡수입	46,594	49,588
- 기타잡수입	9,165	8,431
- 기타영업외잡수입	37,429	41,157
○ 융자원금회수	47,121	43,058
-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260	243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861	42,815
□ 정부내부수입	**10,525**	**10,525**
○ 전입금	10,525	10,525
- 일반회계전입금	10,525	10,525
□ 여유자금회수	**72,260,919**	**102,321,425**
○ 유가증권매각대	58,248,891	87,845,073
- 지방채매각대	1,030,952	1,194,619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0,293,666	62,093,023
- 국채매각대	16,554,273	24,341,265
- 공채매각대	370,000	216,166
○ 정부예금회수	14,012,028	14,476,352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61,578	2,271,88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950,000	12,203,833
- 기타민간예치금회수	450	639

□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수익, 연금보험료 수입,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지급과 관련된 제비용 집행분을 제외한 자금은 적립하고 있음.

□ 2023년 기금운용수익은 약 126조원, 기금운용수익률은 13.59%로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참고로 기금운용수익금은 평가이익(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을 종

합하여 산출되므로 위의 표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 >과 값의 차이가 발생함.

□ 2023년 기금 적립금 증가분은 145조원*이며 이에 따라 총 적립금은 2023년말 기준 1,035조 8천억원임.

* 기금운용수익금과 연금보험료(위 표의 사회보장기여금에 해당),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합한 수입에서 노령연금 지급 등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3) 기금 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등 총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153조 5,270억원, 계획현액은 153조 5,448억원이고, 기금운용수익 상승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부문 초과지출(유가증권 등 자산 매매 증가를 의미함)에 따라 지출액은 계획현액을 초과하는 190조 6,386억원이며, 79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700억 6,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기금(A+B)	153,527,010	153,527,010	153,544,775	190,638,590	7,953	70,060
총지출(A)	37,122,577	39,988,959	40,006,724	39,928,712	7,953	70,060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930	930	967	797	37	133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421,783	431,984	431,984	419,981	-	12,003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04,636	104,636	104,783	101,051	51	3,682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25,167	25,167	25,167	22,779	-	2,388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6,464	6,464	7,811	6,597	467	747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24,952	25,900	25,900	25,655	-	245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 (7431-456)	200	200	200	45	45	109
기금운용직 단기숙소 지원 (7431-457)	815	815	815	815	-	-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7432-431)	1,221	1,221	1,221	1,220	-	1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56,174	56,174	72,408	64,238	7,286	885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750	1,650	1,650	1,604	7	39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7432-441)	35,500	34,734	34,734	32,813	-	1,921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2,224	2,931	2,931	2,677	60	194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39,319	39,088	39,088	37,970	-	1,118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	731	709	709	633	-	76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7432-449)	1,227	1,227	1,227	1,101	-	126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	17,968	17,251	17,251	17,108	-	143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	6,688	6,688	6,688	6,120	-	568
복지타운 운영사업비 (7433-424)	8,485	8,666	8,666	8,666	-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7433-425)	44,727	44,727	44,727	44,727	-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7478-601)	91,888	91,888	91,888	91,888	-	-
국민연금급여지급 (7631-401)	36,228,728	39,085,909	39,085,909	39,040,227	-	45,682
여유자금운용(B)	**116,405,433**	**113,538,051**	**113,538,051**	**150,709,878**	**-**	**-**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9720-972)	2,062,028	1,020,813	1,020,813	2,801,394	-	-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9720-974)	20,103,203	18,277,036	18,277,036	24,547,112	-	-
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9720-976)	35,620,202	35,620,202	35,620,202	71,904,047	-	-
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9720-977)	34,460,000	34,460,000	34,460,000	27,455,091	-	-
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9720-978)	24,160,000	24,160,000	24,160,000	24,002,234	-	-

4)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내에서 총 △59억 1,400만원의 이용이 있었음.

아동수당 예산 부족분 및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등으로 기초연금지급에서 △86억 5,200만원을 이용 감액하였고,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은 기초연금지급으로부터의 이용을 포함하여 총 27억 3,800만원을 이용 증액하였음.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용 사유
계	△5,914	
<일반회계>	2,738 △8,652	
기초연금지급 (2131-300)	△8,652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및 행정비용 부족분 등(△15백만원) ○ 차등보조율 지자체간 아동수 변동, 해외출생아 등 수급자 규모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 부족분(△8,637백만원)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2,738	○ 메이슨 추가업무 발생 따른 정부대리로펌과의 계약변경 등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및 행정비용 부족분 등('23.3월) 등(15백만원) ○ 엘리엇 후속조치 대응 법률자문비용 및 메이슨 추가업무 발생 따른 정부대리로펌과의 계약 변경('23.12월) 등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및 행정비용 부족분 등(2,723백만원)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에서는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11억 1,500만원) 등을 전용감액하였음.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사유
계	-	
<일반회계>	2 △1137	
기초연금지급 (2131-300)	2 △1137	○ 노인의 날 기념, 100세 어르신 증정 장수지팡이 지급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20백만원) ○ 23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1,115백만원) ○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증가 등 여비 부족분 자체전용

5)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주요 차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에서 엘리엇 및 메이슨의 중재 절차 및 후속조치 지속 등에 따라 정부 대리로펌 자문료로 등 17억 5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에서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의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72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사유
계	9,693	
<일반회계>	1,740	
기초연금지급 (2131-300)	35	○ 홍보 계약 연장('23.6～'24.2)에 따른 잔금 이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1,705	○ 엘리엇 및 메이슨의 중재 절차 및 후속조치 지속 등에 따라 정부대리로펌 자문료, 중재판정부 행정비용 등 일부 이월
<국민연금기금>	7,953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37	○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과업을 수행, 잔액 37백만원 이월 * 국민연금기금 외부회계감사 용역('23.11～'24.6.)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51	○ 2023회계연도 공단 결산지원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대금 51백만원 이월 * '23회계연도 공단 결산 용역('23.12. ～ '24.12)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467	○ 인재개발원 설계용역 일시정지(실시설계 적정성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로 인하여 건축 인허가 및 설계기간이 순연됨에 따라 연내 지출불가한 집행잔액 267백만원 ○ 홍성사옥 및 어린이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완료('24년 완료 예정) 후 잔금 등 집행을 위해 200백만원 이월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 (7431-456)	45	○ 연구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잔금 이월 * 계약기간 '23.9 ~ '24.2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7,286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예산 이월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5,144백만원),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2,142백만원)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7	○ 공·사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이벤트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연도내 지출불가하여 일반용역비 7백만원 이월 * 계약기간 '23.12 ~ '24.1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60	○ 해외 공무원연금의 공시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일반연구비 총 20백만원 이월 * 계약기간 '23.11.～'24.3. ○ 「미래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일반연구비 40백만원 이월 * 계약기간 '23.11.～'24.4.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주요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자체 집행소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급여 예산 3,305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고,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사업에서 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 B등급 판정에 따른 성과급 잔액 및 정현원차로 인한 급여잔액 120억 300만원,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 편성 대비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차이에 의한 456억 8,200만원 불용 등 총 4,006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400,645	
<일반회계>	330,585	
국민연금 재정계산 (2008-306)	2	○ 집행잔액
기초연금지급 (2131-300)	330,582	○ 지자체 집행소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급여 예산 불용 처리(330,582백만원)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 집행잔액
<국민연금기금>	70,060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133	○ 기본경비 및 연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133백만원)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12,003	○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산운용성과급 집행잔액 (2,210백만원) * (편성) A등급 → (집행) B등급 ○ 정현원차 급여잔액 (9,793백만원)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3,682	○ 정현원차 및 성과급 집행잔액,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정 지연 및 청년인턴 중도퇴사자 발생과 그로인한 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차보상금 미소진 등 불용(1,777백만원) ○ 공무직 정현원차에 따른 사회보험료·퇴직급여 충당금 집행잔액, 청년인턴 중도퇴사자 발생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정 지연 등으로 불용(463백만원) ○ 해외운용사 등 전략적 제휴연수 인원 감소, 수급자모임 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수행기관 감소와 출장수요 감소 및 기금관련 국제컨퍼런스 참석 축소 등 불용(117백만원)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2,388	○ 모바일 전자문서 및 회선사업자 재선정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1,066백만원) ○ 기금 계량분석시스템 과금정책 변경 등 임차료 집행잔액(425백만원)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를 타사업 예산 추진으로 관리용역비 집행잔액(454백만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747	○ 인재개발원 성토 미완료에 따른 '22년 건설보상비 이월분 불용 (430백만원) ○ 홍성사옥 및 어린이집 관급자재 및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불용(45백만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245	○ 사옥유지 관련 소모품 구매 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불용(22백만원) ○ 공공요금 동결, 난방비 감소 및 공단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191백만원) ○ 기타 경비 등 불용(32백만원)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 (7431-456)	109	○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집행잔액 불용(109백만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7432-431)	1	○ 연말 사업마무리 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불용(1백만원)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885	○ 정보화사업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61백만원 보안인프라 보강 및 기능개선 355백만원 등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39	○ 우편 대량발송에 따른 감액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불용 (15백만원) ○ 출장수요 증가에 따른 추계대비 실수요 차이 발생으로 국내여비 불용 (21백만원)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7432-441)	1,921	○ 실직자 수 감소로 기타보전금 불용(1,848백만원) * (지원인원 '22년 584천명 → '23년 563천명) ○ 신청 안내문 모바일 발송확대로 제작 비용 절감(73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194	○ 제5차 재정계산 집중에 따른 정규과제 축소 및 회의·행사 축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낙찰차액 불용(194백만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1,118	○ 해외사무소 현지인력 채용 지연 등 인건비 불용(553백만원) ○ 투자검토 지연, 연내 자문 미완결 등 자문료 불용(247백만원)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	76	○ 해외수급자 연락처 확보 등 절차개선으로 집행잔액(61백만원) ○ 베트남 협정이 '24.1월 발효됨에 따라 리플릿 제작 연기 등 집행잔액(11백만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7432-449)	126	○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126백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	143	○ 모바일 안내문 확대에 따른 115백만원 불용 등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	568	○ 안내문·통지서 모바일 발송 확대 등으로 371백만원 불용 등
국민연금 급여지급 (7631-401)	45,682	○ 편성 대비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차이**에 의한 불용 * (예상) 82천명 → (실제) 76천명 ** (예상) 211천명 → (실제) 193천명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704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및 메이슨캐피탈이 신청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따른 정부대리를 위한 국내·외 법무법인 선임 및 중재 대응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5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8,800만원 및 이용 27억 3,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9억 2,700만원 중 22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국제투자분쟁절차(ISDS)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엘리엇·메이슨 사건 국제투자분쟁절차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근거하여 진행 중임.[49)]

---

4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 청구의 중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2023회계연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01	501	688	2,738	3,927	2,222	1,705	-

나)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경과 및 대응 연혁

□ **엘리엇·메이슨 사건**은 2015년 9월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8년 7월(최소 7억7천만 USD 손해 발생 주장),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2018년 9월(최소 2억 USD 손해 발생 주장) 각각 중재를 제기하여 시작되었음.

- **엘리엇 사건**은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고, 서면 제출과 중재 본안심리를 거쳐,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한 일부 인용[50] 판정을 선고하였고,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결정이 선고되었음.

- **메이슨 사건**은 2018년 12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고, 10차례의 서면 제출이 2021년 8월까지 이루어지다가 2022년 3월 뉴욕에서 중재 본안심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4월 메이슨 측 주장에 대한 일부 인용[51] 판정이 선고되었으며, 7월 11일 정부는 이에 불

5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인 53,586,931달러(약 690억원)의 배상액 및 지연이자 지급(5% 연복리)을 명령하였음.

5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의 청구금액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인 32,030,876달러(약 438억원)의 배상액 및 지연이자 지급(5% 연복리)을 명령하였음.

복하여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엘리엇·메이슨 사건 국제투자분쟁절차 연혁 >

< 엘리엇 >	내용
중재판정부 구성	• 엘리엇이 지명한 Oscar M. Garibaldi, 대한민국이 지명한 J. Christopher Thomas QC 및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VeijoHeiskanen(의장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18. 11월)
서면 제출	• 엘리엇 제1차 준비서면 제출 ('18. 7월) • 대한민국 제1차 준비서면제출 ('19. 9월) • 엘리엇 제2차 준비서면 제출 ('20. 7월) • 대한민국 제2차 준비서면 제출 ('20. 11월) • 엘리엇 제3차 준비서면(선결적 항변에 관한 재반박) 제출 ('20. 12월)
중재본안심리 및 심리 후 서면 제출 등	• 21.11.15.~26, 제네바(참석 : 법무부, 복지부, 정부대리로펌, 증인 등) * '21. 2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 • 1차 심리 후 서면 제출('22.4월) • 2차 심리 후 서면 제출('22.5월) • 대한민국·엘리엇 각 비용청구 서면 제출 ('22. 6월)
중재판정 및 후속조치	• 판정 선고('23.6월) • 정부의 판정 취소소송 제기('23.7월) •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23.10월) ※ 취소소송 진행 중
< 메이슨 >	**내용**
중재판정부 구성	• 메이슨이 지명한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대한민국이 지명한 Pierre Mayer 및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Klaus Sachs(의장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18.12월)
서면 제출	• 메이슨 제1차 준비서면 제출 ('18. 6월) • 대한민국 선결적 항변에 관한 주장서면 제출 ('19. 1월) * 중재판정부가 메이슨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음을 주장 • 메이슨 선결적 항변에 관한 반박서면 제출 ('19. 4월) • 메이슨 수정 제1차 준비서면 제출 ('20. 6월) • 대한민국 반박 제1차 준비서면 제출 ('20. 10월) • 메이슨 제2차 준비서면 제출 ('21. 4월) • 대한민국 제2차 준비서면 제출 ('21. 8월)
중재본안심리 및 심리 후 서면 제출 등	• '22.3.19. ~ 3.26, 뉴욕 심리기일(참석 : 법무부, 복지부, 정부대리로펌, 증인 등) * '21.10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 • 심리 후 추가 서면 제출('22.4월) • 최종 구두 변론(화상, '22.5월) • 비용 서면 제출('22.8월) • 중재판정부 의견요청 회신('23.11월)
중재판정선고, 후속조치	• 판정부, 중재절차 종료 선언('24.2.20.) • 판정 선고('24.4.11.) • 정부의 판정 취소소송 제기('24.7월) ※ 취소소송 진행 중

□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서면 제출 및 심리 과정에서 국내외 법무법인에 중재 대리 자문·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중재판정부 운영비용에 대한 대한민국 분담분이 발생하며, 심리가 열리는 경우 그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출장비용이 소요됨.

- 중재판정부 운영비용은 중재인 보수 및 지원인력보수 등이며, 중재 관련 행정비용은 증인·전문가 보수, 심리기일 등 참석 여비, 통역, 속기사 및 번역 등 비용을 말함.

□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말까지 5년간 누적 234억 8,200만원이 국내·외 법무법인 자문·행정비용으로 소요(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전까지: 광장 및 Freshfields,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이후: 피터앤김 및 Anold&Porter, 메이슨 사건: 광장 및 White & Case)되었고, 중재판정부 운영비용 및 국외출장비를 합하면 5년간 총 265억 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 엘리엇·메이슨 사건 대응 소요 예산(2019～2023년말까지) >

(단위: 백만원)

구분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	합계
중재판정까지	국내 법무법인	3,326	2,374	5,700
	해외 법무법인	10,853	5,508	16,361
중재판정이후	국내 법무법인	486	-	486
	해외 법무법인	935	-	935
법무법인 소계		15,600	7,882	23,482
중재판정부 운영비용		1,427	1,601	3,028
국외출장비용		22	67	89
총 합계		17,049	9,550	26,599

주: 법무법인별로 지급된 자문료 및 행정비용을 합한 결과임

□ 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소송 총괄은 법무부가 하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법인들은 중재 사전협의부터 정부 대리, 자료 수집, 쟁점 검토, 중재 대응 및 판정문 분석 등 분쟁 대응의 자문·행정을 담당하고,

법무법인 자문료는 변호사별 시간당 요율에 실제 업무시간을 곱하여 보수를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적정성 검토 후 지급하고 있음.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부처별 역할 및 비용청구 방법 >

법무부 (소송 총괄)	◀ ①자문료 및 행정비용 청구 ▶ ②청구 적정성 검토(법무부, 복지부) 후 지급	(1) 엘리엇 사건 자문료 및 행정비용 (국내로펌 및 국외로펌)
복지부 (예산 총괄)	◀ ①자문료 및 행정비용 청구 ▶ ②청구 적정성 검토(법무부, 복지부) 후 지급	(2) 메이슨캐피탈 사건 자문료 및 행정비용 (국내로펌 및 국외로펌)

□ 엘리엇 사건 및 메이슨 사건은 2024년 7월 현재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연금기금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게 될 예정임.

다)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집행의 법무부 일원화 필요

엘리엇·메이슨 사건 대응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른 국제투자분쟁절차 대응(법무부 예산)과 구별되는 것으로, 관련 직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집행·관리상 비효율이 우려되고, 중재판정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손해배상·구상권 행사 등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무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건의 주무부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음.

- 론스타 사건(진행 중)은 법무부, 하노칼 사건(종료-취하)은 국세청, 다야니 사건(종료-패소)은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된 엘리엇·메이슨 사건(진행 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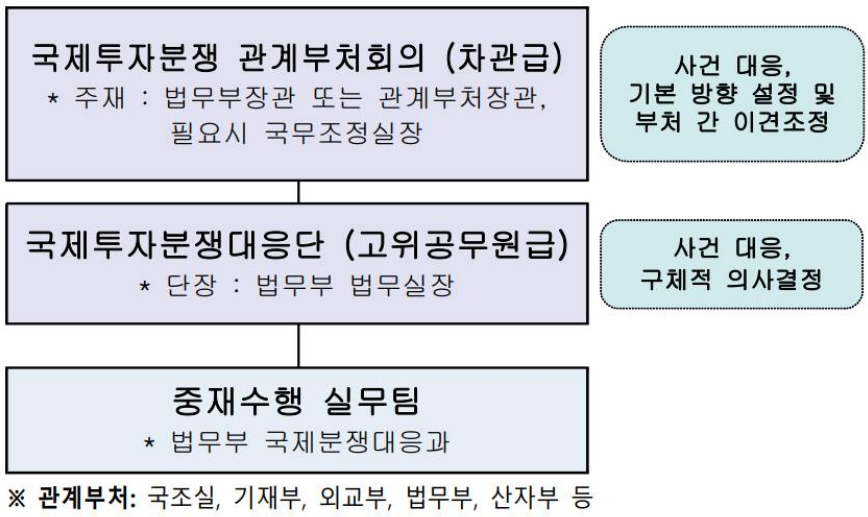
□ 그러나 개별 사건마다 별도의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임시 대응체계로는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52],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했으며,

2020년 8월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여 제9조(법무실)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장 중 제9호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국제투자분쟁을 법무부에서 직접 대응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음.

52)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 2020.8.20.

□ 또한 2023년 8월에는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다시 한 번 개정하여 국제법무업무 전담조직인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음.

< 국제투자분쟁절차 분쟁대응체계도 >



자료: 법무부 브리핑(2021)

□ 현재 국제투자분쟁절차 분쟁대응체계는,

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②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법무부 소속 국제투자분쟁대응단,

③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됨.

-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는 ISDS 사건에 관한 기본 대응 방향 결정 및 부처간이견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함.

□ **현재 엘리엇·메이슨 사건 대응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ISDS 사건(법무부 예산)과 다르고, 관련 직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집행·관리상 비효율이 우려되고, 중재판정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손해배상·구상권 행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무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53]은 국제투자분쟁 “대응”이 법무부 국제법무국의 업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소송 수행 실무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부터 관리, 편성 및 국회 예·결산 심사까지 법무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5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국제법무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가) 개요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사업은 「국민연금법」 제87조[54]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0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매년 10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되었음.

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확대 검토 필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 OECD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의 급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지출하는 경상적 관리 비용을 의미하며,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공단관리운영 정보화 운영비(7378-614)를 합산하여 산출됨.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5,438억 1,100만원이고, 2024회계연도 계획액은 2023회계연도 결산 대비 4.3% 증가한 5,669억 8,200만원임.

54)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2023년 결산 및 2024년 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 계획액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정규직) 인건비]	419,981	437,771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본부·지사(112개)에서 사용하는 기본경비]	101,051	104,098
공단관리운영 정보화 운영비(7378-614) [총 36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유지관리비 등]	22,779	25,113
합 계	**543,811**	**566,982**

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국고 지원으로 편성되었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38~66.7% 수준을 국고지원하다가, 2008·2009년에는 5%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국고지원액이 고정된 반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운영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2013년 3%에서 2023년 1.8%로 낮아졌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 연혁 >

(단위: 백만원)

연도	관리운영비[1] (A+B)	기금부담액[2] (A)	국고부담액 (B)	(B/A+B) %
1988	21,610	-	21,610	100%
1989	18,444	-	18,444	100%
1990	20,050	-	20,050	100%
1991	21,473	-	21,473	100%
1992	25,589	13,070	12,519	48.9%
1993	28,140	14,499	13,641	48.5%
1994	31,733	15,887	15,846	49.9%

연도	관리운영비[1] (A+B)	기금부담액[2] (A)	국고부담액 (B)	(B/A+B) %
1995	64,644	21,525	43,119	66.7%
1996	75,964	25,361	50,603	66.6%
1997	85,375	27,806	57,569	67.4%
1998	153,551	63,292	90,259	58.8%
1999	192,478	83,136	109,342	56.8%
2000	204,171	87,652	116,519	57.1%
2001	226,208	96,899	129,309	57.2%
2002	235,937	100,429	135,508	57.4%
2003	269,622	125,602	144,020	53.4%
2004	297,368	178,173	119,195	40.1%
2005	331,436	203,960	127,476	38.5%
2006	349,965	216,809	133,156	38.0%
2007	360,455	223,482	136,973	38.0%
2008	377,279	358,415	18,864	5.0%
2009	383,871	364,677	19,194	5.0%
2010	385,445	375,445	10,000	2.6%
2011	366,997	356,997	10,000	2.7%
2012	342,177	332,177	10,000	2.9%
2013	336,761	326,761	10,000	3.0%
2014	343,425	333,425	10,000	2.9%
2015	355,830	345,830	10,000	2.8%
2016	430,953	420,953	10,000	2.3%
2017	449,295	439,295	10,000	2.2%
2018	477,648	467,648	10,000	2.1%
2019	489,198	479,198	10,000	2.0%
2020	529,145	519,145	10,000	1.9%
2021	530,336	520,336	10,000	1.9%
2022	545,089	535,089	10,000	1.8%
2023	561,787	551,787	10,000	1.8%

1) 1988~2019 :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및 기타경비 합산금액(예산편성 기준)
2020 ~ :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기타경비,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합산금액
2) 기금부담액 '92~'03년도는 자체수입포함 금액임

□ 현재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연금이 수행하는 공적 역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55] 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기본적 경상비용인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자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고령화로 수지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국고 지원을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56]

55)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에 달하는 국고 지원 및 6%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법률에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법률 제6619호, 2002. 1. 19.>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56)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2022년 9월 발표) 97쪽.
3.6.6. 소득재분배적 급여 부분에 대한 조세 재원 분담 증대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의 낮은 보험료 수준과 고령화로 추정되는 수지불균형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일반 국고의 비중이 산식 내에서 커질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연금 시스템의 소득재분배적 급여 부분(A값)은 보험료와 일반조세 중 어떤 것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다른 장치보다도 특히 산식의 A값(재분배 급여 부분)에 따른 매우 재분배적 산식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재원부담은 전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보험료 외의 수입을 국민연금 수입에 투입시킬 상당한 여유가 있다.
3.6.6. Expanding tax resources to finance pension redistributive components
By contrast to many OECD countries, revenues from the state budget play a very limited role as a source of NPS financing in Korea. As additional revenues will be required given their current low levels and the size of projected imbalances driven by ageing, financing from the state budget is likely to be part of the equation. In particular, as discussed above, redistributive components of pension systems can be financed by either contributions or taxes. NPS benefits are based on a very redistributive pension formula through the role played by the A value on top of other redistribution mechanisms, but they are almost entirely financed by current contributions and past contributions that have fuelled the NPF. There is ample room to raise non-contributory revenues should policy makers decide so.

<국민연금기금>

3)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투자자산 운용 및 책임투자·위험관리(정보이용료, 운용경비 및 자문료 등)를 하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회계연도 수정계획액은 390억 8,800만원이고, 379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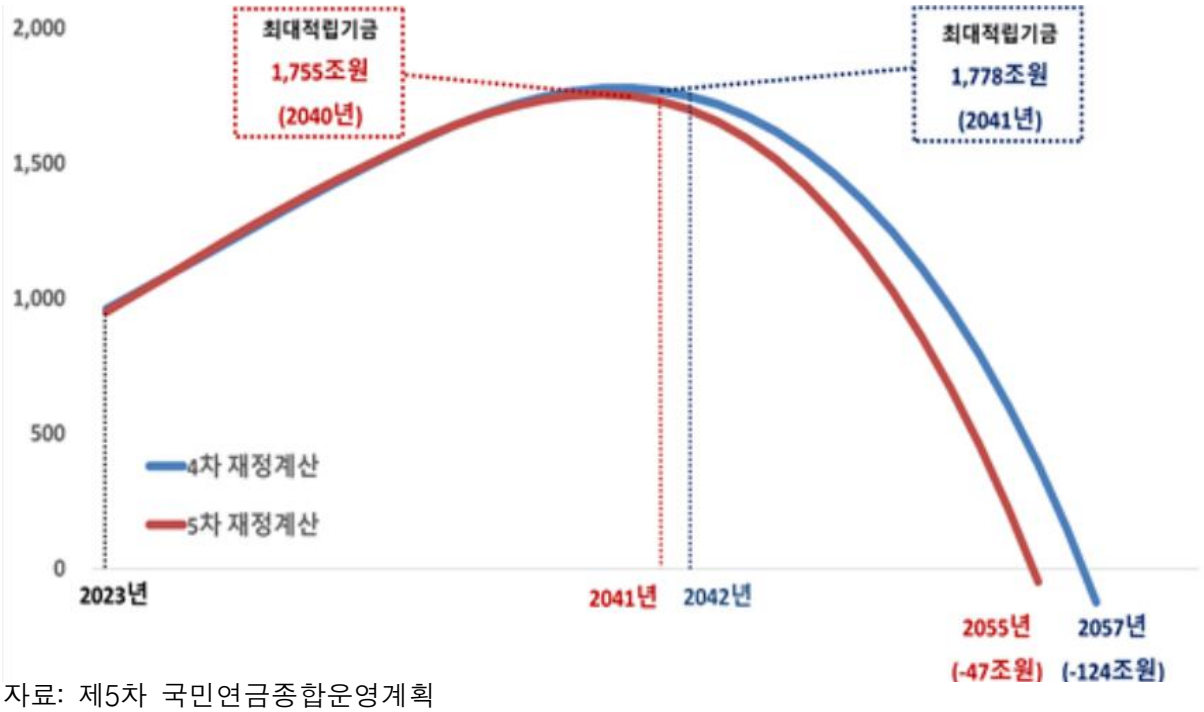
구 분	2023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39,319	39,088	-	-	39,088	37,970	-	1,118

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해외사무소 정원 미달 시정 및 현지 우수인력 채용 여건 마련 필요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해외투자 역량 강화 방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에 현지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례적인 해외사무소 인력의 정원 미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투자 증대의 필요성: 적립금 추계)**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연금개혁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증가하고,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14년만인 2055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전망 >



자료: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 이에 2041년부터 14년만에 약 1,755조원(연평균 125조원)의 적립금이 감소하는 시기에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임.

□ **(해외대체투자의 필요성: 높은 위탁 수수료)** 또한 해외투자 중 해외대체투자의 외부 위탁수수료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3% 수준으로 같은 기간 다른 자산군의 위탁수수료율(국내주식 0.2%, 국내채권 0.1%, 국내대체 0.9%, 해외주식 0.3%, 해외채권 0.2%, 전체평균 0.5%)에 비해 높고, 해외대체투자 위탁운용에 대한 연간 수수료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조 3,573억원과 1조 8,137억원을 지출하였는바,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현지 운용인력 및 조직을 기금운용본부 자체 역량으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외부위탁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상황임.

□ **(문제점)** 그런데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의 기초 인프라인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산상 집행 부진이 나타났음.

첫째, 최근 6년간 해외사무소 현원이 정원보다 20% 이상 부족하고,

둘째, 런던사무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고, 2023년에 현지인력 정원을 0명으로 조정했으며, 싱가포르 사무소는 2022·2023년 2년간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2020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2020-2024)」[57]에 따른 해외사무소 인력 확대계획

57) 기금운용위원회가 2020년 7월에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2020-2024)」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기금 성장기'에 투자자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비중을 2024년까지 50% 내외로 확대하면서,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운용 전략을 다변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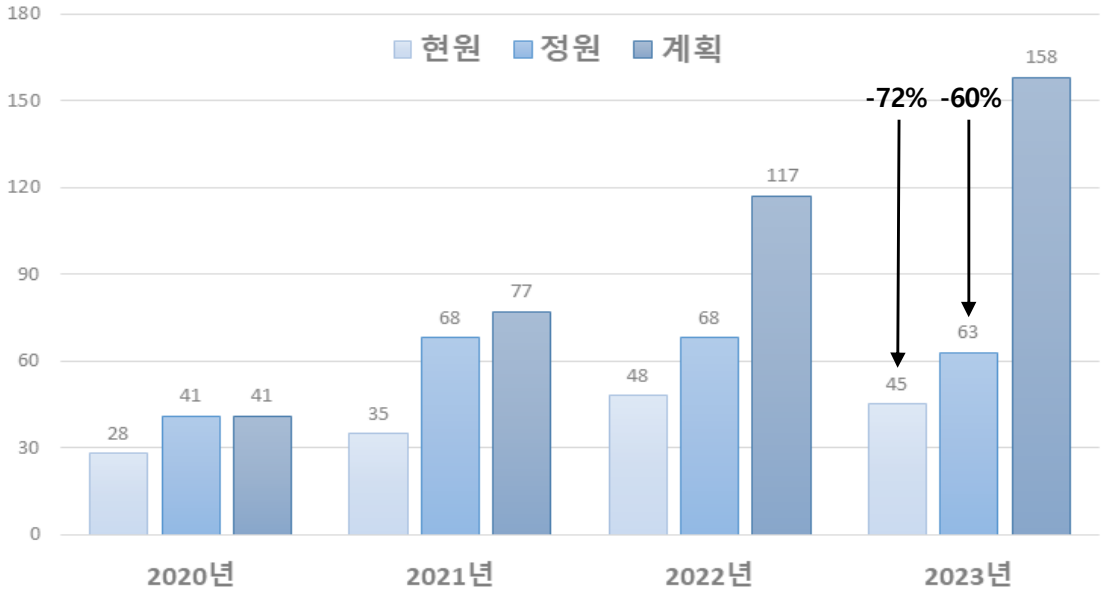
(2023년 158명)에 비해 2023년 해외사무소 정원(63명)은 40% 수준이고, 정원 대비 현원(45명)이 70% 수준에 불과하여 동 종합계획의 시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사무소의 정원·현원 추이(파견직원·현지인력 구분, 2018-2023년) >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파견직원	뉴욕	13	9	13	12	13	11	26	11	25	17	25	17
	런던	10	9	9	8	9	6	19	10	19	15	19	15
	싱가포르	4	4	5	5	6	6	13	8	14	13	14	10
현지인력	뉴욕	4	3	4	3	4	3	4	4	4	3	3	3
	런던	5	2	5	1	5	0	2	0	2	0	0	0
	싱가포르	4	3	4	3	4	2	4	2	4	0	2	0
인력합계	뉴욕	17	12	17	15	17	14	30	15	29	20	28	20
	런던	15	11	14	9	14	6	21	10	21	15	19	15
	싱가포르	8	7	9	8	10	8	17	10	18	13	16	10
	합계	40	30	40	32	41	28	68	35	68	48	63	45

< 해외사무소 현원·정원과 인력확대계획('20년 수립)*간 격차 확대 추세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0년 7월 의결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른 해외사무소 인력 계획

□ 이에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2020-2024)」 및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58]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지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연례적인 해외사무소 인력의 정원 미달 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58) 기금운용위원회가 2023년 6월에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에는 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성 높은 자산운용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4) 복지타운운영사업비 (7433-42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타운, 청풍리조트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84억 8,500만원, 수정계획액은 86억 6,600만원이고,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복지타운운영사업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타운운영사업비	8,485	8,666	-	-	8,666	8,666	-	-

□ 청풍리조트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잡수입' 목으로 수납되는데, 2023년 수입계획액 91억 6,500만원 중 84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및 생활치료센터 활용 등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7%와 55.8%로 저조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81.2%, 2023년에는 92.0%로 높아지는 추세임.

< 기타잡수익 최근 5년간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수납액(B)	수납률(B/A)
	당초	수정(A)		
'19년	8,900	8,900	7,308	82.1
'20년	10,514	10,514	4,937	47.0
'21년	8,801	8,801	4,908	55.8
'22년	9,047	9,047	7,344	81.2
'23년	9,165	9,165	8,431	92.0

나) 청풍리조트 자산효율화 노력 필요

청풍리조트의 원활한 자산효율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운영 효율화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풍리조트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46조[59]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60]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국민연금 복지시설임.

-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여가·휴양·복

59)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6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29일에 개장하였으며, 충북 제천시 청풍호변의 7만 8천평 부지(258,702m2)에 위치한 대규모 위락시설로, 호텔(2개동 230실) 및 부대시설(기숙사, 다목적 운동장, 미니골프장 등)로 이루어져 있음.

< 청풍리조트 시설현황 >

구 분	대지면적(㎡)	객실수	건물규모 및 용도
계	258,702	230	
레이크 호텔	23,007	180	▪ (규모) 지상 8층, 연면적 21.197㎡ ▪ (용도) 객실, 대·중·소연회장, 한·양식당, 수영장, 편의점 등
힐 하우스	12,741	50	▪ (규모) 지상 7층 지하 3층, 연면적 14.235㎡ ▪ (용도) 객실, 한식당, 연회장, 사우나, 편의점
부대시설	3,009	-	▪ (용도) 기숙사, 정·배수장, 산책로, 오수정화조,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미니골프장, 야외 데크 업장
조경공간 등	138,223	-	
미개발지	81,722	-	▪ (용도) 33,000㎡(1만평) 홉재배 및 꽃정원 활용, 기타부지 48,722㎡는 미개발지로 관리 중

자료: 국민연금공단

□ 그런데 최근 5년간 청풍리조트의 객실가동률은 50~60%대에 그치고 있고, 2019년의 700만원 흑자를 제외하면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청풍리조트 운영 실적 >

(단위: 백만 원, %, 명)

구분	매출액[A]	비용[B]	운영손익[A-B]	객실가동률	전체이용자수
2019년	6,733	6,726	7	55.6	107,870
2020년	3,847	6,077	△2,230	52.3	85,246
2021년	3,971	6,152	△2,181	62.4	82,057
2022년	6,835	7,810	△975	66.9	123,673
2023년	8,038	8,132	△94	67.2	121,251

자료: 국민연금공단

□ 청풍리조트 운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매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2009년 국정감사부터 시작하여 계속 있었고, 2012년의 전문기관 컨설팅 및 201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산 가치 제고 후 매각을 재검토하자고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자산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청풍리조트가 자산효율화(비핵심부동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음.

□ 청풍리조트의 최초 부지 매매계약에 청풍리조트 전체 부지(현재 유휴지가 있음: 14필지 81,722㎡)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제천시의 승인 없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제천시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2024년 5월에는 청풍리조트 유휴지에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제천시, 충청북도의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규제과학센터 건설 방안, 유휴지의 기관간 분할 매입(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제천시) 및 청풍리조트 매각제약조건 해소 등의 매각을 위한 실무 추진 방안을 관계 기관 간 계속 논의 중에 있음.

□ 청풍리조트가 개장하였던 2000년과 지금은 연금 가입자·수급자의 규모 등 제반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청풍리조트의 자산효율화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청풍리조트를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위한 전제로서 유휴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바,

청풍리조트의 원활한 자산효율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운영 효율화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사회서비스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3,122억 1,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122억 6,600만원이며, 이 중 2,98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6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12,211	312,211	312,266	298,560	52	13,654
일반회계	76,344	76,344	76,399	74,748	52	1,59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5,867	235,867	235,867	223,812	-	12,055

2)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본예산은 763억 4,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763억 9,900만원이며, 이 중 747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 9,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6,344**	**76,344**	**76,399**	**74,748 (72,114)**	**52**	**1,599**
의사상자지원	2,534	2,534	2,534	2,155 (2,155)	-	379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51	51	51	51 (51)	-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9,723	9,723	9,723	9,723 (9,713)	-	-
나눔문화확산	938	938	938	917 (914)	-	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6,535	6,535	6,535	6,514 (5,988)	-	2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32	32	32	31 (31)	-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운영	3,127	3,127	3,161	3,068 (2,966)	51	42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300	300	300	270 (270)	-	30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2,190	12,190	12,190	12,190 (11,559)	-	-
사회복무제도지원	556	556	556	423 (423)	-	13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30,219	30,219	30,189	29,218 (27,856)	-	971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61	61	63	63 (63)	-	-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8	78	127	125 (125)	1	1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역지원계정, 지역자율계정 2개의 세부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본예산은 2,358억 6,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없이 예산현액도 2,358억 6,700만원이며, 2,23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실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5,867	235,867	235,867	223,812 (203,847)	-	12,05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875	26,875	26,875	14,820 (7,510)	-	12,05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208,992	208,992	208,992	208,992 (196,337)	-	-

3)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 선진지 공무 국외출장 예산 재원 마련, 통합돌봄추진단 팀신설에 따른 재원 마련 등 1억 2,800만원을 증액 전용하였고, 8,700만원을 감액 전용 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사유
계	128 △87	
<일반회계>	128 △8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30 △10	20대 주요 국정과제(사회서비스 고도화)추진을 위한 국외 선진지 공무 국외출장 예산 재원 마련(30백만원) 및 통합돌봄추진단 팀신설에 따른 재원 마련(△10백만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30	사회서비스 정책 선진사례 현장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30백만원)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 9	부내 기관운영 등을 위한 예산 부족분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3 82	부내 기관운영 등을 위한 예산 부족분
나눔문화확산	△7 7	국내·외 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1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차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51	
일반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51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에서는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원 미설치로 인한 운영비 9억 7,100만원 등 15억 9,9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신규 보조사업 수행지역 선정 등으로 인한 120억 5,500만원이 불용되어, 총 136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13,654	
<일반회계>	1,599	
의사상자 지원	379	의사상자 인정 신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의사자·의상자 신청 및 인정 건수 등에 대한 예측 불가
나눔문화 확산	21	홍보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21	연구용역 낙찰차액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30	연구용역 낙찰 차액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1	집행잔액
사회복무제도지원	133	병무청 배정계획 인원과 실배치 인원 차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운영	42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971	경북 사회서비스원 미설치로 인한 운영비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5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055	신규 보조사업 도입 시, 현장 의견수렴 진행 및 공모 절차 등으로 수행지역 선정이 지연, 지자체 단위에서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 대비 국비 교부 차질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2635-31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은 정부자금(모태펀드[61] 출자) 및 민간자금 활용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00억원이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전액 출자되었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	10,000	-	-	-	10,000	10,000	-	-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은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62] 개발 기업, 사회서비스 관련 디지털 기술(IOT·로봇·통신 등) 기반 기업[63] 등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혁신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임.

61)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함.
62) 심리검사 및 치유 프로그램, 요양센터 솔루션 등
63) 간병 로봇, 재활 운동 디바이스, 돌봄(노인·아동)·간병·병원동행 등 서비스 제공 등

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개요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복지기술 기업 등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자금으로 조성하는 펀드로,

2023회계연도에는 정부 출자금 100억원과 민간 출자금 45억원을 합친 145억원의 규모로 결성되었음.

- 결성된 펀드는 4년간 투자가 이루어지며, 결성으로부터 8년간의 회수 기간을 거쳐 회수된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임.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 따르면 펀드 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음.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투자 대상(2023년)>

(투자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조건을충족하는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이하 같음)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분야(예시) >
① 새로운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②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컨텐츠 제공
③ 통합(융합)서비스 제공
④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장비개발
⑤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컨설팅·정보제공
①~⑤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8일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공고 계획을 발표하여 6월 14일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선정하였음.

- 참고로, 선정 절차는 1차 정량평가로써 서류 심사 및 운용사 인터뷰와 2차 정성평가로써 PT 및 출자심의회 의결로 이루어졌음.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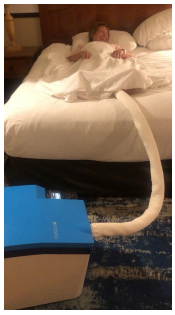
□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9월 26일 145억원 규모로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을 출범하였고, 12월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인 ㈜큐라코에 1호 투자를 실시하였음.

<(주)큐라코 기업 개요>

○ 기업 연혁
- (주) 큐라코 법인 설립('07년) 및 배설케어로봇 개발('17년)
- 미국 식약처 및 일본 정부 판매처 등록('18년)
- 각 부처 선정 유망·선도기업*('18년~)
  * 산업융합선도기업('18, 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18,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1000+]('23, 중기부)
- 재가환자 및 요양기관 배설케어로봇 보급·실증(산업부, '19~'21년)
- 서울시립요양원 배설케어로봇 보급·실증(서울시, '23년)

○ 주요 사업 내용 : 다양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노인·환자용 배설케어로봇 생산·판매

64) * (절차) (1차) 서류(정량)+운용사 인터뷰 → (2차) PT(정성)+출자심의회** 의결
** 출자심의위원회 7인(한국벤처투자 2, 복지부 지명 1, 외부위원 4 선정)

노인·환자용 배설케어로봇	일본 및 미국 배설케어로봇 사용 사례
	 

다) 투자 기준 준수 및 중복투자 방지 등 철저한 펀드 관리 필요

투자 기준을 준수하여 펀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가 있음.

□ 2023년 1호 사회서비스투자펀드는 보건복지부 100억원, 민간투자액 45억원으로 총 145억이 결성되었고, 결성액 대비 투자 실적은 42억원(투자비율 28.9%)이며, 투자 기업수는 총 7개 기업으로, 주목적(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에 투자한 기업 수는 4개 기업임.

- 세부적인 투자현황 정보(투자기업명, 투자금액, 사업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65]에 따라 원칙상 비공개정보이고, 제1호 투자 정보는 펀드 운용사 및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정보가 공개됨.

< 2023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사업 투자실적 >

구분	기업명	투자 집행일자 (월)	투자금액	사업내용	주목적 투자 여부
1	큐라코	'23.12.	10억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제조·판매	○
2	○○○	'23.12.	-	-	×
3	○○○	'23.12.	-	-	×
4	○○○	'23.12.	-	-	×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구분	기업명	투자 집행일자 (월)	투자금액	사업내용	주목적 투자 여부
5	○○○	'24.3.	-	-	○
6	○○○	'24.3.	-	-	○
7	○○○	'24.3.	-	-	○
계	총 7개 기업	-	총 42억원	-	총 4개 기업

주: (주목적 투자비율) 펀드운용사는 투자가능기간(4년) 내 주목적 투자대상(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에 전체 펀드금액(145억원)의 60% 이상을 투자해야함
자료 : 보건복지부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투자 개시가 이루어진 기간은 실질적으로 6개월에 불과하여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향후 사업 관리 측면에서 주목적인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60%) 및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 투자(20%)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기준인 60% 투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펀드 투자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0월까지 145억원 중 87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2024년 6월 기준 투자된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이 주목적 투자 대상이고, 투자 금액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시장이 접근하기 어려우나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혁신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의 사후적 관리 관점에서 펀드 결성 후 투자 집행 상황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금이 피투자기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정량적 분석 등 사업의 사후적 관리를 수행하여 벤처기업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개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외부 공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데이터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투자 전반적인 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 펀드 운용사와 함께 투자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하여 펀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남은 3개년 동안 투자 기준을 준수하여 펀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65억 3,500만원이고, 그 중 6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6,535	-	-	-	6,535	6,514	-	21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66]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의 경우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은 1회에 연속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6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사유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
지원기간	1회 연속 7일이내, 지역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지침으로 최대 60일 이내 연속지원 가능
지원단가	돌봄직: 월 259만원, 조리직: 월 243만원 ※ 5일이내 단기직 시급 돌봄직 10,600원, 조리직 9,900원(교통비 1일 5,000원, 주휴수당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6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센터는 중앙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와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로 구분되어 있음.

- 중앙센터는 관리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시·도 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시·도 센터는 대체인력의 모집과 채용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현재 전국에 237명의 인력이 중앙 및 시·도 센터에 채용되어 대체인력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주요 업무 >

중앙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 관리자 교육 · 사업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대체인력 서비스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 실적관리, 사업비 등 정산보고 등	· 대체인력 모집 및 채용 · 대체인력 지원 및 관리 · 대체인력 복무 관리 · 대체인력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관련업무 · 대체인력 근무자의 교육관리 · 대체인력 근무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실적관리, 사업비 등 정산보고

자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지침

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 해소 및 실제 지원 실적 제고 필요

대체인력의 처우 개선 및 가용 인력 확대를 통한 대체인력 지원 충족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① 예산 집행 측면에서 지속적인 집행률 부진 ②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신청 대비 지원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 수행체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실제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데,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약 60억원 대비 5억원~10억원 사이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실집행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9	4,999	4,590 (91.8%)	409
2020	5,573	4,882 (87.6%)	691
2021	5,623	4,820 (85.7%)	803
2022	5,914	5,021 (84.9%)	893
2023	6,198	5,674 (91.5%)	524

자료: 보건복지부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대체인력 인건비와 대체인력 운영지원비로 구성되는데, 지속적인 집행률 부진 사유는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충분한 대체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예산 편성 대비 실집행 내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 편성 근거</th><th>집행 내역</th></tr>
<tr><td rowspan="3">대체인력 인건비</td><td>돌봄직</td><td>○ 인건비: 233명, 4,902백만원
* 2,590천원×233명×12개월×50~70%</td><td rowspan="3"><u>6,035백만원</u></td><td rowspan="3"><u>5,511백만원</u></td></tr>
<tr><td>조리직</td><td>○ 인건비: 35명, 690백만원
* 2,428천원×35명×12개월×50~70%</td></tr>
<tr><td>명절휴가비</td><td>○ 명절휴가비: 268명, 443백만원
* (돌봄) 1,228천원×233명×2회×50~70%
* (조리) 1,166천원×35명×2회×50~70%</td></tr>
<tr><td rowspan="3">대체인력
운영지원비</td><td>관리자 인건비</td><td colspan="2">○ 시·도 관리자 : 5명, 101백만원
* 2,400천원×5명×12개월×70%</td><td>101백만원</td></tr>
<tr><td>관리자
명절휴가비</td><td colspan="2">○ 시·도 관리자 : 5명, 9백만원
* 1,228천원×5명×2회×70%</td><td>9백만원</td></tr>
<tr><td>일반운영비</td><td colspan="2">○ 시·도 센터 : 5개소, 53백만원
* 15백만원×5개소×70%</td><td>53백만원</td></tr>
</table>

주: 집행내역의 경우 중도 퇴사 등 12개월 업무 유지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총액으로 결산
자료 : 보건복지부

□ 실제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대체인력 정원(274명) 대비 13.5%인 37명이 결원 상태인데,

이러한 채용 어려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 기간제 근로계약 및 원거리 출·퇴근 등 열악한 처우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물론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이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임금 현실화, 고용 안정성 확보, 대체인력의 소속감 고취 및 역량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대체인력 지원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실적을 보면 50~70%대에 머무르고 있고, 2023년 실적은 전년도(56.9%)에 비해 더 낮아진(53.4%)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체인력 지원 신청 대비 실제 지원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신청	실적	신청	실적	신청	실적
총계	65,984	45,685 (69.2%)	81,916	46,656 (56.9%)	95,821	51,214 (53.4%)
서울	7,288	5,745	8,286	6,609	7,547	5,368
부산	4,026	3,351	4,920	3,353	4,932	3,221
대구	3,242	2,400	4,806	2,904	4,346	2,925
인천	3,705	1,646	4,473	2,168	4,938	2,188
광주	3,780	1,610	4,835	2,164	5,206	2,568
대전	2,212	1,684	3,935	2,499	5,859	3,340
울산	1,374	1,299	2,537	1,325	3,261	1,456
세종	777	439	992	601	1,140	653
경기	10,654	6,504	13,376	6,355	15,791	7,998
강원	1,994	1,372	3,671	1,836	3,982	2,261
충북	4,989	3,704	6,223	2,672	5,861	2,941
충남	3,149	2,920	3,516	2,882	5,954	3,053
전북	4,217	2,994	4,092	2,717	5,374	2,757
전남	2,090	955	5,020	1,624	7,516	2,278
경북	6,536	4,632	7,509	4,863	8,698	4,922
경남	4,186	3,568	1,959	1,190	3,025	2,214
제주	1,765	862	1,766	894	2,391	1,071

주1: 각 연도별 파견 신청 및 파견 실적은 '24.5.20. 시스템 조회 기준
주2: 연도말 이후 누락분 수기 입력 및 오류, 중복 건 삭제 등으로 인해 조회 시점마다 신청 및 실적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대체인력의 부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하여 채용이 용이하지 않고, 채용 이후에도 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앞서 지적한 낮은 처우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목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인력의 처우 개선 및 가용 인력 확대를 통한 지원 충족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촉진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2639-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302억 1,900만원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한 3,0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301억 8,900만원이고, 이 중 29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30,219**	**30,219**	**-**	**△30**	**-**	**30,189**	**29,218 (27,856)**	**-**	**971**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5,056	15,056	-	-	-	15,056	15,056 (14,509)	- (452)	- (94)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4,834	14,834	-	-	-	14,834	13,866 (13,056)	-	968 (1,778)
·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139	139	-	-	-	139	139 (134)	-	- (5)
· 부처운영비	190	190	-	△30	-	160	157	-	3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사업비를 보조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150억 5,600만원), ②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사업비를 보조하는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148억 3,400

만원), ③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는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1억 3,900만원), ④ 부처 운영비(1억 5,700만원)으로 구분됨.

나) 사회서비스원 개요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의 네 곳에서 최초 설립된 후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67] 중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설치되었음.

<사회서비스원 개요>

성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
주요 사업내용	①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자에게 긴급돌봄 제공 ②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③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④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관련 국비 예산	(설립) 5억원 (인건비) 20명에 대한 인건비의 50% 지원(약 4억원) (운영비) 설립 후 3년까지는 10억 8,000만원 중 50% 지원, 이후 30% 지원
설치 현황 ('24.6. 기준)	단독 기관 (11) :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제주

67)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전북,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제주

*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에 설치		
	타 기관과 통합 (4)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미설치 (1)	경북
	설치 후 폐지(1)	서울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비용 5억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교부하고, 20명에 대한 인건비의 50%(약 4억원)를 지원하며,

설립 이후 3년차까지는 운영비 10억 8,000만원 중 50%를, 3년 이후에는 30%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편성·집행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집행액)	4,960 (4,960)	10,634 (10,158)	13,436 (12,485)	15,959 (14,098)	14,834 (13,866)

주: 집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교부된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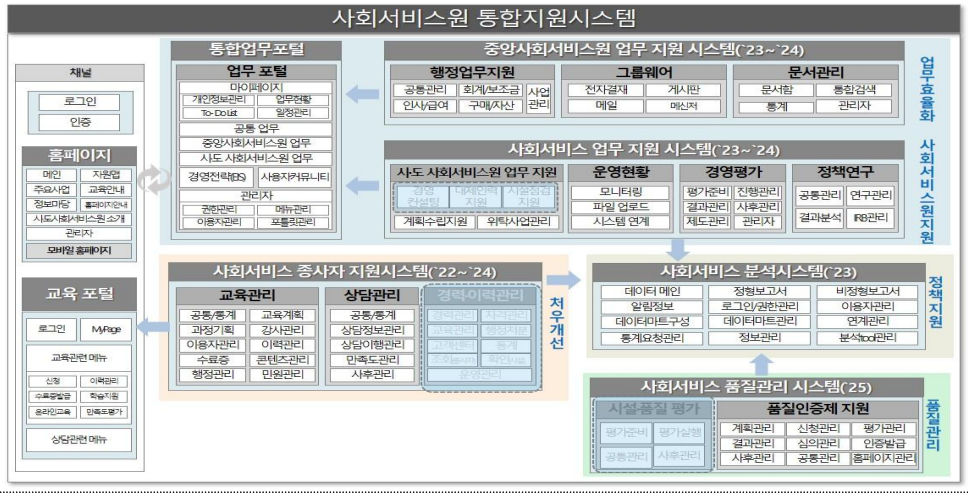
다)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ISP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ISP 수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68]에 따라 2022년 5월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

□ ISP의 목적은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지원, 품질 관리, 처우 개선, 교육 관리, 클라우드 및 운영관리 분야 주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 목표시스템 구성도 >



자료: 보건복지부

6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기록·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ISP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88억 2,000만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행되며,

① 중앙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② 사회서비스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③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지원시스템 구축, ④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⑤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지원 시스템 구축, ⑥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⑦ 정보화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총 7가지 이행과제가 있음.

- 이 중, 이행과제 6. 및 이행과제 7.은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축, 인력과 같은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시스템 구축 대상은 이행과제 1. ~ 5.에 한정됨.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연도별 구축 계획>

(단위: 백만원, 부가세포함)

이행과제	연도별 구축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행과제 1. 중앙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포함	1,226	1,017			2,243
이행과제 2. 사회서비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458	1,215			1,673
이행과제 3.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지원시스템 구축			339		339
이행과제 4.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190	396	586
이행과제 5.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지원 시스템 구축		963	250		1,213
이행과제 6.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349	889	482		1,720

이행과제	연도별 구축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행과제 7. 정보화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346	241	459		1,046
총합계	**2,379**	**4,325**	**1,720**	**396**	**8,820**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2024년 6월 기준 ISP 예산 대비 집행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ISP 예산 대비 집행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포함)

이행과제	구분	연도별 구축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행과제 1. 중앙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포함	ISP	-	1,226	1,017	-	-	2,243
	집행예산		1,304[1)]	770[2)]	-	-	2,074
이행과제 2. 사회서비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ISP	-	458	1,215	-	-	1,673
	집행예산		380[1)]	1,131[2)]	-	-	1,511
이행과제 3.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지원시스템 구축	ISP	-	-	-	339		339
	집행예산		-	-	-	-	-
이행과제 4.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ISP	-	-	-	190	396	586
	집행예산	277	-	-	-	-	277
이행과제 5.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지원 시스템 구축	ISP	-	-	963	250	-	1,213
	집행예산	253	-	1,083	-	-	1,336

이행과제	구분	연도별 구축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행과제 6.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ISP	-	349	889	482	-	1,720
	집행예산	-	314	900	-	-	1,214
이행과제 7. 정보화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ISP	-	346	241	459	-	1,046
	집행예산	-	381	441[3)]	-	-	822
총합계	**ISP**	**-**	**2,379**	**4,325**	**1,720**	**396**	**8,820**
	집행예산	**530**	**2,379**	**4,325**	**-**	**-**	**7,234**

1) 이행과제 1,2번은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환경구축(클라우드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행과제 1,2번 ISP 예산 및 실금액 동일)
2) 실제 세부 기능들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ISP 대비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함에 따라 사업예산 일부 조정
3) 신규 정보화 사업 기획·관리, 기구축 정보시스템 운영(민원대응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에 따라 예산 조정

자료 : 보건복지부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ISP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연도별 사업액과 실제 예산 편성액이 달라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예컨대, 사회서비스원은 당초 ISP 계획에 따르면 2025년 구축 예정이었던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을 2022년 예산(연구개발비)을 이월하여 2023년 3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최초 입찰 공고 자체가 2022년 12월 23일에 행하여져서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보임.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조기 구축 현황>

구분	당초(ISP) 계획일	실제 집행일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관리시스템	2024년 구축	2022년 구축 (계약기간: '22.10.13.~'23.2.10.)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2025년 구축	2023년 구축 (계약기간: '23.3.13.~'23.9.6.)

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관리시스템)** 당초(ISP) 계획은 '24년 구축이었으나, 「사회서비스원법」 제32조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을 위해 '22년 구축으로 변경
- (재원) 2022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연구개발비
※ 용역 개요 : (계약기간) '22.10.13.~'23.2.10.('22.12월말 조기 개통), (계약금액) 금 253,469천원

②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 당초(ISP) 계획은 '25년 구축이었으나, 「사회서비스원법」 제3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업무지원을 위해 '23년 구축으로 변경
- (재원) 2022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연구개발비
※ 용역 개요 : (계약기간) '23.3.13.~'23.9.6., (계약금액) 금 277,000천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에 시행되고, ISP 수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종사자 교육업무 이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2022년 12월에 업무 이관) 등으로 기존 ISP 계획을 변경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 ISP는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시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이고,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69] 에 따르면 ISP의 형식적 수립에 따른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사업 부실화 등 정보화사업에서

6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 기획재정부(2023)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향후 ISP 계획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의 필요가 있음.

□ 둘째, 동 사업은 2022년 조기 구축에 따라 ISP에 수립된 예산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번 사태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상황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출한 후 그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이번 사업의 경우 비록 긴급히 계획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집행에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ISP 수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돌봄·재활·상담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68억 7,500만원이고, 이 중 148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26,875	26,875	-	-	-	26,875	14,820	-	12,055
· 청년마음건강지원	5,670	5,670	-	-	-	6,799	6,799 (5,768)	-	- (1,031)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205	21,205	-	-	-	20,076	8,021 (1,742)	-	12,055 (18,334)

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동 사업의 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4개의 세부계정으로 구성됨.[70]

① 지역자율계정은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등 낙후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의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처럼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또한,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큰 범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예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됨.

② 지역지원계정은 지역특화산업·광역협력권 사업·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정한 후 예산을 편성해 배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서 해당 사업에 활용함.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각각 제주도와 세종시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두 계정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70) 이하 출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35호, 2023.9.13.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고, 일부는 중앙의 사업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3년 가사·간병 방문사업(’0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06.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7.7) 등 각각 운영되던 사업들을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음.

이후 2015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을 통해 포괄보조 방식을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고,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하였음.

이후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방이양하였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분리하였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경과>

연도	내용
2013	가사·간병 방문사업(’0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06.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7.7)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괄보조 방식 전환
2015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을 통해 포괄보조(Block Grant)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
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방이양,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규 추진

<table>
<tr><th>연도</th><th>내용</th></tr>
<tr><td rowspan="2">2023</td><td>‘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분리</td></tr>
<tr><td>
<table>
<tr><th>세부사업명</th><th>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th><th>지역지원계정
(부처 직접편성사업)</th></tr>
<tr><td rowspan="2">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td><td>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td><td>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td></tr>
<tr><td>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td><td>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td></tr>
</table>
</td></tr>
</table>

□ 지역지원계정인 동 사업은 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② 2023년도 신규사업인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취약지 지원사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개발·보급 및 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급기관을 육성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화됨.

다)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사업 수요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시 대상자 설정을 현실화하여 실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본예산 기준 212억 500만원이었으나, 조정 후 예산현액은 200억 7,600만원으로, 이 중 80억 2,100만원을 집행(교부)하여 국비 불용액은 120억 5,500만원(집행률 40%)이나,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기준 교부받은 80억 2,100만원 중 실집행은 17억 4,200만원으로, 6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까지 고려한 전체 실집행률은 8.7%에 불과함.

<2023회계연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076	20,076	8,021	8,021	-	8,021	1,742	8,021	1,742	-	6,279	8.7

□ 생활사회서비스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①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예산 195억 8,500만원 대비 실집행 77억 9,300만원으로 39.7%의 집행률을 보이고,

② 취약지 지원사업은 예산 16억 2,000만원 대비 실집행 2억 2,800만원으로 14.0%의 집행률을 보임.

<생활사회서비스사업 세부사업 결산 내역>

	편성	집행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32,160명(지원 대상자의 약 1.3%) × 145천원(단가) × 6개월 × 70%(보조율)	2,807건 × 평균 660천원 × 6개월 × 70%
	195억 8,500만원	67억 9,900 (39.7%)
취약지 지원사업	45개 기관 × 12,000천원 × 6개월 × 50%(보조율)	13개 기관 × 평균 7,015천원 × 5개월 × 50%
	16억 2,000만원	2억 2,800만원 (14.0%)

자료 :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160%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참고1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함.[71]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356만 6,000원이고 4인 가구 916만 8,000원임.

□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인 돌봄가족과 동거하는 청년(41.5만명), 한부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모 가구(36.9만명), 중장년 1인가구 (175만명)을 합한 253.4만명을 모수로 하여,[72] 그 중 1.3%인 32,16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1인당 지원단가를 63만원으로 하여 7,4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으나, 실집행 내역을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는 1,309명이고 서비스 유형으로 보면 1,602건으로, 계획한 지원 대상자 대비 17.6%만이 사업을 이용하였음

□ 동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의 실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해보면, 우선 사업 수행 전 사업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함에도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대상자에 대한 모수를 설정한 후, 모수에 대하여 임의적인 수치인 1.3%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은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인 것으로 보임.

특히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특화서비스 중 심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타 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중복 이용 가능자 수를 배제하고 정확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상자 수를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시·도별 사업 수행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체

72) - (돌봄필요 가족과 동거하는 청년) 약 41.5만(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 기반 추계, 청(소)년 인구의 약 4%)
-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36.9만(2021 인구총조사, 통계청)
- (중장년 1인 가구) 175만(2021 인구총조사, 통계청)

25개 시·군·구 중 단 1개의 구만 참여했고,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는 전체 5개 시·군·구 전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도 사업 수행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임.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시·도	참여 시·군·구		이용자	제공기관	지원대상
	수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12	4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128	9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대구	2	서구, 달서구	27	7	
인천	2	연수구, 부평구	38	4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 지역)	62	15	
대전	1	동구	85	3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 지역)	136	9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62	9	
강원	1	동해시	15	2	
충북	1	청주시	45	4	
충남	7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88	13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170	17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69	6	
경북	7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울진군	269	33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31	6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73	2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계			1,309	143	

* 음영 지역은 2차 공모 선정지역
** 총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51개 시·군·구에서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군·구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용자 역시 12명에 불과하여 전체 시·도에서 최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비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269명으로, 약 22배의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 홍

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 지자체의 참여 저조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저조할 경우 그 사실의 공표 등 국민적 관심 고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취약지 지원사업은 섬이나 농어촌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지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참고2 : 취약지 지원사업 개요】)

- 2023회계연도 사업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 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수행지역		제공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사업 계획
시도	시군구			
경북	울진군	청년마음 건강지원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내용)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 3개월간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울진군 소재 제공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충남	부여군	정신건강 토탈케어	- (대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증상 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을 월 4회 제공	논산시 소재 제공기관에서 출장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 (대상) 만 18세 이하 주의력결핍 등 아동·청소년 - (내용) 언어, 놀이 심리 프로그램 등 월 4회 제공	취약지역 내 제공기관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비스 활성화
	공주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천군			
전남	고흥군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판소리 및 민요 교육, 월 8회 제공	여수시 소재 제공기관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통합형(재활, 인지기능, 웃음 코칭) 프로그램, 주 1회 제공	신안군 소재 제공기관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재활 프로그램 등 제공
	진도군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신안군			

자료 :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45개 기관에 6개월동안 1,200만원의 예산 중 50%의 보조율을 설정하여 6개월동안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집행 내역을 보면 실제 사업 수행 기관은 13개소로, 평균 7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50%를 5개월동안 지원하였음.

□ 사업의 실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해보면, 우선 사업 수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 의지가 적었다는 점이 지적됨.

1차 공고('23.5.16.)에 따라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고흥군 등 3개 시·도, 7개 시·군·구, 18개 기관에서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후 신청률 부진에 따라 2차 공고('23.7.14.)가 진행되어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한 지역이 없었음.

또한 18개 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계획했음에도 사업 이해도 저조 등 사유로 실제 수행은 13개 기관에서만 진행하였음.

<취약지지원사업 공고 시기 및 참여 지역>

시기	시·도	시·군·구	기관 수
1차공고 ('23.5.16.)	경상북도	울진군	1
	충청남도	부여군	8
		공주시	
		서천군	
	전라남도	고흥군	4
		진도군	
		신안군	
2차공고 ('23.7.14.)	신청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 다음으로, 동 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타 사업으로 수행 중인 지역 사회서비스를 취약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장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부차적인 예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 사회서비스의 실집행률 또는 사업 이용률에 영향을 받게 됨.

- 충남 서천군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140만원 중 약 1,090만원(50.9%)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실집행률 부진 사유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약지 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임.

<수행 시·군·구별 예산 집행 현황>

수행 시·군·구		사업 내용	총 사업비(원) (실집행)
전라남도	전남 사회서비스 지원단	- 공급취약지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 공급 취약지 지원사업 관리·운영 - 사업홍보비 인쇄물 제작·배포	24,000,000 (24,000,000)
	고흥군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100,000,000 (67,283,000)
	진도군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44,000,000 (44,000,000)
	신안군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82,000,000 (82,000,000)
경상북도	울진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50,000,000 (42,080,400)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급취약지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10,000,000 (10,000,000)
	공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37,000,000 (29,530,000)
	부여군	정신 토탈케어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87,600,000 (26,906,800)
	서천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1,400,000 (10,959,340)

□ <u>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사업 수요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상자를 적절히 설정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u>

【참고1】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개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❶중장년(질병, 고립 등), ❷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23년 규모) 공모를 통해 정한 16개 시·도(51개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차년도 단계적 확대

□ (추진 일정) 사업 제공기반 마련 및 시행('23.8~9월 중, 지자체별로 다름)

【참고2】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개요

□ (목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내용)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을 선정,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출장비, 운영비 등을 거점제공기관에 지원

○ 거점제공기관은 등록된 기관 소재지 시·군·구 범위를 벗어나 취약지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역 선정기준) ❶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제공기관이 없고, 현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

❷ 사회보장특별구역(8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구)등 복지기반이 취약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 등

□ (방식) 전국 공모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

< 취약지 지원사업의 전후 비교 >

현 재(As-is)	앞으로는(To-be)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에 사는 청년 A군은 이용이 어려웠음	▪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A군이 사는 지역에 제공기관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평소에 느낀 우울, 불안으로부터 해소
▪ 도서 지역에 사는 B 어르신은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도서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제공기관도 부재해 이용이 불가능	▪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B 어르신이 사는 섬 지역에도 제공기관이 월 4회 방문해 마을회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6. 인구아동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조 1,69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및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3조 1,783억 4,200만원이며, 이 중 3조 1,59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5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169,339	3,169,339	3,178,342	3,159,236	531	18,574
일반회계	2,862,865	2,862,865	2,871,868	2,854,980	504	16,3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6,568	286,568	286,568	286,257	0	311
국민건강증진기금	19,906	19,906	19,906	17,999	27	1,880

2)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등 총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2조 8,62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및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현액 2조 8,718억 6,800만원 중 2조 8,549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3억 8,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계)	2,862,865	2,862,865	2,871,868	2,854,980	504	16,38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276	1,276	1,276	1,276	0	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43,745	43,745	43,745	39,765	0	3,98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4,706	14,706	14,706	13,307	10	1,389
가정위탁 지원·운영	7,874	7,874	7,874	7,657	163	53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715	1,715	1,715	1,695	18	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7,131	47,131	47,131	42,458	0	4,673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49,900	49,900	49,900	47,600	0	2,300
아동안전 전문교육	651	651	651	651	0	0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3,166	3,166	3,166	2,833	0	333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5,739	25,739	25,739	25,739	0	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1,305	41,305	41,305	38,304	0	3,001
인구교육추진지원	1,245	1,245	1,245	1,212	0	33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370	370	370	370	0	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8,228	38,228	38,228	38,228	0	0
첫만남 이용권 지원	319,371	319,371	319,371	319,371	0	0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1,215	1,215	1,288	1,180	73	35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2,962	2,962	2,962	2,914	0	4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5,512	5,512	5,757	4,985	239	534
아동수당 지급	2,256,398	2,256,398	2,265,035	2,265,035	0	0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18	118	134	132	1	0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39	239	270	268	0	2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2,86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및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현액 2,865억 6,800만원 중 2,862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1,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계)	286,568	286,568	286,568	286,257	0	31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185,580	185,580	185,580	185,580	0	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54,570	54,570	54,570	54,570	0	0
지역아동센터 지원	39,721	39,721	39,721	39,665	0	56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2,276	2,276	2,276	2,021	0	255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	2,993	2,993	2,993	2,993	0	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428	428	428	428	0	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	625	625	625	625	0	0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375	375	375	375	0	0

4)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계획액은 199억 600만원이고, 계획현액 199억 600만원 중 179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음. 자체계획 변경은 없었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건강증진기금(계)	19,906	19,906	19,906	17,999	27	1,880
모자보건사업	13,396	13,396	13,396	11,489	27	1,88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510	6,510	6,510	6,510	0	0

5) 이·전용 현황

가) 이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급여 부족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에서 총 86억 3,700만원을 이용(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이용 사유
계		8,637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8,637	○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 급여 예산 부족으로 기초연금 지급에서 8,637백만원 이용

나) 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의 홍보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전용으로 4,200만원을 전용(감)하고, 4,200만원을 전용(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12 △104	
일반회계(계)		89 △81	
일반회계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32 △32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업무 수행에 따른 법령, 매뉴얼, 지침 제작 관련 일반수용비와 회의실 임차료 부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42 △4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사업(아이행복 캠페인 확산 및 유튜브 활성화 등)의 정상적 추진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	○ 기관 운영비 부족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5	○ 기관 운영비 부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계)		23 △2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아동센터 지원	23 △23	○ 지침 책자 제작 등 소요 증가

6)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차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 계약기간 미도래 등을 이유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등에서 총 5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금액	이월 사유
계		531	
일반회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0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가정위탁 지원·운영	163	○ 가정위탁아동 후견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기간 미도래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8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73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239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건) 및 계약체결 진행 중(1건)으로 일반연구비 이월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	○ 기관 운영비 부족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27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불용액은 총 185억 7,400만원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지연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등 집행잔액과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임.

< 2023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8,574	
일반회계		**16,38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3,980	○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 교부금액 일부 조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389	○ 22년 4분기 개소한 일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전담인력 채용 및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자립지원 사업비 불용 발생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시스템 개발사업 시행 시기가 예정('23.7월)보다 지연 됨에 따라 ('23.12.1.시행) 의료비 지원금 불용액
	가정위탁 지원·운영	53	○ 지자체 실집행액 고려하여 교부금액 조정,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2	○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673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지연으로 인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2,300	○ 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 인상과 장기저축이 강제되는 사업특성 등으로 예상보다 가입 및 저축이 저조하여 교부금액 일부 조정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333	○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잔여수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2개소 미선정, 연구용역 입찰 차액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3,001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등 집행잔액
	인구교육추진지원	33	○ 종교단체(원불교) 사업 미참여 30백만원, 정책연구비 계약 차액 3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35	○ 집행잔액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48	○ 홍보대행사 입찰 시 낙찰차액(35백만원), 사업운영에 따른 집행잔액(13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534	○ 사무국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	○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1**	
	지역아동센터 지원	56	○ 일반연구비 집행잔액과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255	○ 집행잔액(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100, 학교돌봄터 지원 155백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80**	
	모자보건사업	1,880	○ 고위험 임산부 지원(생애초기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1331-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행사(꿈나무 축구대회)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73]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액 12억 7,6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3회계연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276	1,276	-	-	-	1,276	1,276	-	-
·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200	200	-	-	-	200	200	-	-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076	1,076	-	-	-	1,076	1,076	-	-

73)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IQ 71~84에 해당함.

나)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참여 아동 확대 등 다각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는바, 보통 지능지수(IQ) 71~84점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는 지능의 정규 분포를 토대로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지능인으로 보고 있음. 경계선지능아동의 경우에도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는 상황으로, 학령기의 경우 학급당 3명, 전국 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지능이 의심된다고 알려져 있음[74].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의 내역사업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인지학습·사회성·정서 영역 프로그램, 진로탐색·성교육·경제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학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비의 경우 2023년에는 880명(서울 116명, 지방 764명)을 대상으로 1년간 50회(1회당 3.5만원)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음.

74) 임한결(경기장애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빠진 경계선지능아동”,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 2023. 5.

< 2023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 1,076백만원(전년동) · (선별비) 39백만원 = (서울) 23명×300천원×50% + (지방) 168명×300천원×70% · (사례관리비) 1,037백만원 = (서울) 116명×35천원×50회×50% + (지방) 764명×35천원×50회×70%

□ 그러나, 최근 4년간 사례관리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참여 아동수는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고, 1인당 평균 이용건수의 경우 목표 횟수인 50회를 달성하거나 이에 근접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2023년의 경우 사례관리 참여아동은 전년대비 9명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이용건수는 38.9회로 전년의 35.2회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목표(50회) 대비 저조한 수준임.

< 최근 4년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현황 >

(단위: 명, 회)

구 분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	참여 아동수	연간 이용건수	1인당 평균 이용건수
2023년	880	802	31,168	38.9
2022년	880	811	28,568	35.2
2021년	880	845	33,984	40.2
2020년	880	855	35,674	41.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처럼 사례관리서비스 참여 아동수 및 1인당 평균 이용건수가 목표 대비 저조함에 따라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실집행률 추이도 7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A)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3년	1,076	1,076	1,076	-	763	70.9
2022년	1,076	1,076	1,076	-	727	67.6
2021년	1,076	1,076	1,076	-	771	71.7
2020년	1,097	1,097	1,097	-	753	68.6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아동이 18세가 되어 해당 시설을 퇴소하게 되었을 때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계선지능아동이 적절한 재활·재생 훈련을 할 경우 발달장애로 이어지지 않고 비장애인 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아동권리보장원의 동사업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비스 효과로 아동의 문제행동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적응도가 개선되었으며 사회성 기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퇴소를 앞둔 아동의 자립기술 점수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인바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대상아동의 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331-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어 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75]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437억 4,500만원 중 397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3,745	-	-	-	-	43,745	39,765	-	3,980
·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43,367	-	-	-	-	43,367	39,425	-	3,942
· 자립수당시스템 운영	78	78	-	-	-	78	78	-	-
·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300	300	-	-	-	300	262	-	38

75)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보호종료아동 감소 추이를 지급대상자 산출시 반영하고, 보호연장아동 발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금액의 경우 30만원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5만원 및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기간도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2023년에는 5년 이내로 단계적으로 확대됨.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금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경과 >

구 분	2019. 4.	2020	2021. 8.	2022. 8.	2023
지원금액	월 30만원	-	-	월 35만원	월 40만원
지원기간	보호종료 2년 이내	보호종료 3년 이내	보호종료 5년 이내	-	-

□ 동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지원금액 인상(35→40만원)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90.9%임.

< 최근 4년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21,823	21,823	-	-	-	21,823	21,823	100.0	100.0	-	-
2021	22,240	22,240	-	-	-	22,240	22,236	99.9	99.9	-	4
2022	27,467	27,467	-	47 △47	-	27,467	26,663	97.1	97.1	-	804
2023	43,745	43,745	-	4 △4	-	43,745	39,765	90.9	90.9	-	3,980

□ 특히, 자립수당시스템 운영 및 사업 운영비를 제외하고 지자체를 통해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사업인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예산액 433억 6,700만원 중 394억 2,500만원만 교부하였고 이 중 356억 800만원만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82.1% 수준임.

< 2023회계연도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43,367	43,367	39,425	39,425	-	39,425	35,608	39,425	35,608	-	4,193	82.1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을 보면 '19년부터 '23년까지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23년말 기준 합계는 9,970명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19~23년)
보호종료아동	2,587	2,368	2,102	1,740	1,173	9,970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동사업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9,982명에서 2023년 12,000명으로 확대 추계되어 편성되었음.

<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예산 산출 근거 >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 27,239백만원 (5,227백만원 증, +23.7%) - 서울 2,517백만원 (1,398명×30만원×12개월×50%) - 지방 24,722백만원 (8,584명×30만원×12개월×80%)	○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 43,367백만원 (5,227백만원 증, +59.2%) - 서울 4,522백만원 (1,884명×40만원×12개월×50%) - 지방 38,845백만원 (10,116명×40만원×12개월×80%)

□ 최근 5년간 예산상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결정자 비율인 지급률을 보면, 2019년 100.3%에서 2023년 82.8%로 매년 지급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2023년에는 지급대상자를 전년도 9,982명에서 12,000명으로 확대 편성하였는바, 지급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5년간 자립수당 예산상 지급인원 대비 지급결정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상 지급대상자	5,226	7,536	7,809	9,982	12,000
지급결정자	5,242	7,332	7,268	9,121	9,935
지급률	100.3	97.3	93.1	91.4	82.8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2021. 12. 21.) 및 시행(2022. 6. 21.)으로 보호 연령 만기(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바 보호종료아동의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임[76].

□ 법 개정 이전 보호연장아동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개정 이후 보호연장아동 발생 추이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23년말 기준 보호연장아동은 4,607명임.

< 보호연장아동 현황 >

기준시점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23. 12. 31.	4,607명	884명	320명	3,403명

자료: 보건복지부

76) 개정 이전에는 대학 진학,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호 연장이 가능했음.

□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감소 추이를 지급대상자 산출시 반영하고, 보호연장아동 발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3)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보호종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생활·주거·취업·교육·건강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47억 600만원 중 13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8,900만원을 불용함.

< 2023회계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4,706	14,706	-	-	-	14,706	13,307	10	1,389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5,288	5,288	-	-	-	5,288	5,033	-	255
· 자립지원 사업비	8,152	8,152	-	-	-	8,152	7,669	-	483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1,145	1,145	-	-	-	1,145	495	-	650
· 자립지원 운영비	121	121	-	-	-	121	110	10	1

나) 현실성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확대 계획 수립 및 처우 개선 필요

실제 현원 및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인력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한 사례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그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호종료 후 생계 또는 주거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방안'('21. 7.)을 추진하였고,

국회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77]('22. 6.시행)한 바 있음.

□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후관리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준을 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타기관 의뢰 및 초기상담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상담, 지원 연계, 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77)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주요 지원내용 >

구분	지원 내용
자립상담	- 대상자별 최소 월 1회 상담 진행하되, 대상자 의사 고려해 상담주기 조정 -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점검 - 대면상담 원칙(대상자 의사·여건 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 대체 가능)
자원연계	- (복지제도 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민간 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학교·기업 실시 사업 및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 - (의료자원 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건소 보건사업 등 ※ 공공, 민간 자립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체계 구축
사례관리비 지원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지원 ※ 사례관리비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보호종료아동 간 상시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정부는 2023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하여 신규 인력 60명에 대한 10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 2023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예산 편성 근거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 ('22) 3,353→ ('23) 5,288백만원, +57.7%
· (서울) 423백만원 = (16명 × 311만원 × 12개월 × 50%) + (**8명** × 311만원 × 10개월 × 50%)
· (지방) 4,402백만원 = (104명 × 311만원 × 12개월 × 80%) + (**52명** × 311만원 × 10개월 × 80%)

□ 그런데, 2023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월별 현황을 보면, 정원 확대에 따른 충원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바, 전담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 및 경기의 경우 6월~8월경이 되어야 80% 이상의 충원률을 보임.

- 특히, 2023년말 기준 전담인력 현원은 164명으로 정원(180명)의

91% 수준으로 현원률은 전년도와 유사하고, 퇴직자는 50명으로 정원의 28%에 이르는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보임.

< 2023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월별 현황 >

(단위: 명)

시도	2022년		2023년													
	정원	12월	정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퇴직자
계	120	108	180	114	115	135	142	145	162	159	166	166	170	171	164	50
서울	16	12	24	12	14	14	16	16	24	23	23	24	24	24	23	6
부산	9	9	16	10	10	16	16	16	16	14	16	15	16	16	13	7
대구	5	5	8	5	5	8	8	5	5	8	8	8	7	7	6	5
인천	6	6	10	6	7	7	8	9	9	10	10	10	10	10	10	-
광주	5	5	10	5	5	8	9	9	10	10	10	10	10	10	11	-
대전	4	4	7	4	4	4	6	6	6	5	7	7	7	7	7	2
울산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세종	1	1	2	1	1	1	1	1	1	1	1	1	1	2	2	-
경기	20	20	32	20	19	21	20	24	27	26	30	29	29	29	29	8
강원	8	3	10	5	4	5	5	4	8	8	8	7	7	7	7	5
충북	6	6	7	6	6	6	6	7	7	7	7	7	7	7	7	-
충남	6	5	8	5	6	6	6	7	6	5	4	6	8	8	8	4
전북	7	6	9	7	6	8	9	8	8	7	7	7	9	9	7	7
전남	8	7	11	8	8	8	9	9	9	9	9	9	9	9	8	2
경북	7	7	9	7	7	7	8	8	9	9	9	9	9	9	9	1
경남	8	8	12	8	8	11	10	12	12	12	12	12	12	12	12	1
제주	2	2	3	3	3	3	3	2	3	3	3	3	3	3	3	2

주. 월말 기준 현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채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퇴직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자격에 기대되는 처우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채용 인력의 이·퇴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현행 자립지원 체계는 보호종료 이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으로 이루어짐.

< 현행 자립지원 체계 >

<table>
<tr><th colspan="3">보호아동 (15세~연장아동)</th><th colspan="3">보호종료아동(5년 이내)</th></tr>
<tr><th>소속</th><th>담당자</th><th>역할</th><th>소속</th><th>담당자</th><th>역할</th></tr>
<tr><td>아동양육시설</td><td rowspan="2">시설장,
자립지원
전담요원</td><td rowspan="3">- 보호아동 자립지원(자립지원계획수립, 자립 프로그램 운영)
- 보호종료 전 전담기관과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협력
- 후원금 등 자원연계</td><td rowspan="3">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td><td rowspan="3">자립지원
전담인력</td><td rowspan="3">-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 지역 내 자립지원 자원발굴·연계
-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운영</td></tr>
<tr><td>공동생활가정</td></tr>
<tr><td>가정위탁
지원센터</td><td>자립지원
전담요원</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자격 기준을 비교해 보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는 반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만이 요구됨.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 비교 >

<table>
<tr><th>자립지원전담기관 근무 자립지원전담인력</th><th>아동양육시설 등 근무 자립지원전담요원</th></tr>
<tr><td>◆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d rowspan="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td></tr>
<tr><td>◆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d>◆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인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사업은 단일 임금(월 311만원[78])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이양된 자립지원전담요원

78) 기본급 외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가족수당, 4대 보험 법인부담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기본급으로 환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과 비교 시 선임사회복지사 4호봉 수준에 해당함.

인건비와 달리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승급 및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로서 예산 증액을 통한 인건비 상승만이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 50명을 추가로 확대하여 2024년 정원은 230명인바,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자격 중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충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견임.

□ 그러나, 2024년 3월말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 현원은 177명으로, 확대된 정원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6개월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확대된 정원의 약 80% 수준이고, 22명의 퇴직자도 발생하였음.

< 2024년 3월말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 월별 현황 >

2023년		2024년		
정원	현원(12월말)	정원	현원(3월말)	퇴직자
180명	164명	230명	177명	22명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실제 현원 및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인력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한 사례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그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보호종료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례관리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례관리 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의 경우,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중 사례관리비 지원대상을 1,47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사례관리비 월 지원단가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자립지원 사례관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대상	1,470명	2,000명
지원단가	월 30만원	월 40만원

□ 2022년 및 2023년 사례관리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사례관리 실시율은 81.3%였으나, 2023년에는 123.9%로 실적치가 목표를 초과하였음.

< 2022년 및 2023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목표 대비 실시 현황 >

(단위: 명, %)

시도	수행기관 (시·도 위탁)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실시율	목표	실적	실시율
계		1,470	1,195	81.3	2,000	2477	123.9
서울	서울아동복지협회	225	63	28.0	310	454	146.5
부산	부산아동복지협회	125	142	113.6	175	229	130.9
대구	대구YWCA	60	30	50.0	85	153	180.0
인천	한국아동복지협회	70	73	104.3	105	150	142.9
광주	광주아동복지협회	75	61	81.3	105	126	120.0
대전	대전아동복지협회	65	65	100.0	80	84	105.0
울산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20	4	20.0	25	8	32.0

시도	수행기관 (시·도 위탁)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실시율	목표	실적	실시율
세종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5	4	80.0	5	8	160.0
경기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240	207	86.3	365	369	101.1
강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80	-	0	110	70	63.6
충북	한국아동복지협회	65	99	152.3	75	95	126.7
충남	충남아동복지협회	75	61	81.3	85	101	118.8
전북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95	114	120.0	100	119	119.0
전남	전남아동복지협회	95	99	104.2	115	192	167.0
경북	경북아동복지협회	70	70	100.0	100	131	131.0
경남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85	83	97.6	125	141	112.8
제주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20	20	100.0	35	47	134.3

주1 사례관리 목표 : 자립지원 사업비(사례관리비) 지원 예산 기준 : ('22년) 월 30만원 단가 x 1,470명 → ('23년) 월 40만원 단가 x 2000명
주2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1회 이상 사례관리비 지원 받은 인원으로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2022년 및 2023년 지자체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 실집행률은 80.1%로 2022년의 45.9%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예산액 76억 3,500만원 중 불용액은 10억 3,400만원으로 불용률은 13.5%인 바, 사례관리 실적이 예산상 목표를 초과하였음에도 불용은 상당함.

< 2022년 및 2023년 자립지원 사례관리비 지자체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2년	4,261	3,648	1,954	1,694	45.9
2023년	7,635	7,152	6,118	1,034	80.1

□ 불용 사유는 사례관리 실시율은 목표 인원 대비 사례관리를 받은 인원의 비율로서 사례관리를 1회만 지원받아도 사례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사례관리비 실집행 내역의 경우 실제 사례관리비 집행 결과이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보호종료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연간 한도(480만

원[79]) 내에서 보호종료아동별로 자립에 필요한 사례관리 횟수가 달라 1인당 지원된 사례관리비에서 차이가 있는바, 연간 한도액을 모두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 한도액 중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향후 보호종료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례관리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의 맞춤형 제공이라는 사례관리비 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종료아동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례관리 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사례관리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체 보호종료아동 9,970명 대비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자는 2,000명으로 그 비율은 20.1%이고, 실제 사례관리 지원인원의 경우에도 전체 보호종료아동의 24.8%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 2023년 보호종료아동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보호종료아동 (A)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자 (B)	실제 사례관리 지원인원 (C)	사례관리대상자 비율	
				예산대비	실제대비
계	9,970	2,000	2,477	20.1	24.8

자료: 보건복지부

79) 월 단가 40만원 × 12개월

라)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외래·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이며, 예산액은 11억 4,500만원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요건(❶)만 갖추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
❶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❷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 2종 수준과 유사한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예산액) 1,145백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초기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환 후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의 추진 체계는 자립준비청년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지원금을 일괄로 선지급하고 추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체계 >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	대상자	○ 읍·면·동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및 결정	읍·면·동	○ **의료비 지원 신청** – (행복e음) 신청서 출력, 등록, 이송
	시·군·구	○ **신청 접수,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 (행복e음) 지원 결정 ○ **대상자 사후관리**
대상자 정보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정보 연계** – (행복e음)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 요양기관 정보마당 반영**
진료 및 청구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 자격조회 화면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가능 ○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요양급여 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F028) 기재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통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지급 내역 확인	보건복지부	○ 의료비 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정부는 2023년 6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급여업무프로그램 내에 의료비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6개월분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23) 1,145백만원, 순증(신규) - (산출) 의료비 지원 및 위탁수수료 1,095백만원 ·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600백만원 = 8,000명 × 75천원* × 100%** *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23.7월 시행으로 6개월치만 반영 · **(위탁수수료) 495백만원 = (시스템 개발·운영비 411백만원 + 인건비* 84백만원)** * 2명 × 350만원 × 12개월 × 100% - (산출) 사업운영비 50백만원(연구용역비)

□ 그러나, 정보화사업 심의, 보안성 검토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동 시스템 구축은 11월말에 완료되어 12월부터 사업이 운영되었는바, 예산액 11억 4,500만원 중 시스템 개발비용 4억 5,000만원만 집행되고, 의료비 지원분 등으로 편성된 6억 5,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수행 일정 >

월 / 추진내용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보화사업 심의 의뢰	●										
정보화사업 심의		●									
보안성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	●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							
정보시스템 개발 계약의뢰				●							
위탁수수료 청구					●						
조달청 입찰공고					●	●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정보시스템 개발							●	●	●	●	
테스트									●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업비(국비) 교부신청										●	
업무 개시											●
정보시스템 안정화										●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구축 완료 직후인 2023년 12월부터 온라인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2023년말 기준 총 2,719명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대상자가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의료비 지원금(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차액)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12월분 의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을 거쳐 2024년 1월에 지급되었다고 설명함.

□ **의료비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연내에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와 과잉행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경우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 중인 위탁가정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가정, 입양전 아동을 보호 중인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보호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78억 7,400만원 중 76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00만원이 불용됨.

< 2023회계연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7,874	7,874	-	-	-	7,874	7,658	163	53
·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484	484	-	-	-	459	459	-	-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79	479	-	-	-	505	505	-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251	3,251	-	-	-	3,250	3,212	-	38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36	136	-	-	-	136	136	-	-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3,024	3,024	-	-	-	3,024	3,024	-	-
· 가정위탁 사업운영비	200	200	-	-	-	200	193	-	7
·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300	300	-	-	-	300	129	163	8

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은 보호가정의 자격기준이 동일하고, 보호의 대상도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 지원·운영의 내역사업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6세 미만)을 최종 보호조치시까지 일시보호하도록 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과 행동적·심리적 측면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 2세 이하 영유아, 경계선지능아동, 학대피해아동 등)을 중·장기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에 매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에서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80]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 보호 및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 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정위탁사업이 추진·시행 중임.

□ 2023년 정부는 위기아동 보호가정 보호비 지원대상을 200명으로 하고,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의 경우 325명을 기준으로 예산액 3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2022년 보호가정 및 아동수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위기아동 보호가정 지원기간을 2022년 9개월에서 2023년 4.5개월로 단축하고, 전문가정위탁 지원대상은 433명에서 325명으로

80) 요보호아동 발생사유 중 '학대' 사유: ('13년) 18.6% → ('19년) 36.7%

축소하여 편성한 것임.

< 2023회계연도 전문아동보호비 예산 편성 근거 >

내역사업 명	편성 근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기아동 보호가정 611백만원 - 서울 : 14명×1,000천원×4.5개월×40%(보조율) - 지방 : 186명×1,000천원×4.5개월×70%(보조율)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640백만원 - 서울 : 25명×1,000천원×12개월×40% - 지방 : 300명×1,000천원×12개월×70%

< 2022년 및 2023년 전문아동보호비 예산 현황 >

연도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전문가정위탁(장기보호)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2022년	200명	9개월	433명	12개월
2023년	200명	4.5개월	325명	12개월

□ 그러나 보호기간 단축 및 지원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69.7%로, 2022년 34.6%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22년 및 2023년 전문아동보호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지자체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년	4,751	1,642	34.6
2023년	3,251	2,265	69.7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실집행률 부진 사유로, 학대 대응 현장에서 가정위탁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보호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가정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위탁가정의 확대는 그 필요성이 큼.

□ 한편, 2022년 및 2023년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현황을 보면,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보호가정 및 보호아동 모두 완만하기는 하나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경우 답보 또는 감소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위기아동 보호가정 및 전문가정위탁 보호 아동 현황 >

(단위: 가정, 명)

구분	위기아동 보호가정		전문가정위탁	
보호 가정 및 아동	가정	아동	가정	아동
2022년말	15	16	213	231
2023년				
1월	13	14	220	244
2월	12	13	226	254
3월	12	13	234	260
4월	10	11	235	261
5월	8	9	237	263
6월	11	12	244	272
7월	8	8	251	281
8월	6	7	258	287
9월	5	6	258	288
10월	3	4	263	295
11월	3	4	268	300
12월	5	5	279	313

자료: 보건복지부

□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을 비교하여 보면, 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은 두 가정이 동일하고 보호의 대상도 유사한 데 비해, 보호형태 및 보호기간에서 단기(3개월)와 장기로 차이가 있음.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및 전문가정위탁 비교 >

구분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가정위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일시위탁 근거조항)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가정위탁 보호조치)
보호형태	일시보호	장기보호
보호기간	3개월(3개월 이내 연장가능) * 이후 장기보호로 전환	보호종료(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시까지 * 2세 이하 아동은 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대상아동	'21.3월 이후 즉각분리된 0~6세(미취학)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자격요건	○ (부모자격) 일반위탁부모 선정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자격(한 가지 이상 충족)을 갖춘 사람 중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일반위탁가정 기준) 소득, 종교자유 인정, 양육·교육환경, 연령(25세 이상, 아동과 60세 미만의 나이차이), 위탁아동 포함 18세 미만 아동 4명 이내 양육, 범죄 등의 전력(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이 없는 가정 ○ (자격) 3년 이상 친인척 외 가정위탁양육 경험자, 복지, 보육, 의료, 상담 등의 자격 소지자, 그 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등 *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수료 이후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 답보 상태에 있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위탁가정 수에 비해 전문가정 위탁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는 점,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위탁 가정은 그 자격기준이 동일한 점, 대상아동의 경우에도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인 즉각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은 전문위탁가정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는 점, 학대피해아동은 일시보호에서 장기보호로 보호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기아동 가정보호와 전문가정위탁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사업 차질 발생

신규사업 추진 첫 해부터 사업계약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공공후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81]하여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이들의 권익 실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양육자의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채무 등과 같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아동 발굴 및 후견인 후보자와의 연계를 지원하며, 법원의 후견인 선임 후 후견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 개요 >

○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1조(보조인의 선임)

○ **(지원대상)**

- (후견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
  * ① 친권자 부재 또는 위탁부모 등 양육자가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아동에게 전문적 지원욕구(채무, 상속 등) 또는 특수욕구(정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등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 (지자체 및 보호기관)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자체 및 보호기관(양육시설장, 가정위탁보호자) 등 후견 선임 청구 및 후견 활동 등의 법률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모집) 후견인 모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브로셔·포스터·카드뉴스) 제작, 사회복지 종사자·유관단체* 등 배포

81) 2024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사업으로 추진 중임.

* 특정 자격군(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소지자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시행

- (교육·접수) 후견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신청서류 안내, 1차 자격검증, 후견인 교육 프로그램 안내
- (대상아동 발굴) 지자체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후견인이 필요한 수요대상 아동 발굴 및 추천 요청
- (후보자 연계 지원) 후견인 교육 수료자에게 제출서류 안내, 결격사유 조회 등 최종 자격* 검증 후 대상아동에 맞는 적합한 후견인 추천 및 연계 지원

  *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등

- (활동비지원) 시·군·구 및 법원을 통해 선임된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에게 활동보고서* 작성 요청·검토, 활동비(월20만원) 지원

  * 월1회 활동보고서 작성 지원, 활동 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공차원의 후견지원제도 추진체계 구축 및 지자체 및 보호기관 등 원활한 후견 업무수행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보호대상아동 후견 관련 법률 교육 제작 및 운영) 지자체 및 보호기관 등 각각 보호대상아동 양육에 필요한 후견 선임 청구 등의 후견 관련 법률교육 제작, 기관별 교육 운영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2023회계연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액 3억원 중 후견인 후보자 모집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후견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제 교육에 7,9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300	300	-	-	-	300	129	163	8
- 후견인 선임 및 활동 비용 지원	50	50	-	-	-	50	50	-	-
- 보호대상아동 공공 후견 시범사업	250	250	-	-	-	250	79	163	8

□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동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후견인후보자 모집·관리 및 보호대상아동과 후견인 후보자 연계 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개발 및 운영, 사단법인 온율은 법원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 대리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상기 3개 기관·단체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 공공후견제도 매뉴얼 제작 및 공공후견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모집 지연으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추진 용역 계약이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체결되어 후속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음.

< 2023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용역 계약 체결 현황 >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아동권리 보장원[82]	2023. 10. 13. ~ 2024. 10. 12.	2억 4,200만원	조달

자료: 보건복지부

□ 구체적으로, 후견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에 실제 후견인 후보자 대상 교육만 2023년 12월 실시되어 57명이 이수하였을 뿐 보호대상아동 수요조사 및 후견인 연계에 필요한 인건비 등 사업 추진 비용, 후견인 선임 청구 대리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는 연내 집행되지 못하여 1억 6,300만원이 2024년으로 이월된 것임.

82)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단법인 온율의 컨소시움 계약임.

□ **신규사업 추진 첫 해부터 계약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83]하여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이들의 권익 실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재차 실시하여 43명이 추가적으로 이수하였는바, 2023년 이수인원과 합하여 총 100명의 후견인 후보자 풀을 구성하였고, 경기도 내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가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발굴한 총 5명(경기도 4명, 서울 1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에 대한 후견인 선임 청구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임.

83) 2024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사업으로 추진 중임.

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1334-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재발위험이 높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471억 3,100만원 중 42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7,131	47,131	-	-	-	47,131	42,458	-	4,673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5,721	25,721	-	-	-	25,721	25,415	-	306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21,410	21,410	-	-	-	21,410	17,043	-	4,367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 재조정 및 지자체 신규 설치 유인 제고 방안 필요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쉼터 설치 목표를 재조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단가 현실화 등 지자체의 신규 설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84](이하, '쉼터'라 함)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2023년말 기준 총 144개소의 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각 시·도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44	7	5	3	6	5	6	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	5	11	12	7	11	7	8	4

자료: 보건복지부

□ 학대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주로 일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며,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함. 종사자로는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84)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인력 1명을 두며, 1개소당 정원은 6명임.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85] 1개소 관할 지역당 쉼터가 최소 2개소(남·여)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쉼터를 240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확충)까지 확충할 계획임.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 >

(단위: 개소)

'20	'21	'22	'23	'24	'25
76	105	141	177	213	240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에는 36개소의 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86], 2023년말 기준 신규 설치 쉼터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10개소는 2022년에 이월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예산으로 신규 설치된 것은 9개소이고 11개소는 2024년도로 이월됨.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목표 및 실제 설치 현황(년 월 기준) >

(단위: 개소, 수)

구분	'20	'21	'22	'23
설치목표	76	105(+29)	141(+36)	177(+36)
실제설치	74	98(+24)	125(+28-1*) * 폐소 1개소	144(+19)

주 ( )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개소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2023년 쉼터 설치비 실집행내역을 보면, 63억 2,400만원 중 33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

85)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관임.

86) <2023회계연도 쉼터 설치 예산 편성 근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 6,324백만원 (36개 × 439,203천원 × 보조율 40%

은 36.2%에 그치고 있는바, 2022년 70.7%에 이어 연례적인 집행 부진 속에 오히려 실집행률은 감소하였음.

< 2022년 및 2023년 쉼터 설치 및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년	6,324	6,324	6,222	6,222	-	6,222	4,471	799	952	70.7
2023년	6,324	6,324	3,367	3,367	-	3,367	2,287	329	751	36.2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아동인구, 아동학대 판단 건수 및 일시분리 건수 감소, 주택 매입비에 비해 낮은 쉼터 설치 지원단가 및 인근 주민 민원 제기로 적정장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쉼터 신규 설치 신청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전체 아동학대 판단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감소 추세에는 편차가 있으며, 서울·부산·울산·경기 등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증가한 지역도 있음.

< 최근 3년간 시도별 아동학대 판단 현황 >

(단위: 건)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955	37,605	27,971
서울	**2,780**	3,615	**2,899**
부산	**1,558**	2,022	**1,726**
대구	1,271	1,507	1,223
인천	2,477	2,761	2,216
광주	698	827	519
대전	1,363	1,147	637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울산	**1,234**	2,669	**1,708**
세종	337	216	169
경기	**7,669**	10,207	**7,845**
강원	1,153	1,160	982
충북	1,025	825	690
충남	1,940	2,011	1,209
전북	2,086	1,937	1,356
전남	1,909	1,942	1,444
경북	1,450	2,068	1,414
경남	**1,443**	1,944	**1,510**
제주	562	747	424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쉼터 보호 아동 역시 전체적인 감소 추세 속에 서울·경남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함.

< 최근 시도별 쉼터 보호 아동 현황 >

(단위: 명)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26	1,162	935
서울	19	34	61
부산	82	71	46
대구	41	35	25
인천	26	25	22
광주	48	50	49
대전	55	56	35
울산	34	25	18
세종	5	7	4
경기	173	236	193
강원	45	49	38
충북	75	73	79
충남	61	88	66
전북	94	112	79
전남	101	116	75

경북	64	58	50
경남	43	45	51
제주	60	82	44

□ 한편, 2023년 예산상 쉼터 설치비 단가는 2022년과 동일한 4억 2,600만원으로 100㎡ 기준 수도권 및 서울 연립다세대 가격에 미달하고 있어 설치비 단가 현실화도 필요해 보임.

< 100㎡ 기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가격 동향 (2024.3월 기준) >

구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국평균	62,790만원	42,620만원
수도권	81,720만원	50,330만원
서울	138,810만원	77,460만원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쉼터 설치 목표를 재조정하고, 쉼터 설치비 단가 현실화 등 지자체의 쉼터 신규 설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취약계층 아동[87]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 50만원)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499억원 중 476억원을 집행하고 23억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9,900	49,900	-	-	-	49,900	47,600	-	2,300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49,900	49,900	-	-	-	49,900	47,600	-	2,300

87)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 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2024년부터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나) 대상아동의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필요

가구의 경제적 사정으로 가입 및 저축이 어려운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의 가입률 및 적립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대상아동 및 지원금과 매칭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왔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비율 확대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령 (만 12세~17세) 소득기준(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경우 가입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고, 적립률은 답보 상태로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약 9%p 가량 낮음.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과 적립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가입률이 13%p 하락하였는바, 2023년에도 가입률은 개선되지 않았고, 적립률도 93.7%에서 91%로 하락하였음.

< 최근 4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 >

연도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대상아동	가입아동	가입률	적립률	대상아동	가입아동	가입률	적립률
2020	26,505명	24,830명	93.7%	95.4%	56,837명	49,855명	87.7%	79.5%
2021	24,985명	24,669명	98.7%	95.7%	55,744명	43,812명	78.6%	81.5%
2022	27,952명	23,887명	85.5%	93.7%	52,530명	40,904명	77.9%	83.1%
2023	27,159명	23,334명	85.9%	91.0%	60,688명	39,866명	65.7%	82.1%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실집행률은 2022년 정부 매칭비율 2배 확대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74.8%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80% 중반으로, 낮은 수준임.

< 최근 4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0	24,744	-	-	-	21,244	85.9
2021	25,038	-	-	-	20,863	83.3
2022	55,445	-	-	-	41,165	74.8
2023	49,900	-	-	-	42,341	84.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낮은 가입률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가 되면 자립 용도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하고, 24세가 되어야 용도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여 장기 저축이 강제되는 특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아동 저축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해지 >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	만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아동 사망, 이민 등	○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 실제로, 연도별 적립 및 미적립 아동 현황을 보면, 아동이 저축을 하지 못하여 1년에 한번도 매칭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아동은 2019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전년(443명) 대비 약 40% 증가한 734명이었는데, 이 중 89.5%에 해당하는 657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임.

< 연도별 적립 및 미적립 아동 현황(해당연도 1년간 미적립 아동) >

(단위: 명)

연도	계	적립아동			미적립아동		
		소계	요보호	기초수급	소계	요보호	기초수급
2018년	81,412	78,665	25,301	53,364	2,747	267	2,480
2019년	80,770	74,115	24,717	49,398	6,655	325	6,330
2020년	74,685	72,477	24,485	47,992	2,208	345	1,863
2021년	68,481	67,009	23,787	43,222	1,472	590	882
2022년	64,791	64,348	23,752	40,596	443	135	308
2023년	63,200	62,466	23,257	39,209	734	77	657

주1: 적립아동은 당해연도에 국가매칭금이 매칭된 사례가 있는 아동을 의미
주2: 미적립 아동은 당해연도에 1회도 국가매칭금이 매칭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
주3: 미적립 아동의 경우 지원중지 아동 및 12월 계좌개설(다음년도 1월에 12월로 소급) 아동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2023년 보호유형별 가입 및 적립 현황을 보면,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 아동의 가입률은 70.4%로 보호대상아동 전체 가입률 평균인 85.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보호유형별 가입 및 적립 현황 >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대상아동 인원(A)	가입		적립	
			인원(B)	비율(B/A)	인원(C)	비율(C/B)
계		87,847	63,200	(71.9)	53,948	(85.4)
기초수급		60,688	39,866	(65.7)	32,714	(82.1)
보호대상	소계	27,159	23,334	(85.9)	21,234	(91.0)
	양육시설	11,250	10,787	(95.9)	10,060	(93.3)
	공동생활	2,748	2,733	(99.5)	2,429	(88.9)
	가정위탁	9,163	6,451	**(70.4)**	5,967	(92.5)
	장애인	1,505	920	(61.1)	790	(85.9)
	기타	2,493	2,433	(97.6)	1,988	(81.7)

주. 기타: 가정복귀, 소년소녀가정, 일시보호시설, 입양대상아동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 아동의 가입률 및 적립률이 저조한 것은 조부모 등 친인척 가정위탁이 전체 가정위탁 세대의 87.2%에 해당하는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위탁가정 유형(2022년말 기준) >

구분	계	중장기 보호				일시 가정위탁
		소계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 위탁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7,591	7,574	6,617	748	209	17
아동수	9,330	9,312	8,204	871	23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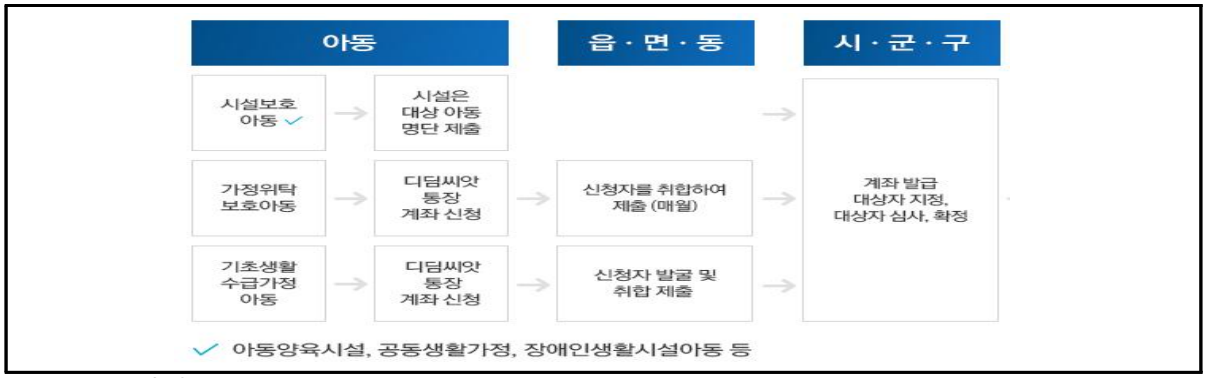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시설장이 대상 아동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가입하는 데 비해, 가정위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를 발굴하여야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개설된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후원 가능성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비해 높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및 발급 절차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한편, 가입률 및 적립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중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2024년 동 계좌의 금리는 3.45%~3.95%로 2023년 3.45%~4.05%에 비해 하락하였고, 시중 금융기관이 최고 5.5%의 금리를 제공[88]하는데 비해 낮은 편임.

< 아동발달지원계좌 금리 >

구 분		'24년 기준	'23년 기준
가입기간 (만기 이전) *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에 1%를 더한 우대금리 적용	1개월 이상	3.45%	3.45%
	12개월 이상	3.70%	3.80%
	24개월 이상	3.75%	3.85%
	36개월 이상	3.90%	4.00%
	48개월 이상	3.95%	4.05%

자료: 보건복지부

88) 시중 금융기관 중 토스뱅크는 0세~16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 이율 3%에 우대이율 2.5%를 더해 최대 5.5%의 연이율을 제공하고 있고, NH농협은행은 14세~18세 아동에게 기본 이율 3%에 조건 충족시 3.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한겨레, "연이율 최대 5.5% '아이 적금' 들까…60살 이상 최대 10% 상품도", 2024.5.8.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들의 가입률 및 적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스라엘의 경우 아동(가구) 저축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직접 적립을 하고 있는바[89], 직접 적립 방식 병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9) 조윤경(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주요 국가 아동자산형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김상희의원실 소규모연구용역(정책연구) 자료, 2020. 2.

7)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1337-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미접종 등 정보를 활용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며, 아동 양육·생활 환경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아동정책조정 업무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노후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 31억 6,600만원 중 28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166	3,166	-	-	-	3,166	2,833	-	333
· 아동인권 증진 지원	23	23	-	-	-	23	23	-	-
·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관리	713	713	-	△32	-	681	681	-	-
·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880	880	-	32	-	912	874	-	38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사업	1,050	1,050	-	-	-	1,050	925	-	125
·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500	500	-	-	-	500	331	-	169

나)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조사 용역계약 낙찰차액 환수 방안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동 연구원과 민간업체 간 설문조사 용역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발주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귀속되고 있는바, 향후 낙찰차액 반납에 관한 사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계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중 아동종합실태조사는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임[90].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확정계약[91]을 체결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바[92], 2023년에는 연구원 인건비 등 1억원, 조사비 약 4억 2,680만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예산 편성 근거 >

○ 예산액: 600백만원 - 연구원 인건비·여비·회의비 등: 100,000천원 - 조사비 426,800천원 - 일반관리비 18,655천원 - 부가가치세 54,545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90)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91)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임(공공계약 실무 가이드(2022, 감사원))

9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국 5,500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액 4억 2,000만원으로 공개입찰하여 ㈜한국리서치와 총액 3억 9,9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결과 2,1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계약 체결 현황 >

(단위: 백만원)

수행연도	발주기관	실태조사 예산액	연구기관	설문조사 수행업체	설문조사 예산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2023	보건복지부	6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한국리서치	420	399	2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3년 4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 체결한 용역 계약(총액 5억 3,600만원)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설문조사 수행업체 간 계약 중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 착수신고서[93]에도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낙찰차액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지 아니하고, 2023년 11월 인건비 등 다른 예산으로의 변경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액 전액(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9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원)

구분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계	536,000,000	536,000,000	-
인건비	103,944,410	124,944,410	21,000,000
여비	1,131,000	609,000	△522,000
유인물비	2,352,000	3,604,000	1,252,000
회의비	3,640,000	2,730,000	△910,000
교통통신비	400,000	100,000	300,000
연구활동비	1,800,000	2,280,000	480,000
조사비	**420,000,000**	**399,000,000**	**△21,000,000**
일반관리비	2,732,590	2,732,590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계약은 확정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의 비용 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94]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95]에 따라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예산 변경으로 집행했다는 의견임.

□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계약 및 용역 착수 신고 시 동 연구원과 설문조사 수행업체 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없는 경우 낙찰차액을 반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설문조사 수행 업체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보건복지부로 반납되도록 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계약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58('12.9.4.)),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9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신규설치를 지원하고, 거점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413억 500만원 중 38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1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1,305	41,305	-	-	-	41,305	38,304	-	3,001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7,003	37,003	-	-	-	37,003	34,302	-	2,701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2,400	2,400	-	-	-	2,400	2,100	-	300
· 거점심리지원 센터 운영	1,220	1,220	-	-	-	1,220	1,220	-	-
·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45	45	-	-	-	45	45	-	-
·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운영	637	637	-	-	-	637	637	-	-

나) 연례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연 문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연례적인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설치 신청 유인을 높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은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운영비·사업비와 신규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피해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96]하는 기관임[97].

□ 2023년말 기준 전국에 9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98]하여 운영 중으로 1,553명(상근직원 기준 정원 대비 101% 충원)이 종사하고 있고, 각 기관당 16.7명[99]이 근무하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36.7건의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바[100], 적정수준의 사례 건수를 위해 보건복지

---

96)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업무 등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였으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업무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함.

97)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98) 92개 기관 중 88개가 위탁 운영 중임(직영 4개소: 서울 3, 부산 1)

99) 관장 1, 상담원 13.7,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 사무원 1.

부는 2025년까지 1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3. 12. 기준) >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2	10	5	3	5	2	3	2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	5	4	4	7	5	4	6	2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변화 추이 >

'19년('17~'19년)	'20년('18~'20년)	'21년('19~'21년)	'22년('20~'22년)
54.7건	57.8건	44.9건	36.7건

주: 3개년 아동학대사례건수 평균 / 해당연도 사례관리 상담원 수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신규 14개소를 더한 9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85개소만 설치되었고, 2023년에도 설치 목표 105개소 대비 92개소만 설치되어 아동호보전문기간 신규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 >

(단위: 개소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월
예산상 설치목표	71	81(+10)	95(+14)	105(+10)	115(+10)
실제설치	69	77(+8)	85(+9-1)	92(+7)	94(+2)
목표 및 설치 간 차이	2	4	10	13	21

주1. 개소수는 누적 개소수임
주2. ( )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개소수를 의미함. 2022년은 9개소 설치 및 1개소 폐쇄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는 실제 설치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

100) 1인당 사례관리 건수: 51건 ('21년 아동학대사례건수 37,605/ '21년 사례관리 상담원 731명)

문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0억 6,500만원, 16억 700만원, 14억 7,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

연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021년	3,000	3,000	3,000	3,000	580	3,580	2,145	1,065	370	58.1
2022년	4,200	4,200	3,190	3,190		3,190	1,509	1,607	372	36.0
2023년	2,400	2,400	2,100	2,100	1,607	3,707	2,079	1,470	158	37.5

자료: 보건복지부

□ 회계연도 내 설치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신규 설치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액도 불용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의 실집행률도 87.59%로 저조한 상황임.

< 2022년 및 20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년	31,761	31,761	31,046	31,046		31,046	29,052		1,994	91.47
2023년	37,003	37,003	34,302	34,302	-	34,302	32,411	-	1,891	87.59

자료: 보건복지부

□ 예산상 설치목표와 별개로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신청에 따른 실제 설치 목표를 반영한 2022년과 2023년 시·도별 신규 설치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목표 12개소 중 7개소만이 연내 완료되고, 5개소는 2023년 및 2024년에 완료(예정)이고, 2023년에도 목표 7개소 중 3

개소만 연내 완료되고 나머지 4개소는 2024년에 완료(예정)임.

<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신규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시도	설치 계획	설치실적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9월	11월	3월	8월	2월	9월
서울	1	-	-	1	-	-	-	-
부산	1	-	-	-	-	1	-	-
대전	1	-	-	-	1	-	-	-
경기	5	-	5	-	-	-	-	-
전북	1	1	-	-	-	-	-	-
전남	1	-	-	-	1	-	-	-
경남	2	-	-	-	-	-	1	1(설계완료)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신규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시도	설치 계획	설치실적							
		2023년				2024년			
		3월	6월	11월	12월	2월	7월	10월	12월
서울	2	-	-	-	-	-	1(예정)	-	1(예정)
인천	1	-	-	-	-	1	-	-	-
경기	2	-	-	2	-	-	-	-	-
충남	1	-	-	-	-	-	-	1(예정)	-
전북	1	-	-	-	1	-	-	-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설치 지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신규 설치 단가(6억원)가 인상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에서 입지조건[101]에 맞는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규 설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부지 선정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신규설치에 대한 반발과 민원, 위탁 법인 선정의 어려움[102] 등 사업 추진

10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여건 변화로 공사시기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상 목표 및 실제 계획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예산상 목표	14	10	10
지자체 신청을 반영한 실제 계획	12	7	6
실제 설치 수	8	7	2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최근 3년간 재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재학대 건수 및 아동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재학대 사례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20	3,671	2,876	11.9
2021	5,517	4,176	14.7
2022	4,475	3,469	16.0

주. 2022년의 재학대 사례는 2018년 이후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2022년에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자료: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단가를 현실화하여 연례적인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지자체 설치 신청 유인을 높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교육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위자 등이 사례관리를 거부 또는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등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사회복지법인 수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9) 아동수당 지급(25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103]에 따라 만 8세 미만(0~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조 2,563억 9,800만원이었고, 기초연금 지급사업(2131-300)에서 86억 3,700만원이 이용(2023. 11. 2.)되어 예산현액은 2조 2,650억 3,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아동수당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2,256,398	2,256,398	-	8,637	-	2,265,035	2,265,035	-	-
· 아동수당 급여	2,256,348	2,256,348	-	8,637	-	2,264,985	2,264,985	-	-
· 제도운영사업비	50	50	-	-	-	50	50	-	-

103)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예산 편성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누락 주의 필요

해외출생아 등이 아동수당 지급대상 추계시 누락되어 예산 부족분이 이용을 통해 충당되었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 지급 대상을 면밀히 계상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조 9,83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주1.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주2.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자료 : 보건복지부

□ 2023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정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활용하여 총 249만 8,776명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편성하였음.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사업 예산 산출내역 >

○ 아동수당급여: 2,256,348백만원
- 2,498,776명* × 10만원 × 12개월 × 75.6%**(보조율) × 99.6%(집행계수)

* 통계청에서 발표('21.12)한 최근 장래인구 특별추계 반영

** 기준 보조율은 전년도 동일적용 (서울 50%, 지방 70%) ± 차등 보조율 10%p(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고려)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사업 예산안 출생아 수 산정기준 >

(단위 : 천명)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연도	2023회계연도 본예산	
	출생아 산정기준	지급아동 수
2015년~2021년	실제 출생아	2,120
2022년	1~4월 : 실제 출생아 // 5~12월 : 장래인구특별추계 중위	248
2023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중위	131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10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추가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사업(2131-300)에서 86억 3,700만원을 이용(2023. 11. 2.)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였음.

< 2023년 아동수당 지급사업 이용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3.11.2.)	기초연금 지급 (2131-300)	330-01	8,637	아동수당 지급 (2539-300)	330-01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 급여 예산부족으로 기초연금 지급에서 이용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예산의 부족 이유는, 현행 「아동수당법」은 연령 요건만을 정하고 있는 보편수당으로서 해외출생아동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국내출생 아동만 추계하여 편성하고 해외출생 및 난민 아동 등을 지급 대상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아동수당 수급자 중 해외출생아 등의 현황을 보면, 해외출생아는 2019년 13,343명에서 2023년 26,402명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2배 이상 확대되었는바, 2022년에도 해외출생아 미편성으로 예비비 집행 등의 상황을 거친 바 있음.

< 최근 5년간 아동수당 수급자 중 해외출생아(월평균) 등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해외출생아	13,343	19,148	20,464	24,045	26,402
난민	103	127	128	145	168
국적취득자	-	-	-	1,353	1,122
특별기여자[104]	-	-	-	127	93
합 계	13,447	19,275	20,592	25,670	26,663

주1. 해외출생아, 난민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주2. 국적취득자는「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활용하여 추계
주3. 특별기여자는 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었고 22년 법무부로 송부받은 특별기여자 명단 현황을 바탕으로 추계
자료: 보건복지부

104)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재건사업의 조력자와 그 가족 390명으로 2021년 입국함.

□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정의무지출인 만큼,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지급 대상을 면밀히 계상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05]

105)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4년부터 해외출생아 등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다) 지급액 인상 및 지급연령 확대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 연령 확대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9월 아동수당 도입 이후 아동수당 지원 추이를 보면, 지급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예산액은 2019년 2조 1,627억 2,900만원에서 2023년 2조 2,563억 9,800만원으로 변화되어 왔음.

< 아동수당 지원 추이 >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지급금액	예산액	실집행액	지급대상	지급아동
2019	0.1	2,162,729	2,153,107	2,341,969	2,681,957
2020	0.1	2,283,374	2,297,577	2,634,761	2,536,664
2021	0.1	2,219,455	2,182,769	2,471,665	2,377,659
2022	0.1	2,379,318	2,445,394	2,704,793	2,767,534
2023	0.1	2,256,398	2,255,850	2,498,776	2,443,68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속적인 저출산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의 확대 추세 속에서 재정적 제약은 있겠으나,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금액 변동이 없어 매년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액과 관련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 확대 추이 >

구분	2023	2024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첫째) 일시금 200만원 (둘째 이상) 일시금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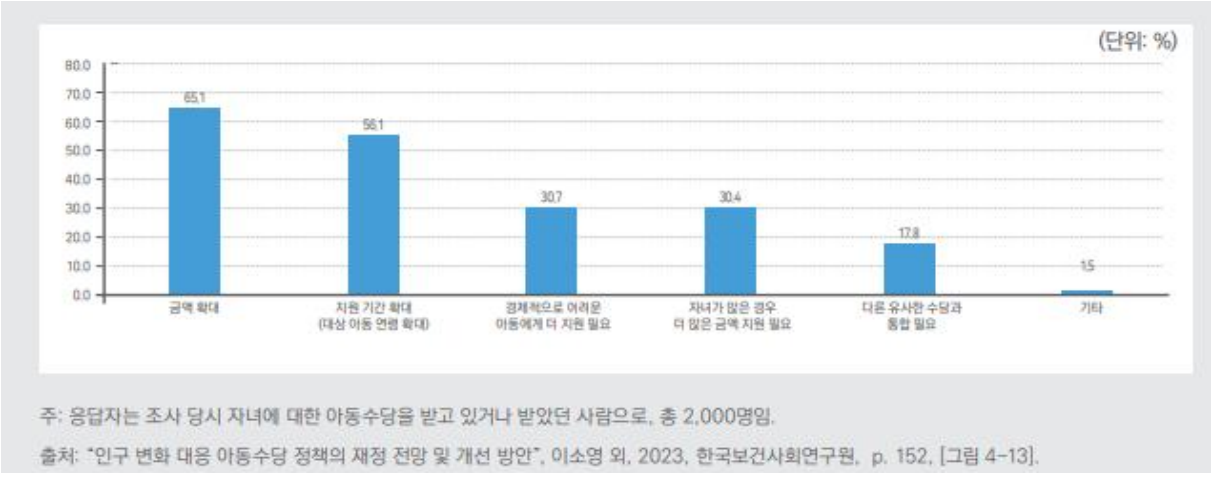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지급액을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계류 중임(2024. 8. 6. 현재).

< 지급액 인상 관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

구분	전진숙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
아동수당 지급액	20만원	50만원 (단 부모급여 삭제)	30만원	0~7세: 10만원 8세~17세: 20만원	30만원	20만원

□ 참고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106].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



주: 응답자는 조사 당시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으로, 총 2,000명임.

출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2, [그림 4-13].

□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6만 5,000원, 독일은 월 약 37만 1,000원, 영국은 약 18만원 등을 지급 중임.

106) 이소영,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4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p.27.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

국 가	지 급 액	원화 환산액 ('24.6월 환율기준)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65,000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71,000원
영 국	(첫째) 주 25.6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6.95 파운드	주 45,000원 (4주: 180,000원) 주 29,800원 (4주: 119,200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583,000원 월 492,000원
일 본	(0~2세) 첫째·둘째 15,000엔, 셋째이상 30,000엔	월 131,300원, 월 262,300원
	(3세~고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87,500원, 월 262,300원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으로 확대됨.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추이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

(단위: 만원)

자녀 관련 지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사교육비 포함	60.6	78.5	91.9
사교육비 제외	51.7	35.8	4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p.269~2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9개국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7개국임.

< OECD 아동수당 지급 국가의 연령 구분 >

지급연령	국가수	국가명
8세 미만	1개	한국
15세 이하	8개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17세 이하	18개	핀란드(16세),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
18세 이상	4개	일본(18세), 에스토니아(18세), 프랑스(19세), 체코(25세)
합계	31개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각각 18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건 계류 중임 (2024. 8. 6. 현재).

< 지급연령 확대 관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

구분	전진숙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박민규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
지급연령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18세 미만

□ 따라서, <u>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급액의 인상 및 지급 연령 확대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음.</u>

라) 지급정지의 예외 검토 필요

아동의 해외 체류 목적을 구분하여 파견 근로자의 자녀 등은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으로 인한 사망 추정, 거주불명 등록을 규정[107]하고 있음.

□ 이 경우 지급 정지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지급 정지 누적 건수는 99,303건임.

< 최근 5년간 아동수당 지급정지 건수(누적)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56,590	71,443	72,837	85,549	99,303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지급 정지와 관련하여, 당초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

107)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리나라와 체류국 중복지원에 대한 지적으로 동 법이 개정되어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이러한 점을 제정 당시부터 반영하여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임.

□ 아울러, 여타 현금성 급여 사업 대부분은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규정을 두고 있음.

< 현금급여 사업의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 >

구 분	법적 근거	해외체류 지급정지기준
첫만남이용권	-	-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지급 정지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16조	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급여 중지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해외 파견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108]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국가별 사회

108)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보장제도 차이에 따라 체류국과 우리나라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파견 근무로 인하여 아동이 장기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제도의 예외 사유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핀란드는 체류 목적을 구분하여 파견 공무원, 파견 해외근로자 자녀 등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체류 지급정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 사례 >

국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예외 사유
스웨덴	○ 국제구호활동가, 공무원, 유학생인 법적 보호자와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부여
핀란드	○ 국외 파견 근로자 및 공무원의 가족구성원인 아동의 경우 수급 가능 ○ 아동이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로 이주시 가족구성원의 거주나 근로를 근거로 핀란드 사회보장권이 있는 경우 수급 가능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중 보호자의 파견 근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행정적으로 선별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필요하겠음.**

10) 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도입된 제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109]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193억 7,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첫만남이용권 지원	319,371	319,371	-	-	-	319,371	319,371	-	-

1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밀접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임.

□ 참고로, 2024년부터는 출생순위에 차등을 두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24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 기한을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음.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경과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1.8.13.)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 ~ 8.) 및 사업타당성 확보('21.8.24.)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 2022년도 예산안(정부) 제출('21.9.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개시('22.4.1.)
- 단, 지급대상은 '22.1.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년 정부안 예산 검토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논의하여 둘째아 이상 지원금액 확대 반영('23.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3.12.26.)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이 되는 날로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24.3.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26.>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첫만남이용권 신청률(당해연도 신청자수/당해연도 첫만남이용권 수급 대상자)'을 두고 있는데, 해당 성과지표는 **단기적인 정책의 인지도와 수급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표 및 정책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도입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110]에 따르면,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아동의 발달상태 관련 지표, 가구의 경제여건 관련 지표, 부모의 삶의 만족도, 육아휴직 활용도 등 사업목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한 바 있음.

110) 조건부 추진(첫만남축하바우처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8.18.)

<평가영역별 평가 결과>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	종합평가
77.3점	82.8점	78.3점		조건부 추진*

* '분과위 총평'을 고려한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평가방안 후속 연구('24년 예정)를 통해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 예정이라는 입장임.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첫만남이용권 신청률 (%)	목표	-	-	95	95	95	당해연도 하반기 신청률 고려하여 전년수준 반영	첫만남이용권 신청률 = 당해연도 신청자수 / 당해연도 대상자수×100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실적	-	-	96.4	99.9 ('23.10월)	-			
	달성도	-	-	101.5	105.2	-			

□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도움 정도와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결혼예정자·결혼 직후의 부부에게 이 제도가 임신 및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다함께돌봄센터 사업(1338-3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일시 돌봄 포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다함께돌봄센터[111]의 인건비, 운영비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자율·제주·세종 계정)

출퇴근 시간 대 오전·야간 돌봄(각각 2시간)을 제공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및 초등학교가 활용가능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112](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계정)으로 구성됨.[113]

---

11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2) 학교돌봄터 사업은 늘봄학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학교 내 돌봄은 늘봄학교로 일원화 추진(2024년부터 예산이 폐지됨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시설은 교육청 보조율을 상향하여 계약기간 동안 운영 유지)

1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지역지원계정은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 2023회계연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자율·제주·세종)은 예산액 553억 7,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예산액 22억 7,600만원 중 2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다함께 돌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54,570**	**54,570**	**-**	**-**	**-**	**54,570**	**54,570**	**-**	**-**
· 인건비 지원	37,540	37,540	-	△38	-	37,502	37,502	-	-
· 운영비 지원	6,033	6,033	-	38	-	6,071	6,071	-	-
· 설치비 지원	10,997	10,997	-	-	-	10,997	10,997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428**	**428**	**-**	**-**	**-**	**428**	**428**	**-**	**-**
· 인건비 지원	251	251	-	-	-	251	251	-	-
· 운영비 지원	42	42	-	-	-	42	42	-	-
· 설치비 지원	135	135	-	-	-	135	135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375**	**375**	**-**	**-**	**-**	**375**	**375**	**-**	**-**
· 인건비 지원	263	263	-	△2	-	261	261	-	-
· 운영비 지원	44	44	-	2	-	46	46	-	-
· 설치비 지원	68	68	-	-	-	68	68	-	-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2,276**	**2,276**	**-**	**-**	**-**	**2,276**	**2,021**	**-**	**255**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513	513	-	-	-	513	413	-	100
· 학교돌봄터	1,763	1,763	-	-	-	1,763	1,608	-	155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고, 지역자율계정은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임.

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일반회계에서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 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의 감소폭이 크고, 2023년 실제 설치 개소수는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인바, 보건복지부는 감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3회계연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음.

<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예산 비교 >

일반회계(2022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23년)		증감	
				(B-A)	%
다함께 돌봄 사업	48,782	계	57,649	8,867	18.2
	1,910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2,276	366	19.2
	46,028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54,570	8,542	18.6
	398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375	△23	△5.8
	445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428	△17	△3.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에 따라 변경된 점을 보면, 기존 일반회계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연초에 시·도의 사업 예산액을 정하여 교부하고 시·도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도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 한도에서 지자체가 사업별 세부내역을 지역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내 초등 방과 후 돌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

으나 신규 설치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됨에 따라 계획 대비 설치 실적이 부진하였고 이는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로 나타났는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에 따라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물량 및 소요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실제로, 예산편성 시 계획 개소수는 2022년 450개소에서 2023년 208개소로 대폭 축소되고, 실제 설치 개소수는 2022년 187개소에서 167개소로 일부 감소되어 설치율은 2022년 41.6%에서 2023년 80.3%로 증가하였는바,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편성 계획 대비 설치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월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계획	17	150	350	450	450	208	129
	설치	17 (100.0%)	156 (104.0%)	251 (71.7%)	270 (60.0%)	187 (41.6%)	167 (80.3%)	85
	누적	17	173	424	694	881	1,048	1,133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설치 계획의 경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3.7% 감소되었고(450개소 → 208개소), 2024년에도 2023년 대비 40% 감소된 129개소로 감소율이 상당히 높으며, 실제 설치 개소 측면에서도 2023년 실제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167개소는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인 바, 초등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114]을 고려하면

114)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 이용희망' 응답자 : ('19) 30.2% → ('20) 41.0%→ ('21) 45.2% → ('22) 48.4%

설치 계획 및 실제 설치 개소수의 감소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봄.

□ 한편, 실제 설치와 관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자율·제주·세종)의 내역사업인 설치비 지원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세 지역 계정 모두 실집행률은 약 33%~52%으로 저조한 수준이고, 자율 및 세종 계정의 경우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설치비를 이월하였음.

< 2023회계연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 설치비 지원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계정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자율	10,997	10,997	10,997	10,997	4,460	15,457	6,639	10,997	3,708	5,898	2,920	33.7
제주	135	135	135	135	-	135	45	135	45	68	22	33.3
세종	68	68	68	68	42	110	76	68	35	30	4	51.5

□ 설치비 실집행률 부진 및 이월 사유는 방과 후 아동의 동선, 유해환경 여부, 설치 기준[115]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적합한 장소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고,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입주자 동의[116]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생활SOC

115)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확보,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복합화 건물 내 설치 시 건물 전체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도 지연되기 때문으로 이는 회계 이관 전부터 지적되왔던 문제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주택단지 내 설치 시 입주자 동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장애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12) 모자보건사업(2535-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성·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계획액 133억 9,600만원 중 114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모자보건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3,396	13,396	-	13,396	11,489	27	1,880
· 산전·산후건강관리 강화	680	680	-	680	680	-	-
· 난임부부 지원	2,775	2,775	-	2,775	2,775	-	-
·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및 배려 캠페인	78	78	-	78	78	-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456	456	-	456	456	-	-
· 성·생식건강 증진	923	923	-	923	904	-	19
· 고위험임산부 지원	7,841	7,841	-	7,841	5,999	-	1,842
· 산후조리원 평가 및 관리	369	369	-	369	369	-	-
· 모자보건사업 운영	274	274	-	274	228	27	19

나)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역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계획액은 14억 900만원으로,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난임부부 지원	2,775	2,775	-	2,775	2,775	-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330	330	-	330	330	-	-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1,409	1,409	-	1,409	1,409	-	-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306	1,306	-	1,306	1,306	-	-

□ 중앙 및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117]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118]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

117) 단, 「모자보건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난임·우울증상담센터로, 본 보고서에서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로 표기함.

118)「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터 1개소와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4년도에는 서울 서남권역과 경북 서부권역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7월 중 개소 예정임.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 현황 >

구 분	운영기관	개 소
중 앙	국립중앙의료원	’18. 6월
인천권역	가천대길병원	’18.12월
대구권역	경북대학교병원	’19. 1월
전남권역	현대여성아동병원	’19. 2월
경기도권역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21. 2월
경북권역	안동의료원	’21.10월
서울권역	**강남세브란스병원**	**’23. 7월**
경기북부권역	**동국대일산병원**	**’23. 9월**
서울 서남권역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24. 7월(예정) ※ ’24. 4월(선정), 6월(승인)
경북 서부권역	김천의료원	’24. 7월(예정) ※ ’24. 4월(선정), 6월(승인)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며,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8억 3,300만원(개소당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70%~100%의 집행률을 보임.

---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23회계연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 편성 세부 내역 >

▪ 중앙-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1,409백만원

(단위: 백만원)

중앙 난임전문상담센터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6	중앙 1개소 운영비 576백만원 - 인건비 515 - 업무추진비 6 - 운영비 25 - 사업비 30	833	권역 7개소 x 238백만원 x 50%(보조율) (권역 1개소 238백만원 구성) - 인건비 192 - 업무추진비 2 - 운영비 21 - 사업비 23

자료: 보건복지부

<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내역	'23년 집행내역 (집행률)	개소
전남 권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238백만원 - 인건비 192 - 업무추진비 2 - 운영비 21 - 사업비 23	238백만원(100.0%)	'18.12월
인천 권역		233백만원(97.9%)	'19. 1월
대구 권역		238백만원(100.0%)	'19. 2월
경기도 권역		219백만원(92.0%)	'21. 2월
경상북도 권역		238백만원(100.0%)	'21.10월
서울 권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238백만원 - 인건비 192 - 업무추진비 2 - 운영비 21 - 사업비 23	169백만원(71.0%) - 인건비 76 - 업무추진비 0.5 - 운영비 51 - 시설비(인테리어) 20 - 자산취득비 21.5	'23. 7월 ※ 사업기간 (23.6.1.~12.31.) [7개월]
경기북부 권역		236백만원(99.2%) - 인건비 50 - 업무추진비 1 - 운영비 137 - 시설비(리모델링) 40 - 자산취득비 7.5	'23. 9월 ※ 사업기간 (23.8.1.~12.31.) [5개월]

자료: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 공시 자료 편집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는 임신부, 산모 및 난임 등에 대한 상담업무로 2023년도 상담실적을 보면, 중앙 및 권역을 합하여 총 39,003건의 상담을 수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상담실적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임신부	산모	난임 등	합계	임신부	산모	난임 등	합계	임신부	산모	난임 등
계	30,278	8,839	12,553	8,886	36,862	9,226	18,075	9,561	39,003	9,955	18,178	10,870
중앙	5,349	818	1,284	3,247	6,131	811	1,592	3,728	6,019	1,026	2,165	2,828
전남	5,123	984	2,553	1,586	6,178	610	4,573	995	4,569	1,159	1,768	1,642
인천	6,479	871	4,684	924	7,822	1,155	5,652	1,015	8,216	1,464	5,653	1,099
대구	7,223	4,119	1,689	1,415	6,014	3,252	1,671	1,091	6,284	2,253	2,475	1,556
경기	5,381	1,901	1,822	1,658	5,714	1,228	2,206	2,280	5,927	1,594	2,417	1,916
경북	723	146	521	56	5,003	2,170	2,381	452	6,009	2,021	3,112	876
서울	2023.6월 승인								1,292	234	270	788
경기북부	2023.7월 승인								687	204	318	165

자료: 보건복지부

□ 구체적인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중앙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비상근),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상근인력 8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권역센터의 경우 비상근 2명, 상근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음.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인력 및 업무 현황 >

(2024. 3월 기준)

구 분		역 할	유형
센터장	산부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서비스 참여 및 자문	비상근 (중앙 2, 권역 2)
부센터장 /자문의		▸ 센터장 역할 지원 및 부재 시 위임·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서비스 참여 및 자문	

구 분		역 할	유형
전임 (팀장 및 팀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연구 등 ▸ 환자 발굴(임산부 관련 방문사업 등) ▸ 사회상담,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 심리검사 및 상담 등 ▸ 회계, 행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 (중앙센터 추가업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권역센터 상담인력 교육, 상담시스템 및 통계관리	상근 (중앙 8 권역 3)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상담서비스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상담 예약 신청 후 일반상담까지 소요된 평균 일수가 2023년 기준 중앙센터는 57일이고, 권역센터는 대기없음에서 21일까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특히, 상담센터별 상담 인력은 3명이나, 상담 대기 일수가 긴 중앙센터의 경우 '21년 9월부터 1명을 충원하여 4명으로 운영하다가 '23년 9월부터 다시 3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 대기 일수가 14.7일에서 57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중앙 및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 상담 대기 일수 >

(기준: 2018년 6월~2023년, 단위: 건)

연도	중앙	전남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서울	경기북부
2018	대기없음							
2019	대기없음	2일	3일	7일				
2020	대기없음	3일	7일	7일				
2021	14.7일	5일	7일	7일	0일	2일		
2022	32일	3일	7일	7일	3일	3일		
2023	**57.0일**	**5일**	**7일**	**6일**	**21일**	**5일**	**12.6일**	**대기없음**

* 상담 예약 신청 후 일반상담까지 소요된 평균 일수.
* 중앙 : '21.8월부터 2주 이상 대기기간 소요되어 상담 대기 일수 집계함.
* 상담센터별 상담인력 3명 투입
* 중앙 '21.9월부터 1명 충원하여 4명->'23.9월부터 상담사 3인으로 상담 추진
* 서울 : 지자체별도 예산 지원으로 상담사 4명 근무 ('24.4월부터 5인으로 상담 추진)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상담사별 상담서비스(월 평균) >

(기준: 2018년 6월~2023년, 단위: 건)

구분		상담사당 1인 배정 상담 인원 (월 평균)				
		계	난임	임신부	산모 및 양육모	기타
2018	중앙	32.9건	18.3건	10.3건	3.5건	0.7건
2019	중앙	109.6건	64.3건	22.9건	20.0건	2.4건
	전체	145.5건	37.6건	52.5건	54.2건	1.2건
2020	중앙	81.7건	43.9건	18.8건	18.0건	1.0건
	전체	138.4건	28.3건	39.8건	69.7건	0.6건
2021	중앙	148.6건	89.8건	22.7건	35.7건	0.4건
	전체	140.2건	40.4건	40.9건	58.1건	0.8건
2022	중앙	127.7건	77.6건	16.9건	33.2건	0.0건
	전체	161.7건	41.4건	40.5건	79.3건	0.5건
2023	**중앙**	**137.8건**	**67.9건**	**24.0건**	**45.8건**	**0.1건**
	전체	**147.3건**	**40.7건**	**38.2건**	**67.6건**	**0.8건**

* 개소 현황 : ('18년) 중앙 → ('19~'20년) 중앙, 전남, 인천, 대구 → ('21~'22년) 중앙, 전남, 인천, 대구, 경기, 경북 → ('23년) 중앙, 전남, 인천, 대구, 경기, 경북, 서울, 경기북부
* 서울(2023.7.31. 개소), 경기북부(2023.10.5. 개소)
* 상담센터별 상담인력 3명 투입, 중앙 '21.9월부터 1명 충원하여 4명->'23년 9월부터 3명
* 서울권역센터는 24년 4월부터 5명 근무
* 상담서비스 건 : 일반상담, 등록상담, 기타상담, 선별검사, 심리검사, 기타검사의 총합

자료: 보건복지부

□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상담 대기 일수 개선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 상담인력 운영이 필수적이어서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보조비목으로 편성(중앙 89.4%, 권역 80.6%)되어 있으나, 집행 현황을 보면 모든 센터에서 인건비 보조비목의 집행이 편성 예산에 미달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도 내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일부 미집행되었다는 설명임.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인건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중앙	515	485	94.2	
전남 권역	192	167	87.0	
인천 권역		183	95.3	
대구 권역		175	91.1	
경기도 권역		148	77.1	
경상북도 권역		160	83.3	
서울 권역		76	39.6 (67.9)[1]	※ 사업기간 23. 6. 1.~12. 31.
경기북부 권역		50	26.0 (32.5)	※ 사업기간 23. 8. 1.~12. 31.

주: '23년 개소한 서울/ 경기북부 권역의 사업기간을 고려한 집행률임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난임 부부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및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권역 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함께 센터별 상담실적을 고려한 인력 확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를 지속 확충하고, 관련 상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상담서비스의 질 관리 및 행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 및 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이며, 지역별 상담 현황과 상담 수요에 따른 대기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

과 연계체계 구축 및 센터 간 연계·의뢰 활성화로 상담 대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119]의 개정으로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5년부터는 주요 업무 범위가 난임 관련 상담 등에서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확대된 업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19)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 2.][시행일: 2025. 1. 3.] 제10조의5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11조의4

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율 제고 필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정책수혜자인 출산가정이 필요한 시점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율 제고 방안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위험임산부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구성됨.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건강을 보호하고 아동의 생애초기에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개요 >

□ **(목적)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 대상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 (국정과제 46-4)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세부 과제

□ **근거법률**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지역보건법) 보건소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

▸(모자보건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관리 지원

□ **(사업내용)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임산부 및 만 2세미만 영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내용) 최초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 대상자 욕구 파악을 통해 일반군·고위험군 분류·지원

  *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 및 정신병력, 약물·알콜중독, 아동기학대경험 등

  ▸(일반군) 출산 후 8주 이내 기본 방문*(1~3회)하여 영아의 성장상태 확인, 양육환경 점검 및 수유 교육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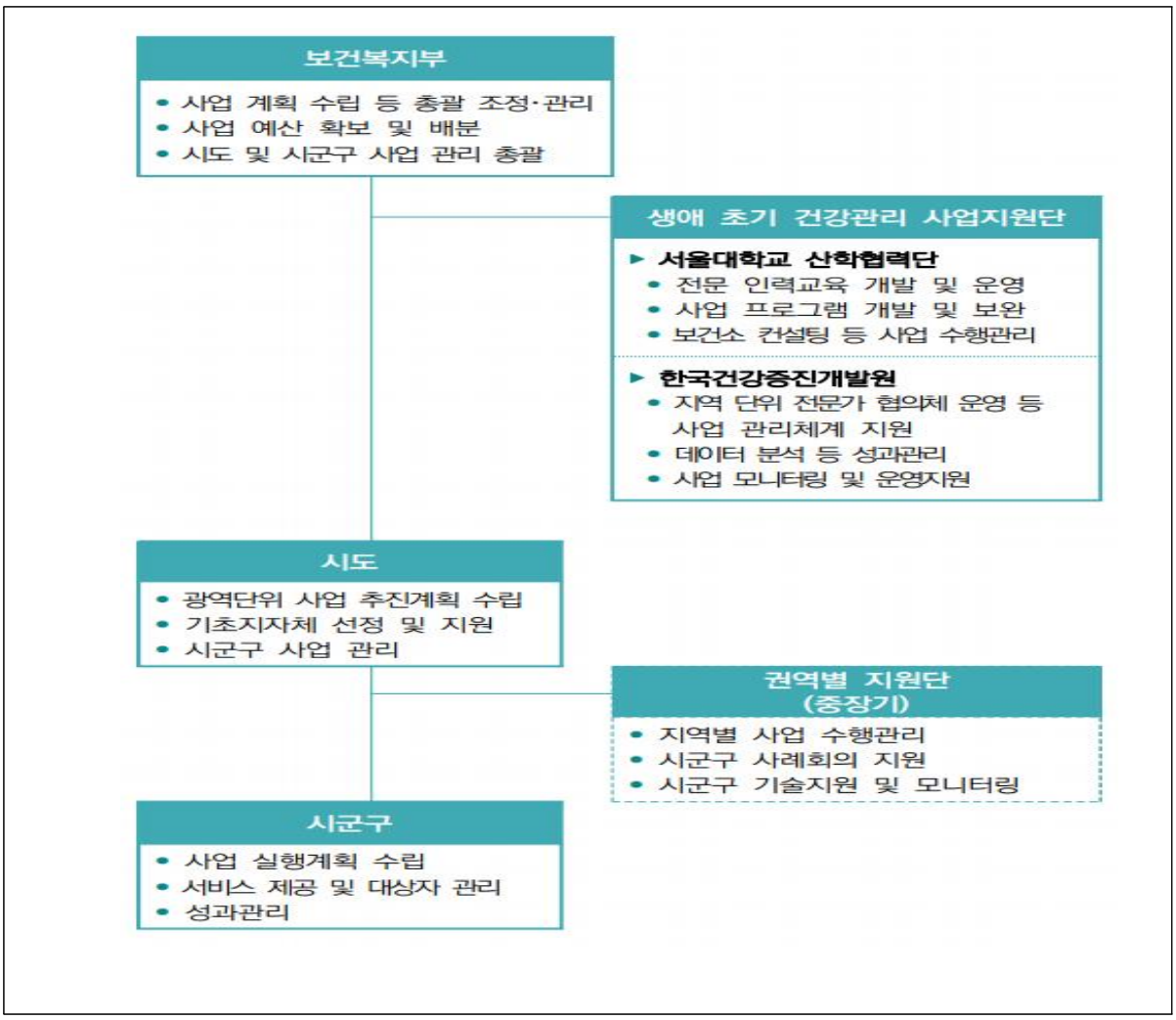
  * 출산 후 방문을 통해 임산부 재평가, 문제 발견 시 고위험군으로 재분류

  ▸(고위험군) 산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25회↑)하여 영아발달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 지원

- (他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별 상황을 고려, 지역자원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지원센터, 모유수유클리닉, 영양플러스 등 서비스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추진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운영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①일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1~3회 방문을 통해 영아의 성장상태 확인, 양육환경 점검 및 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거나, ②청소년산모, 미혼모 등 고위험군 임산부 가정에 출산 전·후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교육 및 사례관리(최소 25회)를 실시하는 방문으로 구분됨.

□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은 50억 8,000만원으로, 이 중 30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억 1,8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60.3%에 불과하고, 최근 4년간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21년도 이후 실집행률이 모두 70%에 달하지 못하는 상황임.

< 최근 4년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A-B)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933	1,053	1,053	1,053	-	1,053	964	-	89	91.5
2021	3,014	3,014	2,073	2,073	-	2,073	2,073	-	941	68.8
2022	4,141	4,141	2,659	2,659	-	2,659	2,659	-	1,482	64.2
2023	5,080	5,080	3,238	3,238	-	3,238	3,062	-	2,018	60.3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1개 보건소(8개 시·도 19개 시·군·구)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1년도에는 29개소의 보건소가 지정되었고, '23년도에는 참여 보건소를 7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전년 대비 20개소[120]가 증가한 59개소 지정에 그쳐 목표에 미달하였음.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경과 >

(단위: 개소 수, ※ 누적 개소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	50	50	75
실제 참여	21	29	39	59

자료: 보건복지부

120) (2023년 신규 설치 보건소 현황)
* 21개소 선정 : (서울) 강남구, 은평구 (인천) 남동구, (경기) 군포시, 안성시, 과천시, 양평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남) 공주시, 금산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강진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 구미시, 안동시, 울진군, 청도군, (경남) 창녕군
** 1개소 사업 철회: 경기 오산시(기준인건비 관련 시선제 인력 고용 연장 불승인)

□ 다만,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이후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증액 사유는 참여 보건소 개소 수 확대(50개소→75개소)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방역 관련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신규사업 수행이 제한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완화되면서부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수행기관의 실질적인 추가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함. 아울러 동 사업 간호사 인건비 단가가 ’17년 공공의료기관 간호사(30대) 월평균 임금(2,716천원) 기준 반영 이후 동결되어 보건소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 등으로 예산안 기준(75개소) 대비 신규 수행기관 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함.

< 2023회계연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예산 편성 세부 내역 >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23) 5,080백만원
※ 국정과제 46-4(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 지원 확대)
① 보건소 사업비 : ('22) 3,757백만원 → ('23) 4,696백만원(939백만원 증액)
★ 보건소 50개소 → 75개소로 확대
* **(인건비) 3,257 → 4,071백만원(+814백만원)**
☞ **(200명×2,714천원×12월×50%) + (100명×2,714천원×6월×50%)**
* **(사업비) 500 → 625백만원(+125백만원)**
☞ **(50개소×20백만원×1년×50%)+(25개소×20백만원×0.5년×50%)**
② 중앙 서비스지원단 운영비 : ('23) 384백만원, 전년동
*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보건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동 사업의 2023년도 기준 보건소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임산부 14,633명 중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임산부는 9,617명으로 수혜율은 65.7%로 높지 않은 상

황임.

□ 시·도별 사업 수혜율을 보면, 세종(90.5%), 충남(80.9%)을 제외한 시·도는 49.8%~78.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 직접방문이 주 서비스인 본 사업 특성상 수혜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수혜율 >

시·도	보건소 등록 임산부(명)	수혜 인원(명)	수혜율(%)	비고
서울	2,308	1,545	66.9	강남구,강북구,서초구, 은평구
부산	1,595	1,045	65.5	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	231	163	70.6	북구
울산	1,835	1,083	59.0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284	257	90.5	
경기	1,646	819	49.8	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군포시
강원	119	75	63.0	속초시
충북	192	102	53.1	청주시 상당
충남	472	382	80.9	공주시, 금산군, 아산시
전북	189	138	73.0	김제시
전남	1,197	753	62.9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담양군, 순천시,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장성군
경북	1,888	1,176	62.3	구미시, 문경시, 성주군, 포항북구, 포항남구, 안동시, 영덕군, 영천시, 청도군, 울진군
경남	2,608	2,025	77.6	창원시(창원,마산,진해),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창녕군, 합천군
제주	69	54	78.3	서귀포시 서부
계	**14,633**	**9,617**	**65.7**	

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보건소 등록 전체 임산부가 아니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임산부 전체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사업수행 방식이 출산가정 직접방문이라는 점에서 수혜율 제고의 어려움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으나,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임산부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밀착 상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업무 몰입도, 역량이 중요함에 따라 고용형태, 역량강화 교육 등[121] 타 사업과 차별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정책수혜자인 출산가정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행률 개선과 함께 해당 사업의 수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혜율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수혜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121) (고용형태) 일반직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정규 및 장기 고용
(역량강화 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5종 이상), 사례회의(연 5회)

마)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자 선정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산전·산후 건강관리 강화의 내내역사업인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은 임신, 출산 및 보육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산부인과 등 분야별 전문의 및 산전·산후 우울증 전문가 등에 의한 온라인 및 전화(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포털로서 홈페이지 명칭은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임.

< 임신 · 출산 · 육아 종합정보제공 주요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임신·출산·육아 사이트 운영	임신·출산·육아 종합상담 운영
수행 방법	○ **아이사랑 사이트 운영** - **임신·출산·육아콘텐츠 개발 및 제휴** · 콘텐츠 자문위원회 운영 · 콘텐츠 전문가 감수 · 카드뉴스 제작 · 정보제공, 이북서비스 - **여성결혼이민자콘텐츠 개발 및 제휴** · 다국어 콘텐츠개발(번역·감수) - **장애인콘텐츠 제휴** - **아이사랑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평가** - **사업담당자 직무교육** ○ **아이사랑사이트 홍보** - **이벤트** · 정기이벤트, 행복스토리 - **모니터요원 운영** - **홍보매체 운영**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토리채널 - **사이트 홍보 웹배너 제작·배부**	○ **임신·출산·육아 종합상담** - **상담분야:** 임신·출산·육아 - **상담방법:** 온라인, 전화, 대면(화상) - **상담인력:** 분야별 전문의,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아동발달전문가, 심리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상담운영 자문단 운영** - **상담이용자 만족도 평가** · 온라인, 전화, 대면(화상) ○ **상담인력 회의 및 교육** - **온라인 상담위원 회의** - **상담사례공유 회의** - **수퍼비전 회의** - **상담사 직무교육** ○ **온오프라인상담 홍보** - **홍보이벤트** - **홍보물(배너, 리플렛) 제작·배포**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동 사업은 국가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경상적 성격의 재원을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122],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자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선정하여 2023회계연도에는 4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한편, 2005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2023년까지 매년 예외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음.

< 인구보건복지협회 개요 >

○ 개요: 「모자보건법」 제16조[123]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
○ 연혁: 1961년 출범한 (사)대한가족계획협회가 전신으로 1986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음.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5년 현재 명칭으로 다시 변경됨.
○ 주요 업무
- 인구변화대응사업,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가족보건의원 운영

□ 그 사유를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1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 특수법인)으로, 다년간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안전성과 전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124]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노인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조 7,310억 1,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7,339억 4,600만원이며, 이 중 4조 7,11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9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731,012	4,731,012	4,733,946	4,711,837	799	12,920
일반회계	3,897,342	3,897,342	3,898,726	3,890,293	21	8,4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7,209	637,209	637,209	632,763	144	4,302
국민건강증진기금	196,461	196,461	196,461	187,231	634	167
응급의료기금	—	—	1,550	1,550	—	—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액은 3조 8,973억 4,200만원, 예산현액은 3조 8,987억 2,600만원으로 이 중 3조 8,902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4억 5,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897,342	3,897,342	3,898,726	3,890,293	21	8,451
고령친화산업육성	3,022	3,022	3,022	3,022	-	-
노인천만시대대비고령친화서비스연구개발	5,147	5,147	5,147	5,147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	114	114	-	-
공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	-	-	55	55	-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4,240	4,240	4,250	4,046	-	204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8,162	8,162	8,162	7,656	-	506
노인보호전문기관	11,919	11,919	11,919	11,638	-	281
노인단체 지원	79,468	79,468	84,302	84,182	-	1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540,016	1,540,016	1,536,316	1,536,316	14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44,640	2,244,640	2,244,640	2,237,327	-	7,313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484	484	-	-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7	87	109	108	-	1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57	157	185	177	7	2
장사시설 설치(이월)	-	-	21	21	-	-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총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372억 900만원으로 이 중 6,327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3억 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37,209	637,209	637,209	632,763	144	4,3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01,981	501,981	501,981	498,029	144	3,808
장사시설설치	51,949	51,949	51,949	51,772	-	177
노인요양시설 확충	54,765	54,765	54,765	54,448	-	317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514	28,514	28,514	28,514	-	-

4)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노인건강관리 등 총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은 1,964억 6,100만원으로, 이 중 1,872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96,461	196,461	196,461	187,231	634	167
치매관리체계 구축	189,753	189,753	189,753	180,853	316	155
노인건강관리	6,708	6,708	6,708	6,378	318	12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응급의료기금 사업은 이월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5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응급의료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	-	1,550	1,550	-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월)	-	-	1,550	1,550	-	-

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2022회계연도까지 '응급의료기금'로 편성되었고, 2023회계연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

5) 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노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37억원을 전용하는 등 총 48억 7,3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4,873 △3,708	
일반회계	소 계	4,865 △3,700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10	유공자 표창,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추진 등
	노인단체 지원	4,834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4,815)
			노인의날기념행사 장수지팡이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19)
			국내여비 부족(3)으로 국외업무여비 조정(△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700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	통합돌봄추진단 이관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4	통합돌봄추진단 이관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8 △8	
	장사시설설치	8 △8	국외 출장 예산 부족

6)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 지연으로 '노인건강관리' 사업에서 3억 1,8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서 7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799	
일반회계	소 계	165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3.12.1.~'24.5.3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44	한파홍보물 계약기간 미도래('23.11.27.~'24.2.25.)
국민건강증진기금	소 계	634	
	치매관리체계 구축	316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3.3.9.~'24.5.31.)
	노인건강관리	31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원 및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3.7.20.~'24.1.31.)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긴급돌봄 한시사업 2억 300만원 불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할린한인 신규입국자 입국지연으로 특별생계비 등 5억 600만원 불용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129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2,920	
일반회계	소계	8,452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04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긴급돌봄 한시사업의 불용(203) 등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50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신규입국자 귀국일정 지연에 따른 특별생계비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281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노인단체 지원	121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4	집행잔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7,313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집행잔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	집행잔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4,3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808	일반수용비·관리용역비 등 집행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잔액
	장사시설설치	177	집행잔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317	집행잔액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계	167	
	치매관리체계 구축	155	집행잔액
	노인건강관리	12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고령친화산업육성(2142-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0억 2,200만원으로 30억 2,200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하였음(실집행 26억 3,100만원). 2024년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음.

< 2023회계연도 고령친화산업육성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022	3,022	-	-	3,022	3,022 (2,631)	-	-
·고령친화산업 정책기반 강화	676	676	-	-	676	676 (661)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280	280	-	-	280	280 (269)	-	-
·사용성평가 시스템 운영	720	720	-	-	720	720 (720)	-	-
·국내외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 활성화	326	326	-	-	326	326 (311)	-	-
·친고령 연구산업 전문인력 양성	600	600	-	-	600	600 (552)	-	-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420	420	-	-	420	420 (119)	-	-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5. 18. 제정)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125]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2006.12.28. 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편성되었고 2023회계연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회계연도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 집행내역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근거규정	집행내역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 고령친화산업 정책기반 강화: 676백만원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520백만원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통계분석: 92백만원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개발: 20백만원 - 소비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24백만원 - 고령친화산업 연구 통합관리 지원: 20백만원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표시)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280백만원 -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지정(4회): 50백만원 - 사후관리·표준개발 등(우수제품표준 3건): 120백만원 -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 110백만원 (고령친화우수제품 상설 전시·체험관)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 사용성평가 시스템 운영: 720백만원 -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5개소): 500백만원 - 사용성평가지표개발, 기술컨설팅: 50백만원 - DB구축 및 임상성능검사 기술지원 등: 170백만원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국내외 수요기반 확충 및 시장활성화: 326백만원 - 이동형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49백만원 - 유통상담회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113백만원 - 박람회 참가 및 컨설팅 지원: 164백만원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 친고령연구·산업 전문인력 양성: 600백만원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지원: 600백만원
	○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420백만원 교부, 119백만원 실집행 ※ 2024 사업이관(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재편성 필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재편성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내역사업은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응급상황 대응, 정서·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선도적인 스마트돌봄 모형 개발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3개년 사업으로 2022년부터 편성되었으나, 사업 일정 지연으로 보조사업기관(광주광역시 서구)에서 2022회계연도 0원, 2023회계연도 1억 1,900만원(28.3%)이 실집행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사업추진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음.

<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내역사업 편성·집행현황(2022~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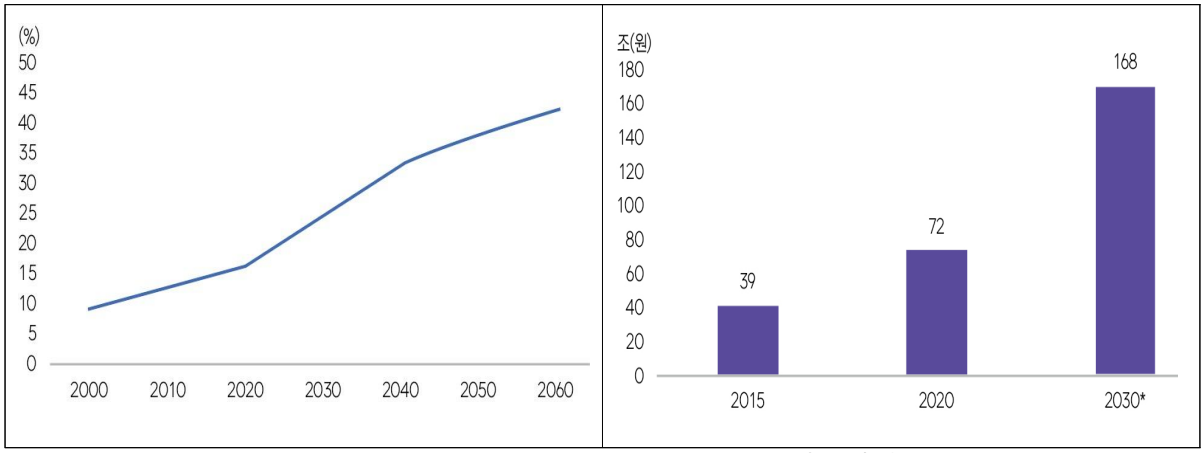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1차년도(2022)	2차년도(2023)	3차년도(2024)
추진단계	모델 개발 시범사업 수행	사업 운영·관리	사업종료·종합평가
주요내용	• 스마트케어정보센터 개설 • 참여기관 선정·계약체결 • 대상자선정·기기배포	• 관제센터 운영 • 시스템 간 연계운영 • 건강DB·서비스플랫폼 등 구축·운영	•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 품질관리 운영
예산 (보조율 70%)	560	420	420
실집행(연말기준) (%)	0 (0.0)	119 (28.3)	—
이월액(보조기관)	560	301	—
사업기간	2022.11. ~ 2023.10.	2023.11. ~ 2024.6.	2024.7.. ~ 2024.12.

자료 : 보건복지부

□ 둘째,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시장규모는 2025년 1조 217억달러로 성장하고(「Elderly Care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ARC Inc., 2020」), 국내시장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한민국 고령화 추이와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



자료: 통계청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 예산이 2024년부터 미반영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126)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 대응이나 기술 발굴에도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육성 세부사업의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재편성될 필요가 있음.**

12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이유(2006. 12. 28.)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특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의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표준개발, 사용성평가시스템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프로그램 중단으로 그동안의 성과와도 단절될 가능성도 높음.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 지원 성과(2018～2023) >

(단위 : 개, 백만원, 건,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기업	10	11	9	20	20	20
지원금액	229	260	160	600	600	520
매출(판매)*	45,655	61,958	67,617	79,334	98,188	집계중
제품·서비스개발	10	11	9	20	20	18
특허출원 및 인증(국내)	4	1	-	15	31	17
특허출원 및 인증(해외)	-	3	1	3	8	1
디자인출원(국내)	-	1	-	2	4	2
우수제품 지정	56	71	98	81	79	76
우수제품 표준(누적)	2(31)	2(33)	2(35)	3(38)	3(41)	- (41)
사용성평가 지표개발	-	-	18	21	39	39**
비학위과정 이수	-	-	98	141	137	122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이수	36	30	36	23	-	-

* 자료 : 보건복지부
* 매출(판매) = 고령친화우수제품 판매실적(2018～)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판매실적(2021～)
** 2022년 개발된 사용성평가 지표(39건)에 대한 위해도 추가 및 고도화 추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3개에서 5개로 추가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사용성평가 기반 마련 및 사용성평가 지원)의 예산 지원중단으로 사용성평가 참여기관이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고, 사용성평가비용의 민간부담이 30%에서 100%로 증가하는 등 우수제품 품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임.

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2132-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은 강제징용으로 고통 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81억 6,200만원으로 이 중 76억 5,600만원을 집행(실집행 67억 700만원)하고, 5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8,162	8,162	-	-	8,162	7,656 (6,707)	-	506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정착비지원	6,726	6,726	-	-	6,726	6,220 (5,499)	-	506
- 기타보전금(310-04)	5,824	5,824	-	-	5,824	5,328	-	506
- 민간경상보조(320-01)	902	902	-	-	902	902 (181)	-	-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지원	1,436	1,436	-	-	1,436	1,436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36	1,436	-	-	1,436	1,436 (1,208)	-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2.24.) 장기화로 항공편이 중단되어 귀국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3년 영주귀국 대상자(270명)가 연내에 모두 입국하지 못하여 항공료, 집기·비품비 등 불용이 발생하였음[127].

12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선정 및 정착비 지급절차(자료 : 보건복지부)

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 강화 필요

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에 따라 법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정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대상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을 규정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의 개정으로 법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 주요 변경사항 >

현행법률	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 현재에도 신청인원이 지원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신규입국자 동반가족 뿐만 아니라, 기존입국자의 동반가족이 직계비속 1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됨.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수요조사 현황(2021～2024) >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지원인원	350명	350명	270명	270명
신청인원	1,079명	685명	506명	452명

* 선정기준 : ①신규입국자 우선 ②기존입국자 동반가족 ③생년월일 기준 고령순
*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할린한인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할 것임. 2013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 물가는 43% 상승했음에도, 특별생계비(월 7만 5,000원), 임대보증금(1,770만원) 등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는 실정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단가 추이(2013～2023) >

(단위: 천원, 명)

회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특별생계비(월)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항공료 (신규입국자)	895	895	895	895	500	500	500	500	450	450	450
집기·비품비 (신규입국자)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임대보증금 (신규입국자, 2인1가구)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자료 : 보건복지부

□ 둘째, <u>신규입국자에 대한 항공료, 집기·비품비를 보조사업기관에서 연례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u>

□ 6월에 완료되는 수요조사와 10월부터 시작되는 영주귀국 일정이 늦어져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128]. 2023년에도 9억 200만원이 대한적십자사에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억 8,100만원에 불과함(실집행률 20.1%).

< 2023년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 추진계획 >

구 분	일 정	내 용
사전준비	1월	○ 사업계획 수립
	2월	○ 사업 설명회(외교부)
	3~6월	**○ 신청자 접수 및 임대주택 수요조사**
	7월	○ 대상자 선정(외교부)
	8월	○ 대상자 통보, 영주귀국 확정자 대상 설명회(사할린)
영주귀국	**9월**	**○ 입국 준비(항공권 구매, 임대주택 배정 등)**
	10월	**○ 영주귀국(지역별)**
사후관리	11월	○ 건강검진 실시
	10~12월	○ 지원캠프 운영
	익년 1월	○ 사업보고
	연중	○ 영주귀국자 관리, 확인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처리, 사망자의 국립망향의동산 안치 신청 등

자료: 대한적십자사(2023.1.)

128)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 예산의 이월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내 관계기관 의견조회, 임대주택 배정, 입국 및 임대주택 입주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2024. 7. 17.)[129] 하여 신청접수 기한을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하였으므로 2025년부터는 대상자를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12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 7. 17.]

3) 노인단체 지원(2133-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단체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사회참여를 위한 대한노인회운영지원 사업,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노인정책수립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예산액 794억 6,800만원, 48억 3,400만원 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3억 200만원으로 841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노인단체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79,468	79,468	-	4,834	84,302	84,182 (78,221)	-	121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810	810	-	-	810	810	-	-
· 대한노인회운영지원	3,401	3,401	-	-	3,401	3,401	-	-
· 경로당 광영지원센터 운영지원	2,350	2,350	-	-	2,350	2,350	-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1,508	71,508	-	4,815	76,323	76,323 (70,362)	-	-
· 노인정책수립 지원	1,399	1,399	-	19	1,418	1,298	-	121

나)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예산 중 치매예방사업 전액조정(△) 문제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예산 중 2023년도에 신규편성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원을 전액 조정하여 청사리모델링 공사(시설비) 예산부족분에 충당한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대한노인회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노인 관련 행사 주관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와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 2023년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예산액 34억 100만원 중 33억 4,139만원이 집행되고 5,9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내역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예산액	조 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401,000	—	3,401,000	3,341,389	59,611
경상비	소 계	1,588,547	219,200	1,807,747	1,748,698	59,049
	인건비	948,664	△67,400	881,264	829,975	51,289
	운영비(청사리모델링 조정증[5.10.])	639,883	286,600	926,483	918,723	7,760
	- (시설비)	(330,091)	(294,600)	(624,691)	(620,470)	(4,221)
사업비	소 계	1,812,453	△219,200	1,593,253	1,592,697	556
	1. 노인의 날 기념행사(9.27.)	75,000	7,700	82,700	82,700	0
	2. 노인생활소식지(회당 138,000부)	87,120	△2,900	84,220	84,180	40
	3. 시니어포럼(5회)	50,000	△4,800	45,200	45,183	17
	4. 1·3 세대공감 콘서트(4회)	10,000	—	10,000	9,959	41
	5. 치매예방사업(청사리모델링 조정감[5.10.])	200,000	△200,000	—	—	0
	6. 임직원 직무, 법정교육(270명)	37,400	△11,940	25,460	25,407	53
	7. 노인대학통합프로그램 개발(3,000권)	130,000	△7,260	122,740	122,733	7
	8. 전국노인건강축제(2,900명/10.24.~25.)	256,000	—	256,000	256,000	0
	9. 전국게이트볼대회(1,479명/5.12.)	40,000	—	40,000	40,000	0
	10. 전국파크골프대회(2,000명/9.12.~13.)	100,000	—	100,000	100,000	0
	11. 해외지부 노인복지사업(10개)	100,000	—	100,000	99,739	261
	11. 경로당중앙지원본부운영	468,256	—	468,256	468,126	130
	12. 혜인중앙연수원 운영(67회, 8,449명)	258,677	—	258,677	258,670	7

자료: 보건복지부

□ 첫째, 대한노인회는 옥상 및 외부 등 누수관련 방수공사 및 실내외 인테리어(사무실·교육장 등)를 이유로 역삼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10월 31일 계약하여 12월 6일 준공하였음.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재원 부족으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원을 전액조정한 바 있음.

< 2023년도 대한노인회 역삼청사 리모델링 예산조정 관련 >

일 자	일 정	비 고
4.28.	2023년도 대한노인회 사업계획서 제출	◦ 치매예방사업(2억원) - 기초조사용역비, 유인물 홍보비, 행사 홍보비
5.10.	2023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사업 예산 변경 요청	◦ 치매예방사업: 2억원 감 ◦ 운영비(시설비): 2억원 증
	2023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사업 예산변경 승인 통보	
10.16.	대한노인회 역삼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획 수립	◦ 운영비(시설비) 2억 9,100만원 - (지상3층~5층) 사무실 - (지상2층) 교육장 - (지상1층) 로비·사무실·주차장 - (지하1층) 교육장·기계실·창고
10.31.	대한노인회 역삼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약	◦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
12. 6.	대한노인회 역삼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	

자료: 보건복지부

□ 치매환자 증가 등 치매예방의 긴요성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2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청사 공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액을 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추정치매환자 추이(2022～2070) >

(단위: 천명, %)

회계연도	2022	2023	2024	2030	2040	2050	2060	2070
65세 이상 인구	9,010	9,462	10,008	13,056	17,245	19,004	18,682	17,677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	935	985	1,053	1,419	2,263	3,149	3,397	3,339
유병률(%)	10.4%	10.4%	10.5%	10.9%	13.1%	16.6%	18.2%	18.9%

자료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 둘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2023년 11월 9일에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130]으로 48억 1,500만원이 전용되어 전액 교부되었으나,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실집행액 기준으로 전용액보다 많은 59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내역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68,396	68,396	-	4,041	72,437	67,145	-	5,292
2023	71,508	71,508	-	4,815	76,323	70,362	-	5,961

□ <u>전용금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u>

130) 지원단가 인상내역: 냉방비(월) 11만 5,000원 ⇒7월 12만 5,000원(+9%) ⇒ 8월 22만 5,000원 (+80%)
난방비(월) 37만원 ⇒ 40만원(+8%)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 1조 5,400억 1,600만원, 이·전용(△) 37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363억 1,600만원으로 1조 5,362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1,400만원 이월,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단체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540,016	1,540,016	-	△3,700	1,536,316	1,536,278 (1,488,798)	14	2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10,308	1,510,308	-	△3,700	1,506,608	1,506,593 (1,459,303)	-	1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	21,251	21,251	-	-	21,251	21,251 (21,060)	-	-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8,326	8,326	-	-	8,326	8,326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	131	131	-	-	131	109	14	8

나)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 지양 및 공익활동형 일자리 지급단가 인상, 사업기간 연장 필요

근로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지급단가 인상, 사업기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예산 반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내역사업은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구분되고,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인 선도모델을 포함하고, 민간형은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 중임.

<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내용 >

(단위: 천개, 만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931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30 (3시간, 10일)**	**월 27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만65세 이상 (일부60세)	80	**60 (3시간, 20일)**	**월 71.2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만60세 이상	5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만60세 이상	4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청소·경비 등)		88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안전·전기·조선업 등)		55	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참여형 자원봉사		노인 자원봉사단에 봉사활동 지원비 지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유도	만60세 이상	48	봉사활동 지원비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도에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60만 8,000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만개 등 총 93만 1,00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첫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 충당 등을 위해 37억원이 전용(△)되었는바, 동사업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사업의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향이 보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세부사업 집행현황(2020～2023)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이월	불용
	본예산	추경(A)							
2020	1,201,501	1,329,649	△30,000	1,299,649	1,299,565 (1,151,750)	97.7	100.0	-	84
2021	1,315,156	1,330,679	-	1,330,679	1,330,633 (1,284,907)	100.0	100.0	-	46
2022	1,442,195	1,442,195	△4,041	1,438,154	1,438,070 (1,410,722)	99.7	100.0	-	84
2023	1,540,016	1,540,016	△3,700	1,536,316	1,536,278 (1,488,798)	99.8	100.0	14	23

자료: 보건복지부

□ <u>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대기수요(2023년도 11만명)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전용재원으로서의 역할은 지양하고 동사업의 목적과 자체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u>

<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별 대기수요 >

(단위: 명)

구분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합계
일자리(A)	716,331	75,012	4,980	42,803	83,290	46,570	968,986
지원자(B)	788,910	106,965	4,980	49,493	83,290	46,570	1,080,208
대기자(B-A)	72,579	31,953	-	6,690	-	-	111,222

주: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및 시니어 인턴십, 취업알선형은 기업에서 채용·선발하여 대기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연도별 노인일자리 실적 추이를 보면, 2018년 513,000개에서 2022년 846,000개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목표 및 실적(2018~2022) >

(단위: 개)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목 표	513,000	640.000	740,000	821,136	846,000
실 적	543,926	684,177	769,605	836,172	881,535
공익활동형(2004년~)	405,134	504,206	554,101	610,656	626,391
사회서비스형(2019년~)	—	23,548	45,764	63,058	75,012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2022년~)	—	—	—	—	4,980
시장형사업단(2004년~)	54,585	66,972	68,729	40,539	42,803
취업알선형(2004년~)	20,067	27,718	53,439	70,334	83,290
시니어인턴십(2011년~)	5,686	7,349	15,547	34,134	46,570
고령자친화기업(2011년~)	1,468	1,344	1,315	1,999	2,489
기업연계형(2017~2019년)	4,593	5,673	—	—	—

자료: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 한편, **빈곤노인의 소득보전 측면을 고려할 때,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단가인상과 사업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음.** 2024년을 보더라도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단가는 시간당 9,66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아울러, 현재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사업기간이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여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

□ 그 외 참고사항으로서, **2023년 10월 31일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생산품 판매채널 다양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5,019억 8,100만원으로, 이 중 4,980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38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01,981	501,981	-	-	501,981	498,029 (470,868)	144	3,80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97,354	497,354	-	-	497,354	493,911 (466,752)	-	3,443
· 중앙노인돌봄지원 기관 운영지원	2,954	2,954	-	-	2,954	2,954 (2,952)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1,673	1,673	-	-	1,673	1,164	144	365

나) 서비스 수행 필요인력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처우개선 필요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의 근로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특성상 필수적인 교통비·통신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역사업의 주된 내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필수인력인 서비스관리자(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973억 5,400만원 중 4,939억 1,100만원이 교부되어, 4,667억 5,2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 참고로, 서비스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의 업무(일 8시간 근무)를, 생활지원사는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업무(일 5시간 근무)를 수행하며, 평균 16명의 서비스 대상자 당 생활지원사 1명,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 당 서비스관리자 1명이 배정되고 있음.

< 2023년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 현황 >

(기준: 2023. 12. 31.)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제외)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기본급	-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2,090,000원 - (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2,190,000원 - (경력 4년 이상) 2,300,000원	- 1,254,450원
정규직 전환여부	-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사업안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가급적 수행기관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 노력	
평균연령	- 42.3세	- 55.3세
인력현황	- 3,010명 (생활지원사 11.2명당 1명)	- 33,846명 (취약 독거노인 16.3명당 1명)
배정기준	- 생활지원사 16명당 1명	- 사업대상 16명당 1명

자료 : 보건복지부

□ 첫째,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하게 되는 바,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생활지원사의 경우 31개월인 반면, 서비스관리자의 경우 21개월에 불과함. 또한 이직률을 보면, 생활지원사의 경우 8.3%인 반면, 서비스관리자는 21.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서비스관리자의 처우 등 근로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2023년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 근로 현황 >

(기준: 2023. 12. 31.)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평균 근속기간	21개월	31개월
이직률(%)	21.2%	8.3%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수적이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2023년도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현황 >

(기준: 2023. 12. 31.)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교통비	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10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통신비	4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기타 별도지원 (처우개선비·특별수당· 종사자수당·활동지원비·직급수당)	7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6) 장사시설설치(2140-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사시설설치 사업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재해대책비,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사제도 운영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519억 4,900만원으로, 이 중 517억 7,200만원이 교부되어 389억 1,0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1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사시설설치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1,949	51,949	-	-	51,949	51,772 (38,910)	-	177
· 공설 장사시설 설치	48,649	48,649	-	△490	48,159	48,010 (35,589)	-	149
· 재해대책비	-	-	-	490	490	490 (113)	-	-
·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3,120	3,120	-	-	3,120	3,120 (3,056)	-	-
· 장사제도 운영	180	180	-	-	180	152	-	28

나)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조치 필요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혐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주된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81억 5,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55억 8,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3.9%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집행현황(2019～2023)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	불용
2019	40,810	31	-	40,841	40,841	33,729 (82.6%)	-	-
2020	42,037	179	-	42,216	42,216	31,921 (75.6%)	-	-
2021	52,533	-	-	52,533	52,533	20,955 (39.9%)	-	-
2022	36,561	-	-	36,561	36,561	24,618 (67.3%)	-	-
2023	48,649	△490	-	48,159	48,010	35,589 (73.9%)	-	-

□ 실집행이 부진한 것은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와 토목·건축사업 영향 평가, 토지보상 등 사전 필요 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보임.

< 2023년도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지연현황 및 사유 >

(단위 : %)

지자체	사업명	실집행률(%)	사유
안산시	봉안당 신증축	11	잔여분묘 이전
창녕군	봉안당 증축	31	예산확보 시점 지연
태백시	봉안당 신축	0	설계비 예산(시비) 미편성
정선군	화장시설증축 및 화장로 신설	0	주민반대
평택시	봉안당 신증축	0	실시설계 지연
고흥군	자연장지 조성 및 봉안당 신축	0	실시설계 용역 지연
영월군	봉안당 신축	10	실시설계 용역 지연
양구군	봉안당 신축	20	실시설계 용역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영광군	자연장지 조성 및 봉안당 신축	20	실시 계획 인가 지연
진주시	화장시설 신축, 화장로신설	20	설계변경
군산시	봉안당 신축	40	설계변경 및 암반제거 및 집중호우,태풍
춘천시	봉안당 신축	40	터파기인입공사 지연
부안군	자연장지 조성	0	교통영향평가 지연
김해시	자연장지 조성	10	환경영향평가 지연
인제군	자연장지 조성	30	환경부 고시에 의거 생태 1급지로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하지만, 지연사유 중 주민반대 외에,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적 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131], 초고령사회[132]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장사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혐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지방비 확보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1) '우리나라의 연도별 총 사망자 수는 지난 1983년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한 이래 2020년 30만 4,9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2021년에도 31만 7,774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잠정 집계', '만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33.4%였으나, 불과 10년 만에 절반 수준(48.6%)으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2022.5.17.)

132)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경우

7)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양로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치매전담실 확충, 화재안전창문 설치 및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547억 6,500만원으로, 이 중 544억 4,800만원이 교부되어 213억 1,7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3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54,765	54,765	-	-	54,765	54,448 (21,317)	-	317
·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40,091	40,091	-	-	40,091	40.091 (9,384)	-	-
·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155	155	-	-	155	155	-	-
· 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 확충	605	605	-	-	605	605 (591)	-	-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712	4,712	-	-	4,712	4,712 (3,810)	-	-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9,199	9,199	-	-	9,199	8,882 (7,374)	-	317
· 직접수행	3	3	-	-	3	3	-	-

나)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축단가 현실화 필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건축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내역사업은 양로시설·요양시설을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구성됨.

□ 첫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주된 내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 400억 9,1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93억 8,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3.4%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실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실집행률은 30% 이하로 대단히 부진한 상황임.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실집행 현황(2020～2023)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6,811	6,113 (36.4)	18,628	10,459 (56.1)	11,429	4,317	(37.8)	12,893	6,165	(47.8)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69,196	3,555 (5.1)	47,831	5,649 (11.8)	49,803	7,389	(14.8)	27,198	3,219	(11.8)
합 계	86,007	9,668 (11.2)	66,459	16,108 (24.2)	61,232	11,706	(19.1)	40,091	9,384	(23.4)

□ 실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 설계, 착공 등 완공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이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u>사업대상기관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선정된 기관의 사업 진행</u>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3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유형) 실집행률 및 사유>

(단위: %)

연번	지자체	사업유형	실집행률(%)	사유
1	서초구	노인요양시설	-	행정절차 지연
2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	2024년 실시설계용역 예정
3	대전시	노인요양시설	-	집행시기 미도래
4	안산시	노인요양시설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미완료
5	양주시	노인요양시설	-	부지매입비 부담으로 사업포기
6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100	-
7	파주시	주야간보호	-	사전절차 이행
8	동해시	노인요양시설	5.9	건축시기 미도래
9	강릉시	노인요양시설	100	-
10	당진시	노인요양시설	-	공사지연(설계)
11	당진시	주야간보호	-	공사지연(설계)
12	부여군	주야간보호	-	부지선정 지연
13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4.2	설계용역 진행 중
14	신안군	주야간보호	-	사전행정절차 진행중
15	신안군	노인요양시설	-	사전행정절차 진행중
16	신안군	노인요양시설	-	사전행정절차 진행중
17	창원시	주야간보호	-	사전행정절차 진행중

주: 2023년 273개 사업대상 중 신축유형 17개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 둘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의 건축단가(198만원/㎡)가 조달청 노유자 시설의 3개년(2020~2022년) 평균 건축단가(258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하여 2022년 여주시·용산구, 2023년 양주시 등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므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단가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음.**

□ 셋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내역사업과 ‘장기요양기관 환

기시설 설치’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각각 82.2%, 80.2%로 저조한 바, 실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2023회계연도 장기요양기관 CCTV 및 환기시설 설치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편성내역	교부내역	실집행내역(실집행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133]	◦ 4,712백만원 (6,580대)	◦ 4,712백만원	◦ 3,810백만원(82.2%) (5,409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134]	◦ 9,199백만원 (5,988개소)	◦ 8,882백만원	◦ 7,374백만원(80.2%) (4,704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2022.4.27.),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21.12.21.)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실집행률이 낮았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재가급여만 제공, 수급자·보조자 전원동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등)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기관 수요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임.

133)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2022.4.27.) 요양병원·시설내 감염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에 대한 설비기준 마련 및 재정지원 확대 추진

1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ICT기기(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응급상황 신속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285억 1,400만원으로 285억 1,4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239억 9,6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28,514	28,514	-	28,514	28,514 (23,996)	-	-
· 자치단체경상보조	27,281	27,281	-	27,281	27,281 (22,763)	-	-
· 기타	1,233	1,233	-	1,233	1,233	-	-

나)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출장·교통비 미지급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ICT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 수행인력으로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시·도의 사업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응급관리요원은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는 거점응급관리요원 1~2명,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농·어촌 여건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이 배정되고 있음.

□ 응급관리요원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외(평일 야간, 휴일)에 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근무, 당직 등의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2023년도 응급관리요원 현황 >

(기준: 2023. 12. 31.)

구 분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
자격요건 (권고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노인·장애인 관련 대인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가산점 부여	

구 분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
근무시간	- 주 5일, 일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로시간 유연적용 (예시: 7시~16시 / 13시~22시)	
기본급(월)	2023년: 2,010,580원 (최저임금) 2024년: 근속수당 도입 (1년 미만) 2,060,740원 (최저임금) (1년 이상 3년 미만) 2,096,340원 (최저임금+35,600원) (3년 이상 6년 미만) 2,131,940원 (최저임금+71,200원) (6년 이상) 2,167,540원 (최저임금+106,800원)	
정규직 전환여부	-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평균근속기간	- 23개월	- 31개월
평균연령	- 43세	- 44세
이직률	- 19%	- 23%
인력현황	- 22명	- 649명
배정기준	- 1명(9곳):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제주·충북 - 2명(7곳):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세종 포함)	- 지역센터를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인력배분 * 도시, 농·어촌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적절하게 대상자 배정

자료: 보건복지부

□ 댁내장비 설치목표(30만가구), 응급관리요원 충원목표(696명) 등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노인 227,328가구, 장애인 11,478가구 등 총 238,806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 중이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671명의 응급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

< 2023년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설치 가구 및 응급관리요원 현황 >

(기준: 2023. 12. 31. / 단위: 가구, %)

대 상 가 구 (목표 300,000가구 대비)			응급관리요원 (목표 696명 대비)
	노인	장애인	
238,806 (79.6%)	227,328	11,478	671명 (96.4%)

자료: 보건복지부

□ 응급관리요원 등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지 않아, 일선에서는 업무가 중으로 안전확인 및 대상자 확대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 늘어나는 댁내장비와 서비스량에 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확충이 늦어져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대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2020～2023) >

(단위: 대, 건, 명)

연 도	댁내장비 (A)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B)	1인당 장비 운영 대수 (A/B)
			응급 호출·통화	화재감지	활동미감지 대응		
2020	90,857	88,732	8,929	4,973	74,830	590	154
2021	129,851	119,342	15,630	5,915	97,797	590	220
2022	173,842	163,268	17,950	6,265	139,053	651	267
2023	238,806	155,373	17,954	6,836	130,583	671	356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대수를 보면 356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9개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보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요원을 확대충원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지역별 응급관리요원·댁내장비 현황 >

(기준: 2023. 12. 31. / 단위: 가구)

시도	응급관리요원	장비 운영 대수	인당 장비 운영 대수
계 / 평균	671	238,806	356
서울특별시	26	1,815	70
부산광역시	30	15,485	516
대구광역시	27	12,445	461
인천광역시	14	3,430	245
광주광역시	16	7,276	455
대전광역시	22	8,509	387
울산광역시	12	5,329	444
세종특별자치시	5	1,342	268
경기도	88	30,413	346
강원특별자치도	69	21,493	311
충청북도	34	12,358	363
충청남도	58	18,728	323
전라북도	58	22,938	395
전라남도	94	33,439	356
경상북도	55	21,076	383
경상남도	53	19,355	365
제주특별자치도	10	3,375	338

자료: 보건복지부

음영 표시: 평균 운영 대수(356대) 초과 지역

□ 다만, 확대 충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135], 기간제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야간·휴일 응급상황 대응, 출장·교통비 지원 미비[136] 등의 문제로 이직율이 높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2022~2023년 신규 응급관리요원 채용현황 >

(단위: 명, %)

연 도	배정인원	채용인원	이직	이직률	근무 중	미채용
2022	106	162	62	38.3	100	6
2023	106	177	77	43.5	100	6

자료: 보건복지부

135) 「2023년_독거노인_장애인_응급안전안심서비스_사업안내」 지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인건비 : 월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로 구성
  -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을 지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 포함)
  -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136)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 가능
  - 시·도, 시·군·구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혹한기·혹서기 발생 대응 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9) 치매관리체계 구축(2234-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치매 예방·조기발견, 치매환자 가족 지원,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1,897억 5,300만원으로 1,892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치매관리체계 구축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89,753	189,753	-	189,753	189,283 (182,311)	316	155
·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4,053	4,053	-	4,053	4,032 (3,748)	-	21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1,521	1,521	-	1,521	1,521 (1,489)	-	-
· 광역치매센터 운영	7,634	7,634	-	7,634	7,634 (7,630)	-	-
· 치매안심센터 운영	163,585	163,585	-	163,585	163,585 (158,707)	-	-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1,061	1,061	-	1,061	1,061 (736)	-	-
·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지급	3,561	3,561	-	3,561	3,561 (3,537)	-	-
·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1,500	1,500	-	1,500	1,401 (127)	-	99
· 공립요양병원 기술 지원 및 성과관리	336	336	-	336	336 (304)	-	-
·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3,950	3,950	-	3,950	3,941 (3,885)	-	9
· 치매공공후견지원	947	947	-	947	947 (884)	-	-
· 정책연구사업	1,605	1,605	-	1,605	1,264	316	25

나)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 노력과 함께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치매전문병동 설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집행관리와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연례적 조정·불용을 감안하여, 정확한 인건비·사업비 소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인건비(편성기준 4,752명) 1,384억 6,300만원, 사업비(256개소) 251억 2,200만원 등 총 1,635억 8,500만원이 교부되어 1,587억 7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에는 보건소 직영 및 민간위탁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의 보건소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센터장 231명, 일반직 공무원 1,285명 등은 동사업 인건비 대상에서 제외됨. 이를 고려하면, 실제 지원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영되었으므로, 인건비를 이에 맞게 계상할 필요가 있음[137].

137) 2023회계연도 A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방직공무원인 보건소 공무원에게 인건비 일부(보수·수당 등)를 보조하고 있음.

<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 인력 구성 현황 >

(기준: 2023. 12. 31. / 단위: 개소, 명, %)

구분	합계	센터장	공무원				비공무원			
			합계	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기타	합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기타
전체	4,967	256	2,937	1,294	1,639	4	1,774	1,257	369	148
보건소 직영 (231)	4,375	231	2,928	1,285	1,639	4	1,216	881	307	28
민간위탁 (25)	592	25	9	9	0	0	558	376	62	120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편성시와는 달리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향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간 조정이 있는 경우 관련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2022년도 446억 7,100만원(개소당 1억 7,450만원)에서 2023년도 251억 2,200만원(개소당 9,813만원)으로 감액(△43.8%)되었는데 경도인지장애진단[138]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을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5.1%인 90개소에 불과한데, 근무 여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필요도 있음.

138) **「치매관리법」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 현황 >

(기준: 2023.12.31. / 단위: 개소, %)

구 분	총 계	충 족	미충족
계	256	90(35.1%)	166(64.9%)
도시	103	43(41.7%)	60(58.3%)
도농복합	66	31(47.0%)	35(53.0%)
농촌	87	16(18.4%)	71(81.6%)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u>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u>

□ 치매관리구축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및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139]에 따라, 전문적인 치매환자 치료 시설·장비를 보강해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사업임.

□ 2023년 기준, 전국 76개 공립요양병원 중 62개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되었고, 그 중 13개는 30병상 이상 등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139)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 현황(2019～2023) >

(단위: 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립요양병원	79	79	77	77	76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누적)	44 (55.7%)	51 (64.6%)	54 (70.1%)	59 (76.6%)	62 (81.6%)
치매안심병원 지정 완료(누적)	4 (5.1%)	4 (5.1%)	7 (9.1%)	10 (13.0%)	16 (21.1%)

주 1. (2021) 서산·홍성 공립요양병원의 지방의료원 편입, (2023) 울릉군공립요양병원 폐업
2. 2023년 12월 기준, 치매안심병원 16개 지정(15개 공립, 1개 민간)
자료: 보건복지부

□ 해당사업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140]과 낮은 지원단가[141] 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있음.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계획액·집행액 추이(2020～2023) >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계획액		7,230	5,220	4,650	1,500
	편성내역	7개소 설계비·시설비·장비비	5개소 설계비·시설비·장비비	5개소 설계비·시설비·장비비	2개소 설계비·시설비·장비비
집행액(최종)		7,230	5,220	4,526	1,401
	실집행액	610	1,012	481	127

자료: 보건복지부

□ 치매전문병동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개에 이르는 만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140)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절차: ①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대상 병원 선정, ②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③ 국고보고금 신청 및 교부, 시설 설계/장비 계획 심의 신청 및 승인, ④공사입찰, 시공사 선정, 공사착공 등 사업시행, ⑤ 사업완료 및 실적보고

141) 2023년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증축) 지원단가: 3,753천원/㎡
2022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 4,332천원/㎡ 이상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지역별 치매안심병원 지정현황 >

(기준: 2023. 12. 31. / 단위 : 개소)

지 역	치매안심병원	지 역	치매안심병원	지 역	치매안심병원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1	전라북도	2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남도	1
대구광역시	–	경기도	–	경상북도	4
인천광역시	2	강원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광주광역시	1	충청북도	1	제주특별자치도	1
대전광역시	1	충청남도	2	합 계	16

* 자료: 보건복지부
* 음영 표시: 치매안심병원 미지정 지역

10) 노인건강관리(2235-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치매·실명·전립성질환·무릎관절 등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홍보·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실명예방관리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67억 800만원으로 63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3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노인건강관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708	6,708	-	6,708	6,378	318	12
· 치매관리사업	972	972	-	972	969	-	3
· 노인실명예방관리	1,863	1,863	-	1,863	1,863	-	-
· 전립선질환예방관리	180	180	-	180	180	-	-
·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3,293	3,293	-	3,293	3,293	-	-
· 노인걷기앱개발 및 노인체조법 등 연구	400	400	-	400	73	318	9

나) 노인건강관리사업 수요를 고려한 지원 확대 필요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신청건수를 지원건수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인실명예방관리 및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사업은 만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신청하면 사업수행기관(한국실명예방재단,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립선질환예방관리 사업은 만 55세 이상 저소득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및 진료상담, 예방교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배뇨장애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노인건강관리 사업 현황 >

구 분	노인실명예방관리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전립선질환예방관리
사업내용	저소득 노인 등에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
사업추진절차	(수행기관)한국실명예방재단	(수행기관)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자) 보건소에 수술지원 신청→ (보건소) 재단에 신청서 송부→ (재단) 대상자 확정 통보→ (의료기관) 대상자 수술 및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		
지원 세부내용 (인당 지원 금액 포함)	백내장·녹내장, 망막증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일부 제외)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 취약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전립선 질환 조기 검진, 진료상담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 지원 • 돌봄서비스 제공자 대상 도뇨관 유치, 자가도뇨 등 배뇨장애 관리 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55세 이상 남성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배뇨장애자 *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사전 접수로 진행

자료: 보건복지부

□ <u>노인실명예방수술비 신청건수를 지원건수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지원을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u>

□ 지난 5년간 노인실명예방수술비와 노인무릎수술비 지원건수는 신청건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노인실명예방수술비는 8월, 노인무릎수술비는 5월에 지원이 마감된 바 있음.

< 노인건강관리 내역사업별 신청 및 지원 현황(2019~2023) >

(단위: 안, 명, 건, %)

지원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지원 (%)	신청	지원 (%)	신청	지원 (%)	신청	지원 (%)	신청	지원 (%)
노인실명예방 수술비 지원	10,355	8,321 (80.4)	8,738	8,334 (95.4)	8,040	7,564 (94.1)	9,175	7,295 (79.5)	8,214	7,020 (85.5)
노인무릎 수술비 지원	4,394	2,549 (58.0)	3,292	2,537 (77.1)	3,536	2,484 (70.2)	3,469	2,491 (71.8)	2,834	2,192 (77.3)
전립선질환 예방검진	-	3,509	-	618	-	974	-	558	-	1,651

* 주: 전립선질환 예방검진: 도서벽지에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사 방문 후 당일 검진하는 절차로, 신청자 수와 지원자 수가 같음(2020년부터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방문이 어려워 지원이 감소함).

* 자료 : 보건복지부

□ 2024회계연도 계획액에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예산(40억 8,200만원)은 전년(32억 9,300만원) 대비 24% 증액되었으나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20억 5,400만원)은 2022년 계획액(20억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원건수를 고려할 때, 노인실명예방수술비 지원 예산도 적정수준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노인건강관리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2019~2024)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노인실명예방 수술비 지원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1,863	1,863	2,054
노인무릎 수술비 지원	2,992	2,992	2,992	2,992	2,992	2,992	2,992	2,992	3,293	3,293	4,082
전립선질환 예방검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80	180	182
요실금 치료 지원	—	—	—	—	—	—	—	—	—	—	2,000

자료: 보건복지부

8. 장애인정책국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조 5,446억 8,800만원이고,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5,45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4조 5,429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변경)				
계	4,544,688	4,544,688	4,545,277	4,542,922	1,042	1,853
일반회계	4,532,630	4,532,630	4,533,219	4,531,015	1,026	1,7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34	4,834	4,834	4,683	16	135
국민건강증진기금	7,224	7,224	7,224	7,224	-	-

주 1) 기금의 경우 예산액은 계획액,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2)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장애수당(기초) 사업 등 총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조 5,326억 3,000만원, 예산현액은 4조 5,332억 1,900만원으로, 이 중 4조 5,310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7억 1,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계)	4,532,630	4,532,630	4,533,219	4,531,015	1,026	1,718
장애수당(기초)	142,943	142,943	142,943	142,943	0	0
장애수당(차상위등)	72,054	72,054	73,274	73,274	0	0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42,684	42,684	42,684	42,681	0	3
장애인실태조사	1,242	1,242	1,242	1,125	0	117
장애인연금	878,663	878,663	877,439	877,418	0	21
장애인의료비지원	28,624	28,624	28,624	28,624	0	0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885	4,885	4,876	4,854	0	22
장애인지원관리	1,770	1,770	1,899	1,777	115	7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지원	108	108	108	105	0	3
장애인활동지원	1,991,879	1,991,879	1,991,828	1,991,809	0	19
장애아동가족지원	175,706	175,706	175,706	175,706	0	0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성장애인지원	2,513	2,513	2,513	2,513	0	0
발달장애인지원	256,886	256,886	257,063	255,563	732	769
장애인계인예산제운영	580	580	580	353	176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6,415	26,415	26,400	26,316	0	8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634,600	634,600	634,600	634,434	0	166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0,390	10,390	10,390	10,930	0	0
장애인단체	7,660	7,660	7,660	7,660	0	0
장애인일자리지원	207,299	207,299	207,299	207,299	0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7,325	7,325	7,325	7,275	0	5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621	5,621	5,618	5,567	0	51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0,021	10,021	10,053	9,705	0	348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26	626	901	894	0	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9,551	19,551	19,551	19,551	0	0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	2,405	2,405	2,405	2,405	0	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79	79	90	86	3	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101	101	148	148	0	0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개의 세부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과 예산현액 모두 48억 3,400만원으로 동일하고, 이 중 46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억 3,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계)	4,834	4,834	4,834	4,683	16	135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4,834	4,834	4,834	4,683	16	135

4)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재활병원건립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과 계획현액은 72억 2,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건강증진기금	7,224	7,224	7,224	7,224	-	-
재활병원건립	4,000	4,000	4,000	4,000	-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684	684	684	684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사업	2,540	2,540	2,540	2,540	-	-

5)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용은 없었으며,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에 1억원을 전용하는 등 총 2억 1,800만원을 전용(증)하였고, 1억 8,5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212 △185		
일반회계	장애인연금	0	-34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전달체계 개편 등을 위한 주요 선진사례 연구 관련 국외 출장 목적으로 국외여비 전용(△4백만원)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적으로 일반연구비 전용(△30백만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5	-14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상용임금 부족으로 사업간 전용(△9백만원) - 전시체험장 가상체험 VR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여비(△5백만원)에서 일반용역비(+5백만원)로 전용
	장애인지원관리	100	0	- 장애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송출 비용 부족분 전용(+36백만원) - 공무 국외 출장 경비 부족분 전용(+19백만원) -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비 부족분 전용(+45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0	-51	- 장애인의 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장애인지원관리 운영비로 △36백만원 자체 전용, 장애인정책 등 주요 선진사례 조사 등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장애인지원관리 국외여비로 △15백만원 자체전용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212 △18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0	-15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연구용역 집행잔액을 장애인의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장애인지원관리 정책연구사업으로 전용(△15백만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79	-70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집 발간 및 통계컨퍼런스 운영을 위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일반연구비(△70백만원)'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일반수용비(+70백만원)'로 전용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상용임금(+9백만원)'으로 전용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8	-1	- 각 국.관 기본경비 절감분 자체전용(국내여비 28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백만원)

6)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연구용역 종료일 미도래로 7억 3,2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총 10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042	
일반회계	장애인지원관리	115	- 연구용역 2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미도래로 이월
	발달장애인 지원	732	- 연구용역 2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미도래로 이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76	-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3	- 기본경비 절감분 이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6	-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7억 6,900만원이 발생하는 등 16개 세부사업에서 총 18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853	
일반회계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3	- 연구용역 집행잔액
	장애인실태조사	117	-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장애인연금	21	- 회의자료 인쇄, 금융거래 통보비용 등 집행잔액
	장애인보조기기지원	22	-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장애인지원관리	7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	- 집행잔액
	장애인활동지원	19	-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지원	769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집행잔액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51	- 연구용역 낙찰차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4	- 집행잔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66	- 집행잔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0	-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1	- 집행잔액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348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집행잔액, 전달체계 보건소 등 인력 미채용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7	- 상용SW 구매계약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35	-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8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8,624	28,624	-	-	-	28,624	28,624	-	-
장애인의료비 지원	28,324	28,324	-	-	-	28,324	28,324	-	-
위탁수수료	300	300	-	-	-	300	300	-	-

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누적 미지급금 해소 필요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누적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적정 예산 편성, 별도 내역 신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142]인 장애인 등에게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및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의료비 상세 지원내용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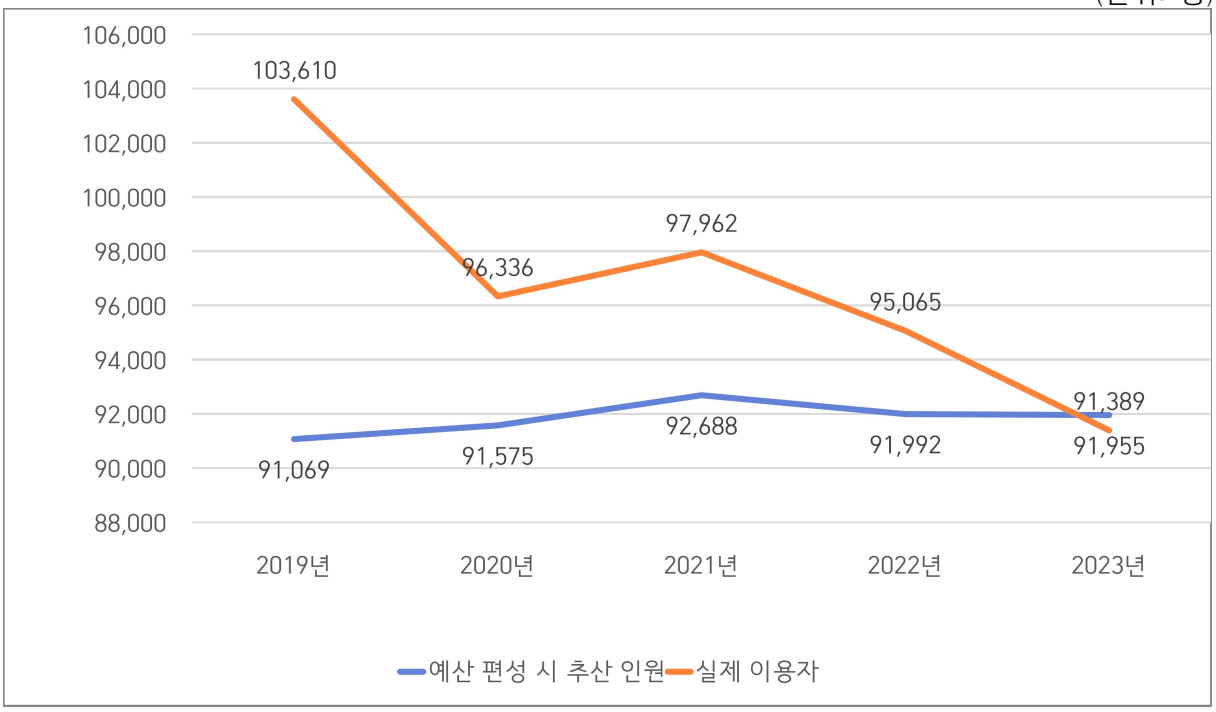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14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난 5년간 예산 편성 시 기준 추산 인원과 실제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 추산 인원의 경우 2021년까지는 소폭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 이용자의 경우도 2019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추산 인원 및 이용자 현황 >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실제 이용자의 전반적인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의료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며, 2024년부터는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임.[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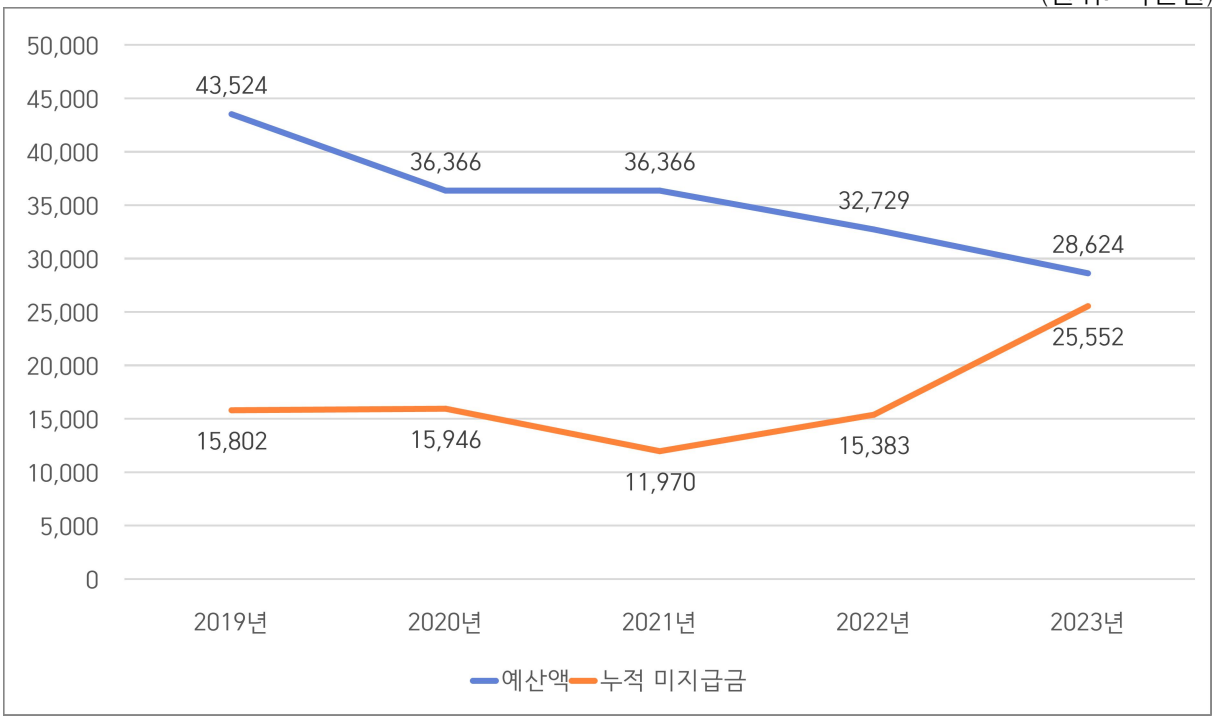
□ 그런데 이 같은 동 사업의 이용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143)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은 358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

- 특히 2023년 기준, 누적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약 66% 증가한 255억 5,2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액 286억 2,400만원 대비 약 89%에 달하는 금액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액 및 미지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019년 143억원, 2020년 42억원을 내역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50억원을 전용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예산 대비 의료비 수요 차이로 인해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144)]

14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과소 편성에 따른 의료비 지급 지연 해소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료비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매년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편성하고,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별도 내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1532-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하는 한편,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와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8억 8,500만원이며, 900만원을 감액 전용한 예산현액 48억 7,600만원 중 48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885	0	0	△9	0	4,876	4,854	0	22
보조기기교부	1,788	0	0	0	0	1,788	1,788	0	0
중앙보조기기센터	1,042	0	0	△9	0	1,033	1,011	0	22
지역보조기기센터	2,055	0	0	0	0	2,055	2,055	0	0

나) 연례적으로 예산을 조정(일반수용비 등→일반용역비)하여 집행하는 관행 개선 필요

일반용역비 수요가 있음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수용비 등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한 후, 집행하는 관행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내용과 취지에 반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업 집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의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기반 지원, 보조기기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보조기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성능 평가 등이 있음.

- 2023회계연도의 경우, 10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900만원을 감액한 예산현액 10억 3,300만원 중 10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은 전용 2회, 세목조정 10회 등 총 12번의 예산조정이 있었음.

- 이 중에서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인 일반용역비로의 예산조정은 총 7회(전용 1회, 세목조정 6회)가 있었는데, 예산조정 금액은 9,900만원으로 동 사업 전체 예산조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 예산조정 현황 >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조정 (23.1.1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1532-304)	210-01	9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1532-304)	210-15
조정 (23.1.13.)		210-01	4		210-02
조정 (23.1.13.)		210-01	33		210-14
조정 (23.1.13.)		210-07	5		210-14
조정 (23.1.13.)		210-09	5		210-14
조정 (23.1.13.)		210-11	40		210-14
전용 (23.9.4.)		220-01	5		210-14
조정 (23.9.11.)		210-01	6		210-14
조정 (23.9.11.)		210-11	5		210-14
조정 (23.11.13.)		210-01	7		210-09
조정 (23.11.13.)		210-11	3		210-09
전용 (23.11.24.)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1532-304)	110-03	9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 (1542-307)	110-03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그런데 지난 5년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의 일반용역비 예산을 살펴보면, 동 사업에서는 별도로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수용비 등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과 같은 예산조정을 통해 적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1,900백원을 관행적으로 집행하여 왔음.[145]

< 최근 5년 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편성 예산	0	0	0	0	0
예산 현액	11	88	119	106	99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전용이란, 사업 간 유사성, 사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세목조정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을 의미함.[146]

- 전용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금액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일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147]

- 세목조정은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와 같이 「예산 및 기금운

145) 이와 관련하여 국립재활원에서는 2020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용역비 편성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2024년부터 일반용역비 예산(8,2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의견 제시

146) 예를 들면,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

14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 가능하지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세목조정처럼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의 일반용역비 집행 사례와 같이 연례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집행은 비록 그 절차적 측면에서는 법령 위반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미 국회의 심사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매년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내용과 취지에 벗어나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이며, 이러한 예산조정 관행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의 예산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함.**

다) 비목별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비목의 구분은 예산 집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편성 단계부터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편성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례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공통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품질 평가, 원가계산, 실태점검”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집행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 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집행 내역	- VR제작 비용(11)	**-보조기기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비 (11)** **-교부사업만족도 조사(8)** -VR웹버전 업그레이드(3) -품질안전 점검 시험(사후관리) 수수료 및 사용성/개발/작업환경 평가 수수료 등(43) **-보조기기 품질실태점검 수행(10)** -보조기기전문 온라인 교육 개발(10)	**-보조기기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용역(12)**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개선 지원사업(품질평가, 사용성평가, 개발평가, 작업환경 평가) 일반용역(33)** -품질기준개발 시험수수료, 품질점검 사후관리 및 실태점검 시험 수수료 등(24) **-보조기기 전문 교육 온라인 제작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기기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용역(13)** -보조기기 전문인력 교육 촬영(6) -슬기로운 보조기기생활 영상 제작(4) -보조기기세미나 촬영 라이브 송출(5) -레하홈케어 박람회 부스 운영(7) **-보조기기 품질기준마련(20)**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15)** -슬기로운보조기기생활 영상 제작 용역(4) **-교부사업 등록제품 사후관리 및 원가계산 용역(19)** **-보조기기 품질시험 용역(3)**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체험장 가상체험 VR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10) **-3D프린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보조기기센터 e-리플렛 제작(3)	**교부사업 표준교육 자료 제작(16)** -슬기로운 보조기기생활 영상 제작(7)	**-교부사업 등록제품 품질시험(11)** **-교부사업 등록제품 원가분석(12)** -등록제 홍보영상 제작(6) **-3D프린팅 보조기기 성능 비교 평가(6)**	**보조기기 성능 평가(15)** **-하반기 등록제품 원가계산(2)** **-장애인용 카시트 품질 및 성능 시험 추가 시험 용역(26)**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고, 일반연구비는 학술, 기술, 평가,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中

일반용역비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일반연구비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 연구 관련 제반 용역

□ 이러한 비목의 구분은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방식 등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간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였어야 할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품질 평가, 원가계산, 실태점검” 등을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 조정 후, 집행하여 왔음.148)

□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목별 취지에 부합하는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임.

148) 이와 관련하여 국립재활원은 만족도 조사, 품질평가, 원가계산 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단순업무만을 대행하여 집행한 것으로, 실제 과업 내용이 아닌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명칭이 오해를 야기하였으며, 향후 적합하고 명확한 사업명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 제시

3)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지원관리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법률구조,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세계장애인부산대회 개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7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 및 이·전용액 9,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8억 9,900만원 중 17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770	1,770	30	99	-	1,899	1,777	115	7
장애인법률구조	448	448	-	-	-	448	448	-	-
연구개발비	203	203	30	45	-	278	159	115	4
기타운영비	169	169	-	54	-	223	220	-	3
세계장애인부산대회	950	950	-	-	-	950	950	-	-

나) 예산조정을 통해 연도 말 상당한 규모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전액 다음연도 이월 부적절

연도 말(11월28일)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한 정책연구비 집행은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당해연도에 이루어졌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적절함.

□ 장애인지원관리 세부사업 중 연구개발비 내역사업은 장애인정책을 발굴·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수행해 온 연구과제 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3건의 일반연구비 집행이 있었고, 정책연구비 집행은 2023년 1건이 있었으며, 총 12건의 과제 중 다음연도 이월은 3건 발생하였음.

< 2021년 ~ 2023년 연구개발비 계약 현황 >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주관기관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이월 여부
2021 (일반 연구비)	지자체 장애인정책 성과 평가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4.9	21.05.13.~21.11.30.	해당없음
	장애인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21.05.07.~21.09.30.	해당없음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0~2021년 계획)모니터링	한국장애인개발원	18.3	21.05.10.~21.11.30.	해당없음
	장애인대상감염병대응방안 마련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9.5	21.04.16.~21.11.30.	해당없음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추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60	21.03.12.~21.11.30.	해당없음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주관기관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이월 여부
2022 (일반 연구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99	22.03.10.~22.11.30.	해당없음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 지원시범사업모니터링및자립지원모형마련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99	22.03.16.~23.03.31.	이월
	장애인복지법제15조개정후속조치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50	22.03.16.~22.10.14.	해당없음
2023 (일반 연구비)	2023년도 지자체 장애인정책 성과평가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30	23.08.03.~23.11.30.	해당없음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지표개발 연구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58	23.07.31.~24.05.27.	이월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 설치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연구	국립중앙 의료원	70	23.3.29.~23.12.15.	해당없음
2023 (정책 연구비)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86.5**	**23.11.28.~24.09.30.**	**이월**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2023년 연구과제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한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당초 정책연구비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동 내역사업 내 일반연구비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총 9,000만원을 마련한 후, 연도 말(2023. 11. 28.)에 이르러 8,650만원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3년 연구개발비 예산조정 현황 >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23.11.22.)	장애인연금 (1531-305)	210-01	30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2
전용 ('23.11.2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36-300)	260-01	15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2
세목조정 ('23.11.15.)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1	45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2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정책연구용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이고, 자세한 답변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음.

「연도 말(11.28.) 9천만원을 전용 및 세목조정하여 계획에 없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 **동 정책연구용역은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되었지만,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의 법안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등 쟁점으로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그 후 2023년 중순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여·야 대표 의원실 간에 21대 국회 임기종료('24.5월) 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 **동 연구는 이처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법안의 배경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하였음.**

□ 연도 말 갑작스럽게 예산조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계약하였다는 사

실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관련 연구계획이 없었지만, 반드시 당해연도에 착수되어야 할 만한 시급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동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연구기획 취지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등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도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 및 성과 등에 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다음 보고는 2031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149)]

② 당시 장애인권리보장 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다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2023.11.23.)되어 사실상 2023년에는 법안 의결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동 정책연구계약은 연도 말 전용을 통해 당해연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어야 할 시급하고 적절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연도 말 예산조정을 통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9)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장애인권리위원회 제02-03차 최종견해

다) 예산조정을 통한 사전계획 없는 국외출장을 지양하고, 필요한 적정 규모 국외여비 편성 필요

사전계획이 없었던 국외출장 경비를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한 후, 이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필요한 합리적인 규모의 국외여비 편성이 필요함.

□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지원하기 위한 기타운영비 내역사업은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및 국내·외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5년간 편성된 동 내역사업의 국외여비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상 국외출장 집행이 불가능한 1백만원을 소액 편성하여 왔으며, 예산조정을 통해 적정 경비를 마련한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예외 없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왔음.

< 2019 ~ 2023년 기타운영비 사업 중 국외여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	1	1	1	1
예산현액	1	1	1	1	19
실집행액	0	0	0	0	18
불용액	1	1	1	1	1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동 내역사업에서의 국외여비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금액 및 집행실적을 고려하면, 실수요에 기반하지도, 성의 있는 검토도 하지 않은 관행적 편성이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2023년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국외여비를 각각 400백만원, 1,4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 경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150]

< 2023년 기타운영비 내역사업 국외여비 예산조정 현황 >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23.8.24.)	장애인연금 (1531-305)	220-02	4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20-02
전용 ('23.8.24.)	장애인활동지원 (1531-304)	220-02	14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20-02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국외출장 목적은 "장애인정책 관련 주요 선진사례 조사"로 주요 내용은 영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자료 수집 일정이 대부분임.

- 보건복지부는 이미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1535-310)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정책연구비가 4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세부사업 「장애인활동지원」(1535-304)에서 일반연구비 9,000만원과 국외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150) 출장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소속 3인

□ 이 같이 동 내역사업에서의 국외출장 목적과 유사한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세부사업(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예산을 조정하여 계획에 없던 국외여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규모의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4) 장애아동가족지원(15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등을 도모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시각 또는 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 등과 같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75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아동가족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75,706	175,706	-	-	-	175,706	175,706	-	-
발달재활서비스	127,226	127,226	-	-	-	127,226	127,226	-	-
언어발달지원	651	651	-	-	-	651	651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7,829	47,829	-	-	-	47,829	47,829	-	-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집행 필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경상보조 비목이 아닌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등 총 10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인력 중 국가자격증을 교부받은 언어재활사가 제공하는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정 등 전반적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2023년말 기준으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등 9개 영역에서 총 14,503명의 영역별 교과목 이수자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자격을 인정받아 각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영역별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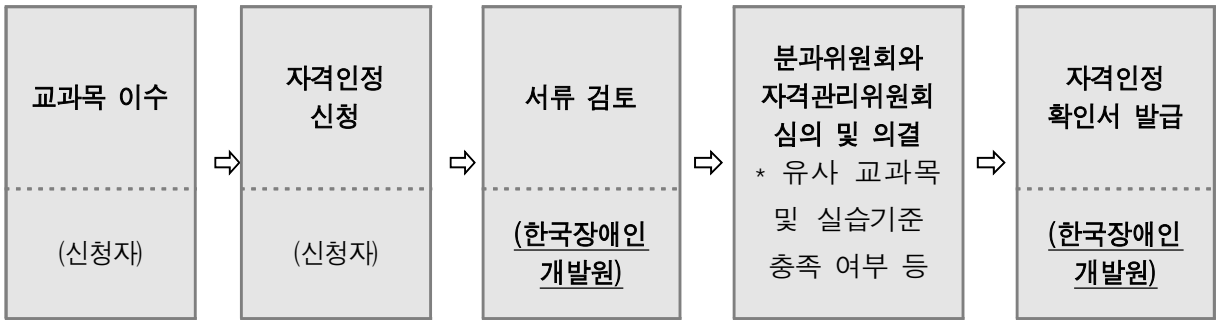
제공인력 유형		서비스 영역	인원(명) * 23.12.31 기준
언어재활사		언어재활	·1급: 4,793 ·2급: 14,457
영역별 교과목 이수자 * 영역별로 자격을 인정함	청능재활	청능재활	284
	미술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4,001
	음악재활	음악재활	1,611
	행동발달재활	행동발달재활	633
	놀이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	2,795
	재활심리	재활심리	592
	심리운동	심리운동	892
	감각발달재활	감각발달재활	3,146
	운동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549
	교과목 이수자 합계		14,503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재구성

□ 동 사업은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재구성

□ 이와 관련한 법령상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으로, 동 고시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자격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관련 법령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8호]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여 왔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였음.

- 세부적으로 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인건비 7,600만원, 자격관리 심사수당, 회의비 등 운영비 4,100만원, 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300만원을 집행함.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비목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비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51]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의 경우,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5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

15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15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153]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③ 보건복지부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 차 기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하면,

---

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동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로, 국가 즉,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비목(320-01)이 아닌 민간위탁사업 비목(320-02)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154]

- 아울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민간위탁사업 비목과 관련하여 ① 사업자 선정원칙, ② 위탁경비의 산정, ③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④ 위탁계약기간 결정 및 성과평가, ⑤ 제재조치 명문화 등 기타 조치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155] 이러한 내용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154)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 비목(320-02)으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라는 입장

15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사업자 선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위탁경비는 개별 법령에 따르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며, ③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④ 위탁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향후 계약 시 활용하도록 하며, ⑤ 그 외에도 수탁기관의 성실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 등 제재조치를 명문화하고,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월 17만원~25만원)

□ **(서비스 영역)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행동발달,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심리운동 등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제공기관에서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제공기관)** 민간(사설)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2,615개소('23년 말 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88,415	94,204	99,857	127,032	138,288
이용인원	78,782	84,411	91,044	97,469	-

* 국비(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에 한함

5) 발달장애인지원(1535-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부모·가족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568억 8,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7,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570억 6,300만원 중 2,555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7억 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56,886	256,886	177	-	-	257,063	255,563	732	769
공공후견지원	3,505	3,505	-	-	-	3,277	3,277	-	-
부모가족지원	4,064	4,064	-	-	-	4,064	4,064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7,592	7,592	-	-	-	7,820	7,820	-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4,389	4,389	-	-	-	4,389	4,389	-	-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	173,504	173,504	-	-	-	173,504	173,504	-	-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53,703	53,703	-	-	-	53,703	53,051	-	652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446	446	-	-	-	446	446	-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460	460	-	-	-	460	460	-	-
긴급돌봄 시범사업	5,548	5,548	-	-	-	5,548	5,548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1,500	1,500	-	-	-	1,500	1,500	-	-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925	925	-	-	-	925	925	-	-
사업운영비	1,250	1,250	177	-	-	1,427	579	732	116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년 사업 실시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각각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용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호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201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기본형, 확장형) 월 132시간 또는 월 176시간이 부여되어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의 음악·미술활동, 박람회·전시회 관람, 취미·여가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함.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6시간이 부여되어 지역사회 내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학교 밖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2023년도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개요 >

<table>
<tr><th>구 분</th><th>주간활동서비스</th><th>방과후활동서비스</th></tr>
<tr><td>지원대상</td><td>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td><td>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td></tr>
<tr><td>서비스 단가</td><td>기준단가 : 15,570원
<table><tr><th>구성</th><th>1인집중</th><th>2인그룹</th><th>3인그룹</th></tr><tr><td>적용 요율</td><td>150%</td><td>100%</td><td>80%</td></tr><tr><td>1인당 단가</td><td>23,350원</td><td>15,570원</td><td>12,450원</td></tr><tr><td>그룹전체</td><td>23,350원</td><td>31,140원</td><td>37,350원</td></tr></table></td><td>기준단가 : 15,570원
<table><tr><th>구성</th><th>2인그룹</th><th>3인그룹</th><th>4인그룹</th></tr><tr><td>적용 요율</td><td>100%</td><td>90%</td><td>80%</td></tr><tr><td>1인당 단가</td><td>15,570원</td><td>14,010원</td><td>12,450원</td></tr><tr><td>그룹전체</td><td>31,140원</td><td>42,030원</td><td>49,800원</td></tr></table></td></tr>
<tr><td>월 제공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여부 및 시간 표기)</td><td>기본형: 월 132시간(일 6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일 8시간)

※ 확장형은 활동지원서비스 22시간 차감</td><td>월 66시간</td></tr>
<tr><td>서비스 이용방법</td><td colspan="2">수급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를 발급
→ 수급자는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 이용
→ 매일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놓은 보조금(국비+지방비)에서 결제금액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급됨</td></tr>
<tr><td>제공 서비스 내용</td><td colspan="2">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낮 활동 내·외부 프로그램 제공(음악·미술활동, 박람회·전시회 관람, 취미·여가생활 등)</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19년 사업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여, 매년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에는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불용

액 약 357억원, 실집행률 79.4%,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에는 불용액 약 154억원, 실집행률 70.1%로 나타나 여전히 사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주간활동서비스	2019	19,103	19,103	17,823	17,823	-	17,823	8,655	-	9,168	45.3
	2020	43,417	43,417	43,417	43,417	-	43,417	24,511	-	18,906	56.4
	2021	91,304	91,304	76,319	76,319	-	76,319	42,571	-	33,748	46.6
	2022	140,786	140,786	128,295	128,295	-	128,295	82,407	-	45,888	58.5
	2023	173,504	173,504	173,504	173,504	-	173,504	137,731	-	35,773	79.4
방과후활동서비스	2019	9,169	9,169	6,146	6,146	-	6,146	931	-	5,215	10.1
	2020	33,059	23,059	19,406	19,406	-	19,406	6,093	-	13,313	18.4
	2021	44,637	44,637	35,710	35,710	-	35,710	11,357	-	24,353	25.4
	2022	47,136	47,136	41,671	41,671	-	41,671	18,616	-	23,055	39.5
	2023	53,703	53,703	53,703	53,051	-	53,051	37,642	-	15,409	70.1

주: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3.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9.부터 사업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동 내역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 같은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때마다 홍보강화, 이용자격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률 완화[156] 등 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고 보고하였음.

15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로 구성됨.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로서, 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정도 및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에 따라 월별 일정시간에 대하여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중복이용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월 급여량을 일정 시간 차감하고 있음

<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사 지적 및 부처 조치 현황 >

구분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지적 사항	•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집행 부진**	•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이용실적 개선** 필요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의 추계정확성 제고 및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부처 대응 조치	• 사업도입 초기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연령 범위 확대('21~)** - 12세 이상 → 6세 이상(초등학생까지 확대)	• **활동지원 차감제 축소** - 기본형: ('21) △40 → ('22)△22 - 확장형('21) △72 → ('22) △56	• **활동지원 차감제 폐지(기본형)·축소(확장형)**를 통해 보장강화('23.1월), 농어촌 지역 이용자의 제공기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차량이동지원 인정시간 확대(22→33시간, '23.7월),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2019~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재구성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그간 노력에도 2023년 불용액과 실집행률을 보면, 동 내역사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실수요자인 발달장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157]에도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이용자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의 불용액과 실집행률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보임.

157)

구분(단위: 천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190	195	201	207	213	217	222	226
	자폐성장애	21	23	24	26	29	31	34	38

e-나라지표. (2024). 장애인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이용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가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가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가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가율
주간활동	2,506 ('19.3.~)	4,335	73.0%	6,366	46.9%	9,211	44.7%	12,676	37.6%
방과후	2,015 ('19.9.~)	4,123	104.6%	6,241	51.4%	8,933	43.1%	11,961	33.9%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집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첫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간 보건복지부는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대응조치로 홍보 다각화 및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 2023년 발달장애인 지원 세부사업 사업운영비의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없었으며, 2019년 이후, 발주한 연구과제에도 서비스 모형 개발과 제공기관 평가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며, 홍보에 관한 연구는 없었음.

<발달장애인지원 세부사업 사업운영비 집행 내용>

2023년도 사업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17백만원) - 연구용역 관련 소위원회 및 결과평가 등 관련 외부위원 수당, 조달수수료 등 지급(4.5백만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기념품 제작비용(1.3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지침 인쇄(12.5백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인쇄비 및 운송비용(5.4백만원) - 기타 인쇄비 등
2019년 ~ 2023년 연구과제	-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내용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돌봄 서비스 모형 개발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 마련 연구 -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성과평가 도구 개발 -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 중앙및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직진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맞춤형 급여체계 연구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활성화 모형 개발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운영체계 연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품질관리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 개발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예비평가 연구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연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제공기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화 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화 연구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평일 낮시간을 주로 보내는 방법이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31.8%), '집에서 혼자 보낸다'(2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절반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58.4%)’를 이유로 응답하였다는 점[158]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의 동 내역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수용비와 일반연구비로 구성된 사업운영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 내역사업의 실수요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중·장기 홍보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보조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로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국고보조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2019년 최초 사업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부산 지역 4개 자치구와 충남 지역 2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부산 지역 5개 자치구와 충남 지역 2개 시에서 발생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15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2021.9.6.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지방비 부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	2021	2022	2023
주간 활동	-	-	-	**강원도** 속초시: 23,533	**부산광역시** 동래구: 10,050 금정구: 10,509 수영구: 6,000 사상구: 13,663 **충청남도** 아산시: 9,749 계룡시: 3,546
방과후	-	-	-	**충청남도** 아산시: 7,090	**부산광역시** 사하구 19,365 금정구 1,003 연제구 10,195 수영구 9,485 사상구 8,398 **충청남도** 천안시: 3,647 아산시: 21,377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 같은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시 포기 사례가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기 시작한 2023년(주간활동서비스 22년: 58.5%→79.4%, 방과후활동서비스 22년: 39.5%→23년: 70.1%)부터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데,[159] 동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

1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하고 있는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등이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내역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율을 재산정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사업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의 공표 또는 다른 사업에서의 불이익 제재와 같은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6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500만원을 감액 전용한 예산현액 264억 중 263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8,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6,415	26,415		△15		26,400	26,316		8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000	6,000	-	-	-	6,000	5,999	-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356	2,356	-	-	-	2,356	2,280	-	77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	1,950	1,950	-	-	-	1,950	1,950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42	242	-	-	-	242	242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458	9,458	-	△5	-	9,453	9,450	-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1,192	1,192	-	5	-	1,197	1,195	-	2
공립장애인복합 수련시설건립	4,001	4,001	-	-	-	4,001	4,001	-	-
공립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1,000	1,000	-	-	-	1,000	1,000	-	-
사업운영비	216	216	-	△15	-	201	200	-	1

나)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이월액 최소화 및 적극적인 정산 관리 필요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지원 50%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난 2년간 상당한 금액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한 수납률 저조 및 정산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각각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신축, 노후설비 개선, 장애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기준, 전국 1,5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7,35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529	249	63	52	69	80	84	28	6	319	68	89	54	69	70	92	97	40
이용자	27,352	3,013	1,209	1,329	906	918	1,198	636	154	5,464	1,447	1,714	1,643	1,560	1,321	2,463	1,806	571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기준, 전국 84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2,637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849	135	67	53	43	39	48	42	3	158	19	26	19	35	29	51	51	31
이용자	12,637	1,545	980	808	555	584	575	478	56	2,949	306	443	284	514	514	709	792	545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은 모두 국비 지원 50%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내역사업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과 집행 잔액 정산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내역사업의 지난 2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칫 연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2023년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는 보조금액의 약 35.2%(16억 2,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금액의 약 37.2%(8억 7,600만원)가 이월되었음.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시·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2022년 보조금	2022년 이월액	2023년 보조금	2023년 이월액
서 울	344	63	231	119	197	-	113	-
부산	221	-	154	-	39	-	22	-
대구	693	-	207	-	56	-	34	-
인천	680	590	389	-	90	-	64	-
광주	349	181	156	-	36	-	6	-
대 전	693	100	220	209	31	-	61	-
울 산	239	-	245	-	54	-	38	-
세 종	-	-	-	-	41	-	30	-
경 기	1,433	398	619	-	379	78	439	-
강 원	441	66	145	58	52	-	125	-
충 북	187	-	146	99	15	-	34	-
충 남	481	210	557	-	132	68	61	3
전 북	547	132	654	620	117	-	623	524
전 남	201	25	691	311	110	-	349	321
경 북	1,031	271	495	209	44	-	91	28
경 남	487	-	335	-	93	-	139	-
제 주	453	124	476	-	39	-	51	-
합계	8,480	2,159	5,720	1,626	1,527	146	2,280	876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상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건축사업 특성에 기인한 공사 설계변동, 자재 수급의 어려움, 동절

기 공사중지, 2016년 이후, 동결된 지원단가로 인한 사업추진의 곤란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행정절차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이용되지 않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미집행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 내역사업의 지난 3년간 보조금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납률 또한 저조한 데다가, 2023년의 경우는 아직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을 수납하는 기한이 길어질수록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정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지방자치단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금액 (B)	비율 (B/A)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021년	17개 시·도	866	395	471	54.3	45.7
	2022년	17개 시·도	424	263	161	38.0	62.0
	2023년	17개 시·도	426	수납 예정	수납 예정	수납 예정	수납 예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021년	17개 시·도	사업 미실시(2022년부터 실시)				
	2022년	17개 시·도	32	14	18	57.5	42.5
	2023년	17개 시·도	152	수납 예정	수납 예정	수납 예정	수납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160]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빈번한 정산금액 수정으로 전반적인 정산 집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수납 현황 통보 및 정산 요청을 매월 수행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임.

1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61]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회수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62]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잔액을 사업 종료 다음 연도 내에 반납받도록 하고 있음.[163]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의 신속한 정산 및 징수결정액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64]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해당 교부소요와 반납소요를 상계처리하는 등의 강도 높은 징수관리 개선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1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3) 보조금 교부취소액 및 집행잔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으로, 발생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으로 수납되고 있음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7)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1538-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장애인편의증진·복지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0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결산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390	10,390	-	-	-	10,390	10,390	-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0,390	10,390	-	-	-	10,390	10,390	-	-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성과지표 개발 필요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선안도 그 구성요소(정책반영도+장애인삶 만족도)를 살펴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편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도 높은 성과지표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165]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 관련 이슈를 반영한 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제도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판로확보 등 우선구매제도 관련 업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장애포괄적 재난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165)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기준, 103억 9,000만원으로, 정책연구, 편의증진, 복지진흥 등 법령에 적시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비중이 작아 명실상부한 장애인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합계 (비율)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10,390 (100.0)	3,285 (31.6)	6,475 (62.3)	630 (6.1)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성과는 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건수를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한 수치를 통해 측정하고 있어,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기관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정책연구건수: 당해연도 수행한 보고서 발행 건수

예) 2022 KODDI 연구요약집, 장애인삶 패널조사,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등 31건

- 정책활동건수: 연구수행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간담회, FGI 조사, 토론회, 자문회의 등의 각종 회의 활동 건수

예) 개인예산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FGI 결과보고(1~3), 고령장

애인의 돌봄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심층면접 실시 결과보고(1~10) 등 92건

- 정책반영건수: 그간 수행한 연구과제를 참고하여 법령 및 지침, 고시 제개정, 정부종합계획 수립, 사업안내, 매뉴얼 등 정책분야 활용건수

예) 제3차 장애인안전대책 강화 사업(「소방기본법」 제17조 개정 기초자료 활용) 등 7건

< 최근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성과 측정 결과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측정산식
정책연구 활동실적(건)	목표		95	99	103	105	105	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
	실적	연구 건수	40	35	32	31	31	
		활동 건수	50	60	70	85	92	
		반영 건수	8	7	7	8	7	
		소계	98	102	109	124	130	
	달성도(%)		103.2	103.0	105.8	118.1	123.8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의 성과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목표치 대비 123.8%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성과 측정산식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 중 결과에 대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연구 건수와 정책반영 건수는 매년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이고, 결과물 산출을 위한 과정 즉 투입요소라 할 수 있는 정책활동 건수 증가

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성과 제고를 크게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같은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지적된 바 있음.[166]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향후,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현재 방식에서 정책반영도와 정책 수혜자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 중이라 밝히고 있음.

-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관련 문항을 활용하는 것임.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방안 >

현행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	개선(안)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정책연구 활동실적	정책연구 건수 +정책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			장애인 정책지원	**정책반영도 +장애인삶 만족도**

【장애인삶 만족도 실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측정산식
장애인삶 만족도 (10점 만점)	5.02	5.32	5.38	5.59	5.61	연도별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국가승인통계)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166)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성과지표가 투입과 비용에만 의존하고 있어 최종수혜자인 장애인들의 후생 개선에 미치는 실제적인 성과가 성과지표에 들어가도록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라는 지적을 하였음.(기획재정부. (202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세종: 한국정보화진흥원.)

□ 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한 동 사업 성과지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첫째, 개선방안에 따른 성과지표의 구성요소 중 정책반영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반영 여부 판단 시 자의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성과지표 구성요소 중 정책반영 건수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임.

둘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삶 패널조사」 중 장애인삶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동 조사에서는 장애인삶 만족도를 건강, 수입, 주거환경, 학교생활, 직업, 결혼생활, 사회적 관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등 총 8개 영역의 주관적 만족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 방식에 의한 척도는 장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 학생 또는 직장인, 결혼 여부 등에 따른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인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 목적과 취지 및 다양한 업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타당도 높은 성과지표의 개발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같은 추상적 조사보다는 현실에서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8)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1542-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은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00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 증액 전용 1,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00억 5,300만원 중 9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4,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0,021	-	20	12	-	10,053	9,705	-	348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구축	8,281	-	-	-	-	8,281	8,103		178
장애인건강검진사업	469	-	-	-	-	469	468		1
장애친화 산부인과	900	-	-	-	-	900	750	-	150
장애인 건강관리	371	-	20	12	-	403	384		19

나)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가피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하고, 관련 행정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절차 제도화 필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일반연구비 7천만원을 전액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것은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나, 사전에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6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보건연구, 건강보건통계, 건강정보 DB구축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상용임금 및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과 증액 전

---

16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300만원 중 3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 건강관리	371	-	20	12	-	403	384	-	19
- 상용임금(110-03)	202	-	-	12	-	214	212	-	2
- 일반수용비 (210-01)	48	-	-	70	-	118	113	-	5
- 복리후생비 (210-12)	3	-	-	-	-	3	3	-	-
- 시험연구비 (210-13)	8	-	-	-	-	8	6	-	2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사업추진비 (240-01)	-	-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70**	**-**	**20**	**△70**	**-**	**20**	**11**	**-**	**9**
- 고용부담금 (320-09)	40	-	-	-	-	40	39	-	1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동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는 그간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한 현황분석, 기술지원 연구, 사업확대 방안 등과 같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집행되어 왔음.

그런데 2023년에는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 7,000만원을 전액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관련 연구실적이 전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21~2023년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일반연구비 사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주관기관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이월 여부 및 이월 사유
2021	2021 장애친화 산부인과 건강검진 기술 지원 및 사업관리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60	'21.5.3.~'22.3.31.	
	2021 권역별 재활의료 수요·공급 현황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1.9.2.~11.30.	
2022	'22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설치 기술지원 및 운영 모니터링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70	'22.3.25.~'23.3.21	연구잔액 이월 (14백만원)
	'22 장애친화건강검진 사업 확산 및 검진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2.8.12.~'23.1.20.	연구잔액 이월 (6백만원)
2023	일반수용비로 전액 (210-01)로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가 감액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일반수용비로 비목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실무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비목입력 착오로 인해 일반수용비로 전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3회계연도 일반연구비 전용으로 인해 연구실적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서 일반연구비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바,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 수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실무상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확인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신규 편성되었으며, 향후 본 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6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억 3,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834	4,834	-	-	-	4,834	4,683	16	135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4,834	4,834	-	-	-	4,834	4,683	16	135

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참여 장애인 증대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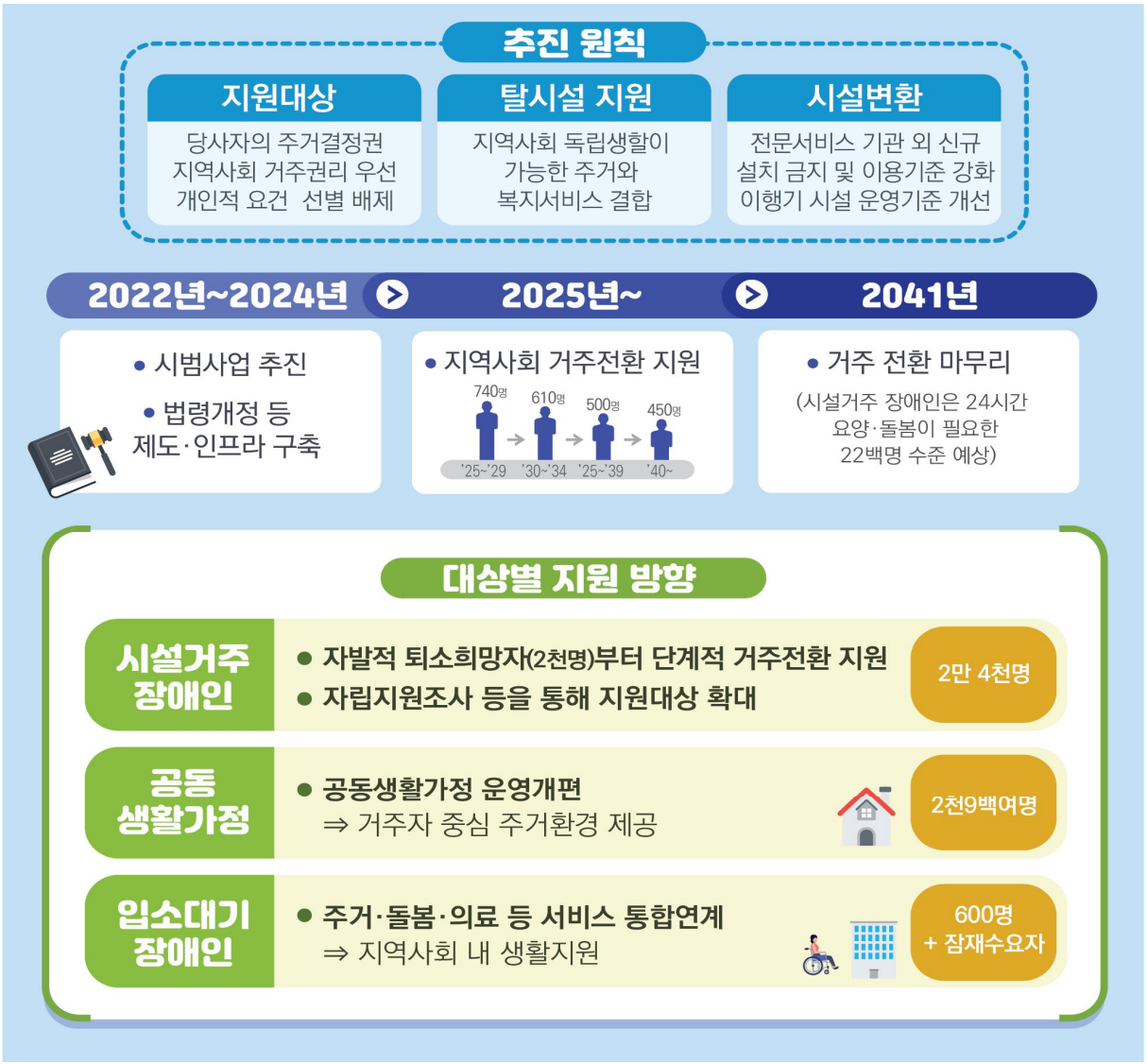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본 사업 실시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음.

-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 정책들을 포괄함.

-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에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근거하여 2025년 본사업을 시작하고 연간 740명 ~ 450명에 대한 자립지원을 하여 2041년 거주 전환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제도·인프라를 정비 중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지원 및 관련 연구를 총괄하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행·제공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체계별 구체적인 역할은 아래 표와 같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체계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중앙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범사업 운영지원 • 시범사업 운영 지침 마련, 모형 검증연구 수행 • 시범사업 자문, 수행기관 및 사업 중간 점검,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시범사업 관리·감독 및 평가 • 공무원 및 수행기관 관련자 시범사업 전문 교육
광역 및 기초단체	**• 광역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수행은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수행** – 광역단위 사업수행 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협의하여 시행 가능 (대상자 관리 등 세부 사업은 기초 단위에 위탁) – 기초단위 사업수행 시 광역은 사업추진 총괄 **• 광역자치단체(시·도)** – 광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및 총괄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 사업시행 지자체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역 실정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광역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 – 광역단위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사업홍보 및 거주시설 인식개선, 대상자 연계 – 사업시행 지자체 관외지역 시설 대상자 발굴 협조 – 주거확보 추진(LH지사 협약 등) – 사업전반 관리・감독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기초단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운영 – 지역 내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자립조사 책임 및 수행(기초, 심층 조사 등 조사원 활동) – 민관협의체 관리(자립지원위원회 관리 포함) 및 대상자 선정 – 지역내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 주거확보 추진(LH지사 협약 등) – 수행기관 관리・감독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	*** 지역별 운영 유형에 따라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 역할 분담 조정** • 거주시설 대상 정보제공 및 자립서비스 안내 • 자립조사 지원 및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지원, 개별전환 계획 수립 및 지원 • 공적서비스 및 지역자체추진 사업 연계 목록 및 방안 마련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 대상자 개별 지원 – 정보제공, 개별조사,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및 개별자립지원 등 •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을 위한 개별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립생활에 필요한 관련 교육 제공(생활, 안전, 금전 등) •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네트워크 • 사업 관련 현황, 실적, 점검 대응, 결과보고 등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동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발굴·선정 및 주거확보, 전담인력 채용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총 17개임.

□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사업 실시 이후, 지난 2년간 대체로 50% 미만 집행에 그쳤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지역 내 민원 발생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교부 및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교부 및 집행현황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2022년			2023년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
경북 경주시	215	55	25.6	102	83	81.4
광주광역시	215	61	28.4	253	109	43.1
대구광역시	215	44	20.5	388	217	55.9
부산광역시	215	159	74.0	433	324	74.8
서울특별시	215	-	-	433	-	-
인천광역시	215	214	99.5	478	225	47.1
전남 화순군	215	34	15.8	102	48	47.1
전북 전주시	215	66	30.7	253	213	84.2
제주 제주시	215	72	33.5	478	177	37.0
충남 서산시	215	50	23.3	152	81	53.3
강원 인제군	-	-	-	124	9	7.3
경기 성남시	-	-	-	253	33	13.0
경기 안산시	-	-	-	253	43	17.0
경기 의왕시	-	-	-	253	21	8.3
경남 거창군	-	-	-	124	22	17.7
전북 군산시	-	-	-	253	51	20.2
전북 익산시	-	-	-	253	58	22.9
합계	2,154	755	35.1	4,585	1,714	37.4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 같은 실집행 부진의 일차적인 이유는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됨.

- 거주시설 장애인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①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실시한 기초 및 심층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립희망 장애인을 발굴하고, ②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위원회에서 대상 장애인을 선정한 후, ③ 최종적으로는 선정된 장애인의 의사에 따르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 지난 2년간 103명의 장애인이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 산출 기준인 400명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그 원인은 자립지원위원회의 대상 장애인 선정(희망 장애인 대비 43%)과 최종 참여 의사결정(대상 장애인 대비 60%) 등과 같은 절차상 허들을 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됨.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누적
예산 산출 기준인원 장애인 수	200	200	400
자립조사 장애인	1,055	2,323	3,378
자립희망 장애인(A)*	203	207	410
자립대상 장애인(B)**	87(B/A, 43%)	86(B/A, 42%)	173(B/A, 42%)
실제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수(C)	29(C/B, 33%)	74(C/B, 86%)	103(C/B, 60%)

* 자립조사 결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지역별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립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취지는 본 사업 시작 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그 성과 및 보완점을 분석한 후, 본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같은 시범사업 단계에서의 실집행 부진은 본 사업 실시 여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본 사업 전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저조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참여율 저조 원인의 파악이 필요한 바, 사업 취지와 달리 시설 퇴소 이후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실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자립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핵심인력인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필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달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높은 퇴직률은 유사돌봄인력 대비 낮은 급여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참여 장애인을 위해 자립 전부터 개별전환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지원, 거주시설 퇴소 및 이주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자립 이후에도 주택입주,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및 부가적인 각종 행정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립지원 전담인력 주요 업무 >

구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주요업무
자립전	자립조사	- 기초 및 심층 조사 계획 수립 지원 - 조사 지원, 조사원 활동, 조사 결과 분석
	개별전환지원 계획수립	- 조사 결과 분석 결과 대상자 발굴 - 발굴된 자립희망 장애인 대상으로 개별전환 계획 수립(자립욕구, 가족상황, 건강상태, 도전적행동 등의 필요도 중심) - 활동지원 자격책정을 위한 장애서비스종합조사 등 준비 * 개별전환 계획은 위원회 심의자료 첨부로 전반적인 계획수립하고 최종 선정 후 세부계획이행 추진
	자립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발굴된 대상자에게 자립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장애인이 작성(의사 불분명한 장애인의 경우 자립의향확인서를 조사원이 작성)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자료 준비(기초,심층 자립조사 결과보고서, 개별전환 계획서, 자립서비스 신청서 및 동의서(의향확인서) 첨부) -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결과보고, 회의록 작성 등)
	사전지원 서비스 연계	- 활동지원 자격책정을 위한 서비스종합조사 시기 확인 -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신청 재산관리, 식사지원,

구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주요업무
		주간활동, 응급알림e 등 사전연계 가능한 서비스 신청 - 의사결정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공공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의 신청 고려 - 주택계약, 입주청소, 편의시설 주택개조 등
	퇴소절차	- 퇴소절차 과정 확인(지자체, 거주시설) - 거주시설 인수인계(통장 및 도장, 카드, 장애인 개인 물품, 가족 상황 및 개별정보 서류, 건강진단서, 소견서 등), 장애인 담당(거주시설, 수행기관) 대상자 관련 사항 인수인계(습관, 건강상태, 약복용, 이용병원 정보, 검진일정, 식사상태 및 지원, 가족연락, 주요 관계, 선호 활동 등) - 물품인수증
	이주 준비	- 이사업체 선정, 이주일정 등 이사 지원계획 수립(장애인, 거주시설 협조) - 장애인 선호도 또는 동행하여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물품구매리스트 작성 등 * 주거 및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인 부담 원칙
자립 후	**주택 입주**	-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	- 동료조사, 이용자 조사를 통한 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목표 설정 - 개별자립지원 계획서 작성(중장기-단기-월-주 단위 등의 목표 수립)
	정착지원	- 일상생활, 사회생활, 낮활동, 주간보호, 일자리, 건강지원, 관계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지역사회 자립 정착지원
	만족도, 모니터링 및 환류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재수립 - 사례지원회의 - 주택 환경 모니터링 - 업무일지 등의 각종 문서작성 및 보고서 제출 업무 등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동 시범사업 전달체계상 핵심적인 인적자원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고용유지는 참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168]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지난 2년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 및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88명 중 22명이 퇴직하였으며(퇴직률 25%),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8.7개월에 불과함.

168)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 용역보고서.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퇴직 현황 >

(단위: 명, %)

구분	채용	퇴직	현원	퇴직 사유	비고
강원 인제군	1	-	1	-	
경기 성남시	2	-	2	-	
경기 안산시	3	-	3	-	
경기 의왕시	2	-	2	-	
경남 거창군	2	-	2	-	
경북 경주시	2	-	2	-	
광주광역시	5	-	5	-	
대구광역시	15	5	10	개인사유 3명, 계약만료 2명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10	1	9	개인사유 1명	평균 재직기간 8.7개월
인천광역시	12	5	7	개인사유 5명	
전남 화순시	4	2	2	개인사유 2명	
전북 군산시	4	-	4	-	
전북 익산시	5	2	3	개인사유 2명	
전북 전주시	9	2	7	개인사유 2명	
제주 제주시	7	2	5	수행기관 변경 2명	
충남 서산시	5	3	2	개인사유 3명	
계	**88**	**22**	**66**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동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이러한 높은 퇴직률과 짧은 평균 재직기간의 원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돌봄인력과 비교하여 근무내용, 자격요건, 근무시간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 때문으로 판단됨.

< 유사돌봄인력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급여 수준 비교 >

구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원
근무내용	·자립조사 ·단기체험 지원 ·자립신청 접수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사회보장급여 사전 신청 ·개인별 전환(이주)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시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단, 사회복지사 2급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소지자는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 기준)	1.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특수교사, 사회복지사 1급, 변호사, 상담전문인력) ②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위의 ①호, ②호, ③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월 277만원	월 327만원	월 407만원

* 2024년 예산 인건비 단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해 이들의 급여수준을 유사돌봄인력(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및 주택 현황>

□ 대상자 자립현황

○ (전환완료) 103명

* 부산22, 대구14, 인천19, 경주5, 제주7, 전주17, 화순3, 광주7, 서산3, 군산3, 의왕1, 안산2

○ 일반 현황

- (장애유형 및 정도 현황)

* △지적 60명, △지체 15명, △뇌병변 9명, △시각 3명, △중복 15명, △자폐성 장애 1명

- (지원유형 현황)

* △자립지원형 72명, △집중지원형 31명

- (대상자별 현황)

* △거주시설 85명, △학대피해쉼터 7명, △단기거주시설 2명, △입소대기자 9명

○ 서비스 연계 현황(중복집계)

- (일자리) 41명(지적 27명, 시각 2명, 뇌병변 1명, 지체 3명, 중복 8명)

  * △직업재활시설 15명, △복지일자리 9명, △시각안마 1명, △요양원 2명, △종합복지관 2명, △시간제일자리 5명, △활동가 3명, △일반 일자리 4명

-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37명(신청 포함)

  * 발달장애인 75명 중 35명 이용 중(그 외 후견인 지원 4명, 보호자 4명, 수행기관 지원 18명, 본인관리 5명, 검토 중 9명)

  * 뇌병변·지체장애(중복) 2명 자폐장애인협회를 통해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지원 중

- (건강관리) 103명

  * △건강주치의 연계 20명(13명 예정), △지역병원 이용 47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 20명, 가정간호 1명, 검토중 2명(안산)

- (활동지원서비스) 88명

  * (미이용 15명) △미신청 11명, 자격없음 4명

□ 시범사업 주택 현황

○ (주택 현황) '22년 100호, '23년 94호 확보 및 공급

구분		'22년	'23년	비고
계		100	94	
서울	-	-		
부산	-	20	16	매입임대(36)
인천	-	20	8	매입임대(28)
대구	-	9	5	매입임대(10), 지역공사(4)
광주	-	6	12	매입임대(17), 국민임대(1)
충남	서산시	2	1	전세임대(3)
전남	화순군	2		민간전세(2)
경북	경주시	5		국민임대(5)
제주	제주시	6	21	매입임대(6), 지역공사(24)
전북	전주시	30		매입임대(29), 민간임대(1)
	군산시	-	4	국민임대(4)
	익산시			
강원	인제군			
경남	거창군			
경기	성남시		8	매입임대(8)
	안산시		18	매입임대(18)
	의왕시		1	매입임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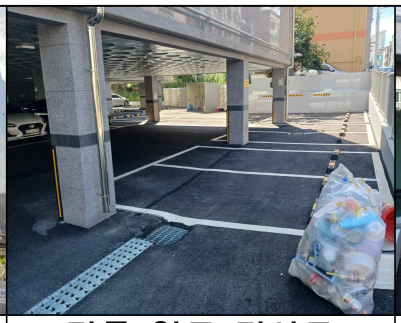
□ 시범사업 주택 사례(광주광역시)

○ **주 택 명:** 000(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48번길 0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1층 주차장, 2~5층 주거공간)
○ **임대유형:** LH 매입임대
○ **호　　수:** 총 3호(202호/서향, 203호/남서향, 210호/동향)
○ **면　　적:** 68.77㎡(구 20평형)
○ **주거비용(매입임대 유형 금액)**
- 임차보증금: 9,848,000원
- 임 차 료: 189,880원(202호), 190,530원(203호), 187,610원(210호)
- 관 리 비: 약 6~7만원 예상

○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2대, 장애인 주차구역 2면(총 주차면: 40면), 무인택배보관함

○ **접근성:** 대중교통(버스정류장 도보 4~5분), 편의점(도보 2분), 행정복지센터(도보 14분), 지구대(차량 6분), 신가119안전센터(차량 6분), 수행기관(차량 22분), 장애인복지관(차량 10분) 등

□ 주택 사진

		
건물 전경	건물 입구 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장	분리수거 및 쓰레기장	공동 현관
		
주택 입구	거실	베란다(보일러실)
		
주방	침실1	화장실

9.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32억 9,1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4억 2,700만원임.

이 중 3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3,291		3,427	3,158	129	140
<일반회계>	3,291		3,427	3,158	129	140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2631-304)	3,102		3,248	2,988	129	131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7011-248)	109		59	53	-	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8)	80		120	117	-	3

2) 이·전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내 임차료 및 공공요금 잔액을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1,700만원 자체 전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전용 사유
계	17 △13	
<일반회계>	17 △13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17 △13	○ 사보위사무국 내 임차료(△10) 및 공공요금(△3) 잔액을 국내여비(17) 부족분으로 자체 전용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차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연구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이월사유
계	129	
<일반회계>	129	
평생사회안전망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129	○ 계약기간 미도래 129백만원

나) 불용 현황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 낙찰차액 7,500만원, 연구용역과제 낙찰차액 5,400만원 등 1억 4,0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불용사유
계	140	
<일반회계>	140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131	○ 민간위탁 보조사업(75백만원) 및 연구용역과제(54백만원) 계약체결 시 낙찰차액, 사업 집행잔액(2백만원) 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6	○ 사업 집행잔액 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3	○ 사업 집행잔액 등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2631-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23회계연도 예산 31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4,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2억 4,800만원 중 29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3,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기준)
	본예산	추경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3,102	3,102	146	3,248	2,988 (2988)	129	131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동 사업은 ①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② 사회보장 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원, ③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 운영지원, ④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 업무 위탁 운영, ⑤ 사회보장 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지원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사회보장위원회 등 운영지원 사업 및 사회보장 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사회보장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한 사업이고,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업(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사회복지지출 산출, 사회보장 재정 추계 등을 위한 위탁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지원 및 쟁점 안건 검토 등을 위한 협의 지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고,

사회보장 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업은 각 부처·기관이 보유한 행정데이터의 분석·활용 등을 위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용역 사업임.

다) 사회보장재정추계 공표 주기 미준수 시정 필요

의무 공표 대상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공표 시기가 4년 지연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169]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2014년 제1차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가 최초로 이루어졌음.

□ 사회보장재정추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체계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가 재정추계를 검증·자문하고, 이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재정 통계센터가 지원하며,

추계 기간은 해외 사례, 인구 추계 및 장기재정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추계 범위**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대 정책영역[170]을 대상으로 함.

추계 내용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기준 노령, 보건 등 9대 기능별 추계, 재원별 의무·재량 구분별 지출 추계, 사회보험 및 일반

169)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70)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재정 분야 시나리오 분석 등 결과를 도출하여 국민소득수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현재와 미래의 복지지출수준을 분석하는 재정상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안정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마련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요>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추진체계	(실시) - 사회보험 : 해당 소관부처·추계실무기관 - 일반재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검증·자문)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추계 기간과 범위	· 추계기간 : 해외 사례, 인구 추계 및 장기재정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추계범위 :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 대상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추계 내용	1. 추계 결과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기준 노령, 보건 등 9대 기능별 추계 - 재원별(사회보험, 일반재정), 의무·재량구분별 지출 추계 -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분야(주요재정 분야)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 및 분야별 주요가정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2. 재정상태 심층 분석 - 노령·보건 등 복지지출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일반재정 분야) 구성 및 추이 등을 OECD 평균, 주요국 등과 비교·분석 - 고령화 정도, 국민소득수준,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종합 고려한 현재와 미래의 복지지출수준 등 분석 3. 제도개선안 마련 - 제도안정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개선안 마련
주요 내용 및 절차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계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구분	내용
기대효과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중장기적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적 방향 제시

□ 2014년 최초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이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은 대체로 격년 주기에 부합하게 실시하였으나, 2020년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발표하지 아니하고 있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연혁>

구분	내용
실시 연혁	2014년 제1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6년 제2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9년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20년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미실시**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은 최신 사회보험 재정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추계의 정합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추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임.

□ 현재 사회보험 중 4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재정계산 주기가 5년임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근거 자료가 되는 4대 연금과 격년 주기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이에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재정 추계의 주요 변수(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출산율, 금리 등)

에 대한 가정과 실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수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재정추계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바, 해당 주기와 예산 편성, 그리고 실제 예산 집행을 연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정추계 일정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3월 '사회보장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10월에 각 부처 통보 후, 12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3월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임.

<중장기 재정추계 일정>

일정	내용
~ 당해연도 3월 31일	'사회보장재정추계 세부지침' 마련
~ 당해연도 9월 30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 당해연도 10월 31일	부처 통보
~ 당해연도 12월 31일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 복지부 제출
~ 다음연도 3월 31일	사회보장위원회 정책개선안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22년 재정추계 실시 주기임에도 2022년 3월부터 재정추계를 착수하였고 6월에 재정추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예산을 약 2억 3,200만원 사용하였으나 완료되

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재정추계에 2023년에도 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2024년 7월 현재까지 공표가 되지 않고 있음.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집행액
2022	□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재정추계 워크숍* 개최(6.15, 재정추계 진행상황,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등 공유) * 참석대상 : 8대 사회보험·기초연금, 일반재정추계 실무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총괄과 ○ 일반재정 분야 모형 구축, 재정추계-OECD SOCX 9대 정책영역분류 정합성 고도화 등	232,143
2023	□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행('23.4~'23.12) ○ 일반재정 분야 모형 구축 및 군집 추계 등 추계모형·방법 고도화 ○ 재정 전문위원회(6.16) 결과(안) 검토 및 보완 ○ 사회보장 재정DB(재정추계-SOCX 연계) 구축 및 9대 정책영역 분류체계 정합성 제고	243,214

자료: 보건복지부

□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재정추계 실시 공표 주기와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 지침을 아울러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주기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정 의무 공표 대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공표 주기를 준수하고, 주기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일정을 철저히 수립하며, 법률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와 그 방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